

발 간 등 록 번 호

11-1750000-000028-13

---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2015~2019)**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 민 안 전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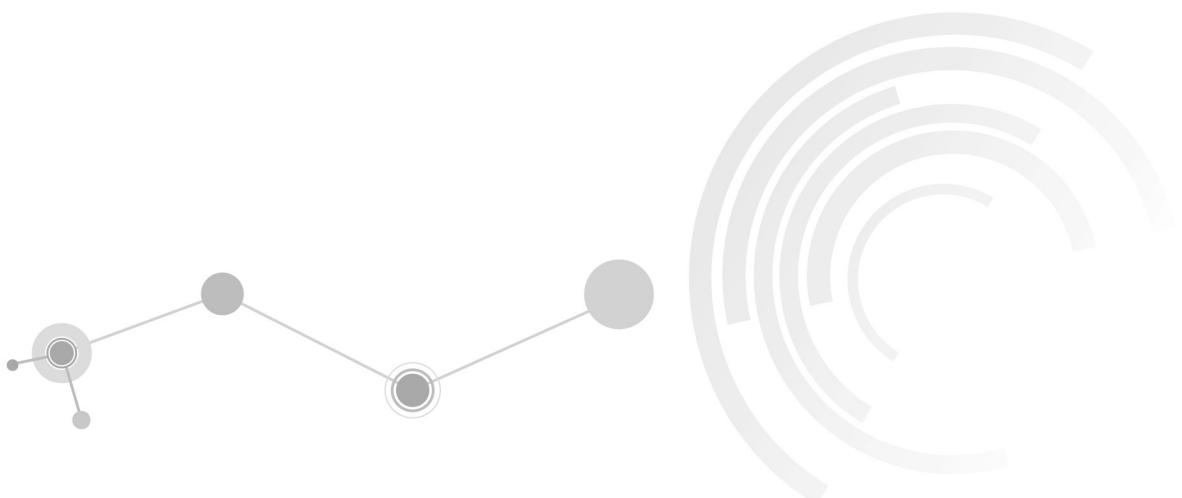


# Contents

제1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개요 .....	1
제2장 재난안전 환경 및 실태 진단 .....	7
제3장 기본방향 .....	15
제4장 안전혁신 추진과제(안전혁신 마스터플랜) .....	19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	63
1. 자연재난 관리대책 .....	66
2. 사회재난 관리대책 .....	96
3. 안전관리대책 .....	152
제6장 행정사항 .....	193
<b>부록 .....</b>	<b>201</b>
1.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	203
2.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	204
3.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경과 .....	205
4.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의 평가 .....	206
5.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5~'19) 수립 참여기관 .....	208



# 제1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개요





# 제1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개요

## 1 일반 사항

### 가. 법적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 나. 성격

-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임

### 다. 수립 배경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도시화·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신종감염병의 창궐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가 국민을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 향후 5년간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세부대책을 수립·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 재난에 대하여 복원력을 가진 안전한 공동체 형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바,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와 연계된 기본계획이 필요
  - 이를 통해 국가적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의 통합적 운영 및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단계별로 국가적 역량을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부처별 지역별로 관할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종합적으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음

## 라. 용어 정의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도로·해상·항공)·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2 책 무

### 가. 국가 및 기관의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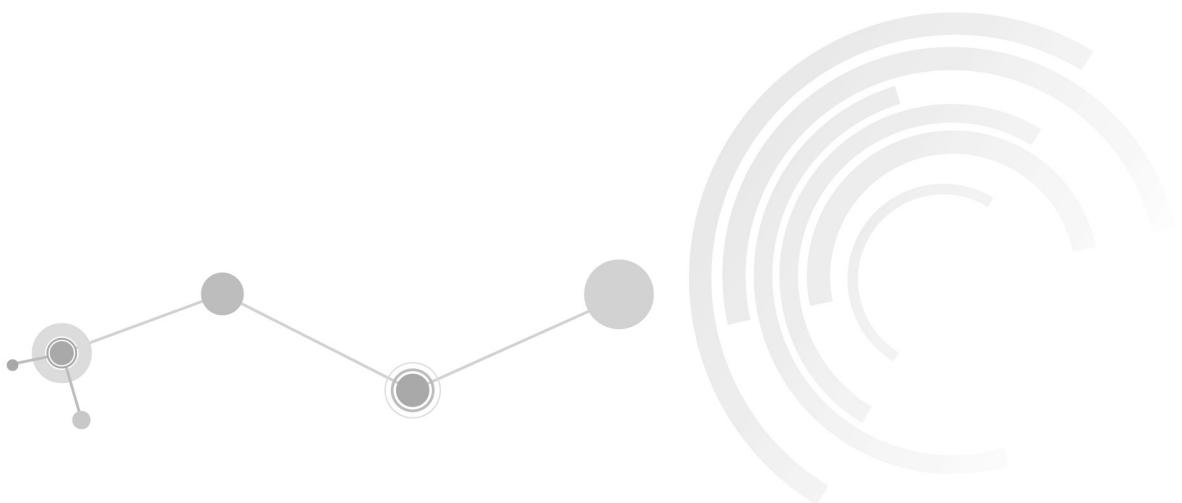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나. 국민의 책무

- 국민은 재난발생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에 대한 구조 구호에 최선을 다해야 함
-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2장 재난안전 환경 및 실태 진단





## 제2장 재난안전 환경 및 실태 진단

### 1 재난안전 환경진단

#### 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성 상존

- 우리나라 기후변화는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온 및 강수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자연재난 위험 상존

\* 우리나라의 기온은 3.0~5.9°C 상승 (전지구는 1.8~3.7°C 상승, 2099년 가정<sup>1)</sup>)

#### 나. 시설 노후화 · 인구 고령화 등 위험 사회 가속화

- 시설물의 노후화 · 고층화 · 대형화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

\* 50년 이상 노후 시설 다수(교량 27%, 터널 30%, 옹벽 37%, 승강장 17%)

-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안전 취약계층 지속 증가

\* 65세 이상 인구비율 ('13년 12%→'50년 37%), 국내체류 외국인 약 160만명 ('13년)

#### 다. 세계화 · 도시화 · 기술화 등으로 신종재난 증가

-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과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종재난 증가

\* 신종 인플루엔자('09년), 구제역('10년), 에볼라('14년), 금융사기, 사이버 테러 등

- 에너지(전기, 가스) 시설의 밀집에 따른 복합재난 및 산업화에 따른 특수 재난(유해화학물질, 대규모 정전) 증가 우려

#### 라.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증대

- 항공 · 선박 · 기차 등 고위험 내재적 이동수단의 사용 증가, 등산 · 해양 스포츠 · 축제 등 위험이 내재된 활동 증가

☞ 우리의 기후 · 사회구조적 재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반면, 재난관리 국가경쟁력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25위/34개국, 2014)

1) 출처 :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14), 환경부·기상청

## 2 우리의 재난안전체계 진단

- ◇ 언론·국회·감사원 등 지적사항, 과거 대형사고 사례\* 분석 결과 재난관리 전(全) 단계에 유사한 문제점들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 혁신 필요  
\* 지난 50년간(1964~2013) 사망자 10인 이상 대형사고 총 276건 분석

### 1 예방대비 단계

#### 가. 안전기준·법령에 대한 관리 체계 부재

- 부처 간 상이·중복의 안전기준 등에 대한 관리 체계 미흡
- 부처 내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 확보 조화 필요

\* ('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 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벤젠 저장시설 두께 기준 상이('14년 개선)  
\* 세월호 특위,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일보(4.30.), 한겨레(5.2.), 경향신문(5.15.) 등

#### 나.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감독 부실

- 부적절한 안전관련 규제 및 처벌규정 미흡

\* ('14년 세월호 사고) 선령제한 완화(당초 20년 → '96년 25년 → '09년 30년)로 선박 노후화 심화, 여객선 안전관리 규정 위반 시 벌금이 3백만 원에 불과

- 형식적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체계 부적절

\*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진단 미실시, 형식적 감리 시행  
\* ('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 직전까지 유독물 영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미실시  
\* ('14년 세월호 사고) 해운조합의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감독업무 수행  
\* 감사원 지적사항, 세월호 특위, 한국일보(5.1.), 조선일보(5.2.), 서울신문(5.7.) 등

## 다. 일반국민에 대한 안전관련 교육·홍보 부족

- 재난행동요령에 대한 홍보·교육 부족으로 국민들의 안전의식 미흡

- \*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시민들 전동차 비상개폐문 작동방법을 몰라 대피 실패
- \* ('13년 태안 청소년 캠프 사고, '13년 노량진 수몰 사고) 기초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 \* 국민일보(5.2.), 매일경제(5.10.), 세계일보(5.10.),

## 라. 공공기관 재난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순환 보직 등으로 전문성 결여

- \* 조선일보(5.9.), 매일경제(5.10.), 중앙일보(5.10.), 서울신문(5.21.), 무등일보(5.21.) 등

## 마. 실효성 없는 매뉴얼 및 훈련 부족

- 상당수 매뉴얼이 포괄적 내용만을 담고 있어 실제 재난상황에서 적용상 한계가 있고, 근무자의 매뉴얼 숙지훈련 부족

- \* ('11년 우면산 산사태) 지자체별 매뉴얼이 지역설정 등이 고려되지 않은 등 실제상황에서 활용 미흡
- \* ('12년 구미 불산 누출) 구미 산업단지 전체에서 사고이전 3년간 재난대비 훈련은 총 5회, 517명 참여에 그침 (전체 입주업체 600개, 고용자 83,000명)
- \* 감사원 감사, 한겨레(5.2.), 국민일보(5.2.), 매일경제(5.6.), 동아일보(5.7.) 등

## 바.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

- 다중이용시설, 민간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설비 투자가 부족하고,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식 부족

- \*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전동차 내장재가 PVC,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로 설치
- \* ('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현장에서 중화제 미비치 및 작업자 보호 장비 미착용

## 사.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의 관행화

- \*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화재발생, 연기확산에도 대피방송을 하지 않은 기관사
- \* ('14년 세월호 사고) 감독기관의 부실, 선장 및 항해사의 선박관리 의무 및 승객 보호 의무 위반 등 다수 사례 발생
- \* 동아일보(7.28.), 매일경제(5.6.), 서울신문(5.7.), 문화일보(5.7.), 세계일보(5.10.) 등

## 아. 예방사업에 대한 전략적·과학적 투자 미흡

- 재해예방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재
- 소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 소홀 및 재해예방사업의 과학적 추진 미흡
  - \* ('11년 우면산 산사태) 산사태 취약지역이 전국에 74개소만 지정(서울은 0곳)

2

## 대응 단계

### 가.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지휘통제력 미흡

- 사회재난·자연재난 이원화, 대형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의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여 신속한 초기대응 실패
- 중앙대책본부, 중앙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현장대응기관과 현장지원 기관간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여 재난대응 혼선 초래
  - \* ('14 세월호사고) 세월호 발생 초기에 중앙수습본부와 중앙대책본부간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중앙대책본부의 과도한 개입 초래
  - \* ('03 대구지하철 화재) 현장에서 구조·구급하는 기관과 지자체간에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협업체계 미흡
  - \* 중앙일보(4.30.), 내일신문(4.30.), KBS, 동아일보(5.1.), 중앙일보(5.1.) 등

### 나. 표준화된 재난대응체계 미확립

- 재난현장에서의 재난대응 표준체계(현장지휘체계, 정보통신체계, 자원동원 체계 등)가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 현장대응 실패
  - \* ('95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당시 소방·경찰·군 등 6천여 인력과 구급차·구조장비 등이 일시에 몰리자 사고대응체계 전면 마비
  - \* 한겨레(5.1.), 동아일보(5.2.), 경향신문(5.2.), 연합뉴스(5.3.), 조선일보(5.9.) 등

### 다. 전문화된 구조·구급 인력 및 장비 부족

- 재난발생 초기 신속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및 특수장비 미확보
  - \*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당시 출동 가능한 대구시 전체 119 구조대원 숫자가 42명에 불과(6개 대대), 비번근무자 소집에 1~2시간 소요
  - \* ('14년 세월호 사고) 해경의 특수구조를 할 수 있는 인력 및 특수장비 부족
  - \* 매일경제(5.6.), 국민일보(5.7.), 경향신문(5.9.), 조선일보(5.9.), 동아일보(5.12.) 등

## 라. 일원화된 공보 체계 미흡으로 국민 불신 가중

- 언론 브리핑과 관련한 체계화된 매뉴얼이 없고, 일원화된 언론 창구도 확립되지 않아 정부의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불신 가중
  - \* ('14년 세월호 사고) 세월호 사고 당시 대국민 및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공보체계 미흡으로 혼선 초래 / 감사원 지적사항, 세월호 특위, 조선일보(5.9.)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부족

- 대형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중앙의존적·소극적 자세
- 지자체 재난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 업무기피현상 등으로 재난관리 전문성 부족 및 효율적 재난관리에 어려움 초래
  - \* ('11년 우면산 산사태) 우면산 산사태 시 서초구의 경우 주민들에게 위험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
  - \* 헤럴드경제(5.2.), 머니투데이(5.8.), 조선일보(5.9.), 서울신문(5.15.), 한국일보(5.20.) 등

## 바. 재난정보 수집 및 상황 전파 지연·오류

- 재난현장과 상황실간, 중앙안전상황실과 소방상황실간의 신속한 상황전파가 되지 않아 초동대응 실패 사례 발생 등
  - \* ('14년 세월호 사고) 해경의 사고 접수(8:58분경) 이후 중앙안전상황실에 대한 보고가 지연, 중앙안전상황실은 언론을 통해 사고발생 최초 인식(09:19)
  - \* 감사원 지적사항, 세월호 특위, 매일경제(5.10.), 연합뉴스(5.16.), 서울신문(5.9.) 등

## 사. 자원봉사단체(개인)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 현장에 투입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접수, 인력 배치, 활용 등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스템 부재
  - \* ('14년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민간잠수사 관리 체계 부재
  - \* ('07년 태안기름유출)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아무런 활동 없이 귀가하는 사례 발생
  - \* 헤럴드경제(5.12.), 연합뉴스(5.18.), 파이낸셜 뉴스(6.23.), 세계일보(7.12.) 등

### 3 수습·복구 단계

#### 가. 피해자 및 유가족 보호조치 미흡

- 재난복구 시에 현장의 시설 복구 등 하드웨어 중심의 복구 행정
- 심리치료, 사생활 보호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부족
  - \* ('02년 태풍 루사) 접수된 구호품의 지연 공급, 침수가능성이 높은 학교·교회 등의 이재민 수용소 지정 등으로 피해자 불만 가중
  - \* ('14년 세월호 사고) 시신이양-사망확인-장례 등 일원화 부족으로 유가족 불만, 현장에서 유가족 쉼터 등 독립적 공간 부족 및 사적 소통 침해
  - \* 동아일보(5.2.), 문화일보(5.7.), 한국일보(5.9.), 이데일리(5.9.), 연합뉴스(5.9.)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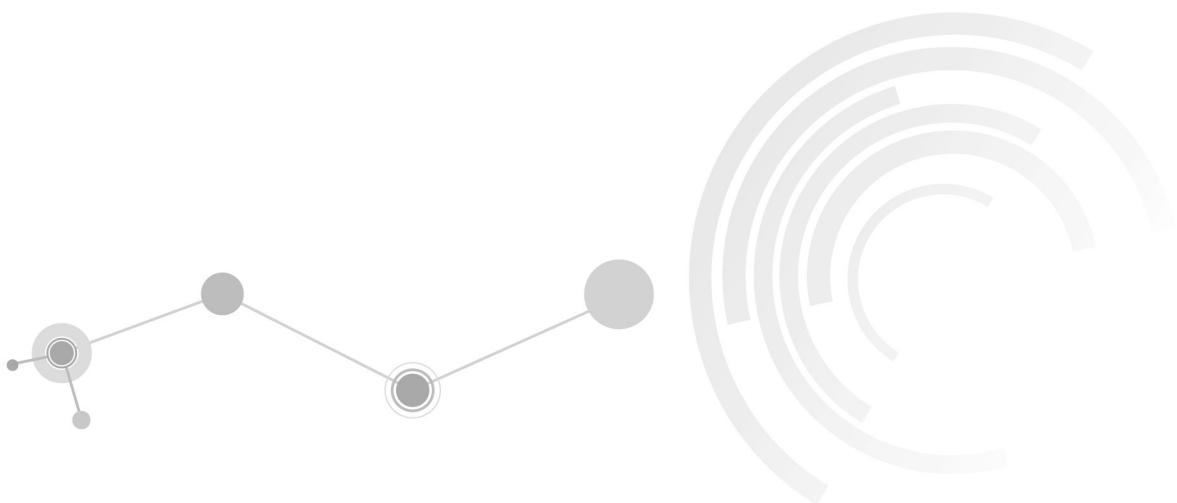
#### 나. 재난보험 활성화 미흡 및 피해자 보상기준 미확립

- 피해자 및 민간 인력·장비 동원 등에 대한 보상근거·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회재난에 대한 보험 활성화 미흡 및 구상권 논란 야기
  - \* ('12년 구미 불산 누출) 주민의 마을 복귀 후 농작물 처리, 식수원 문제, 향후 농사활동 가능 여부 등 복구계획을 제공하지 않아 주민 불만 초래
  - \* 한겨레(5.9.), 헤럴드경제(8.29.), 머니투데이(8.29.) 등

#### 다. 사고원인조사-환경 시스템 실패로 유사재난 재발의 악순환 초래

- 재난현장 보존처리 미흡으로 정밀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전문적인 원인조사체계 미비
- 재난발생지역에 대한 피해이력관리 및 사후관리 미흡, 백서 발간 및 관리 체계 부재
  - \* ('02년 태풍 루사) 피해평가와 재난관리 단계별 환류 조치 반영 체제 결여
  - \*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다음날 현장 물청소 등으로 유족 및 시민단체 항의
  - \* ('11년 우면산 산사태) 수해방지 및 지원대책에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미흡
  - \* 국민일보(5.7.), 세계일보(5.8.), 경향신문(5.9.), 조선일보(5.9.), SBS(7.11.) 등

## 제3장 기본방향





## 제3장 기본방향

### 비 전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 목 표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정책

### 5대 전략

(5Cs : Command, Capability, Culture, Continuity, Creativity)

#### 전략 1.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재난현장 통합 지원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모든 재난에 적용 가능한 재난대응표준체계 확립
- 분야별 안전정책 총괄 관리 · 개선체계 구축
- 국가재난안전 정책방향 및 표준설정

#### 전략 2.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지자체 재난대응 역량 및 책임성 강화
- 빈틈없는 대응을 위한 재난대비 교육 · 훈련 강화
- 육상(소방) 구조구급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
- 해상(해경) 구조구급 및 오염방제 역량 강화

#### 전략 3.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안전교육 강화
- 범국민 안전문화 전방위 확산
-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안전복지 정책 강화

#### 전략 4.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 재난 조사 및 평가 · 환류 체계 강화
- 예방을 통한 기능 · 업무 연속성 확보
- 과학기술을 활용한 실효적 재난예방 실현
-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안전산업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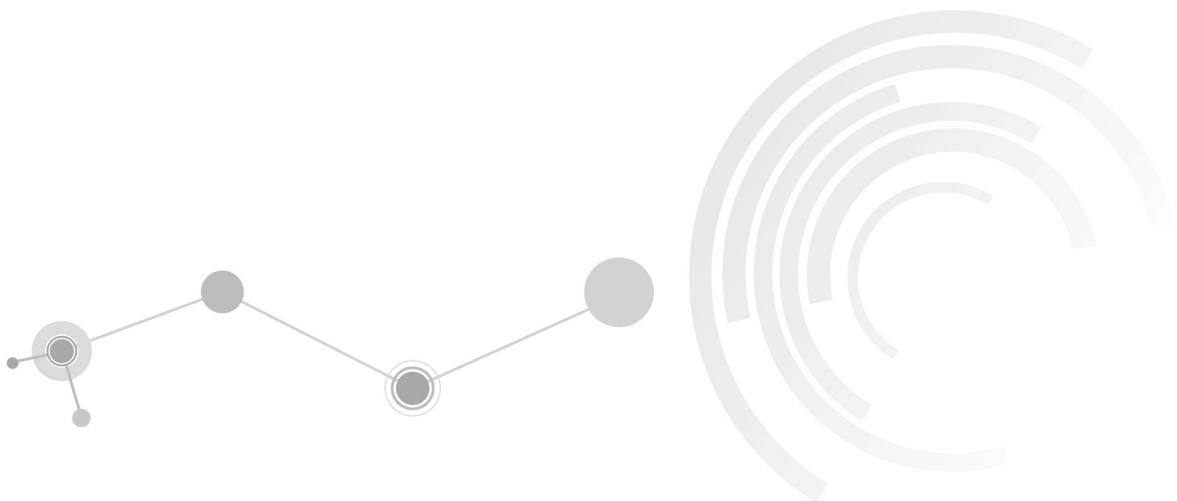
#### 전략 5.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

- 학교, 에너지, 산업단지, 감염병, 의료서비스, 유해화학물질, 산업현장, 시설물, 교통, 해양, 원자력, 가축질병, 정보통신, 기타(14개분야)



## 제4장 안전혁신 추진과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 제4장 안전혁신 추진과제(안전혁신 마스터플랜)

### 전략 1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1-1 모든 재난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재난대응 표준체계 확립

- ◇ 명확한 지휘·명령체계, 신속한 자원동원, 정보공유, 대응기관간 재난 통신망 구축, 일원화된 공보체계 등 재난현장의 대응체계 표준화

##### 가. 재난현장 참여기관 간 현장 지휘·명령체계 명확화

- 긴급구조 현장지휘 원칙(육상은 소방, 해상은 해경)을 포함한 표준안\* 마련

\*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표준안 마련('15. 9월), 보완·확정('15.12월), 확산('16년~)

##### 나. 재난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및 국가 재난통신망 구축

- 재난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지침 마련('15년) 및 전담센터\* 설치('16년~)

\* 재난관계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센터

- 기관간 하나의 국가재난통신망을 사용, 신속·효과적 재난 대응

\* 시범사업(강원도) ⇒ 확산(9개 시·도) ⇒ 완성(서울, 경기, 6대 광역시/ 해경·소방·경찰 등 321개 기관 이용)

##### 다. 재난동원자원 공동 활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자원정보 연계 의무화(재난법령 개정, '15.12월), 공동 활용 대상기관 확대 (전 지자체·부처, '15년⇒전 유관기관, '16년)를 통해 자원통합관리 구현

- 민간자원 동원 시, 인적·물적 보상 관련규정 마련('15.12월)

##### 라. 소통과 피해자 중심의 One-voice 공보체계 확립

- 재난공보창구 일원화\* 규정 마련(법 개정, '15년), 중대본 부대변인제(중수본 대변인) 실시 등 재난공보지침 마련('15.6월)

\* 언론창구 일원화 위반 항목을 기관평가에 반영, 필요시 기관경고 실시

- 피해자(가족)에 대한 정기브리핑, 심리지원 등 필요정보 수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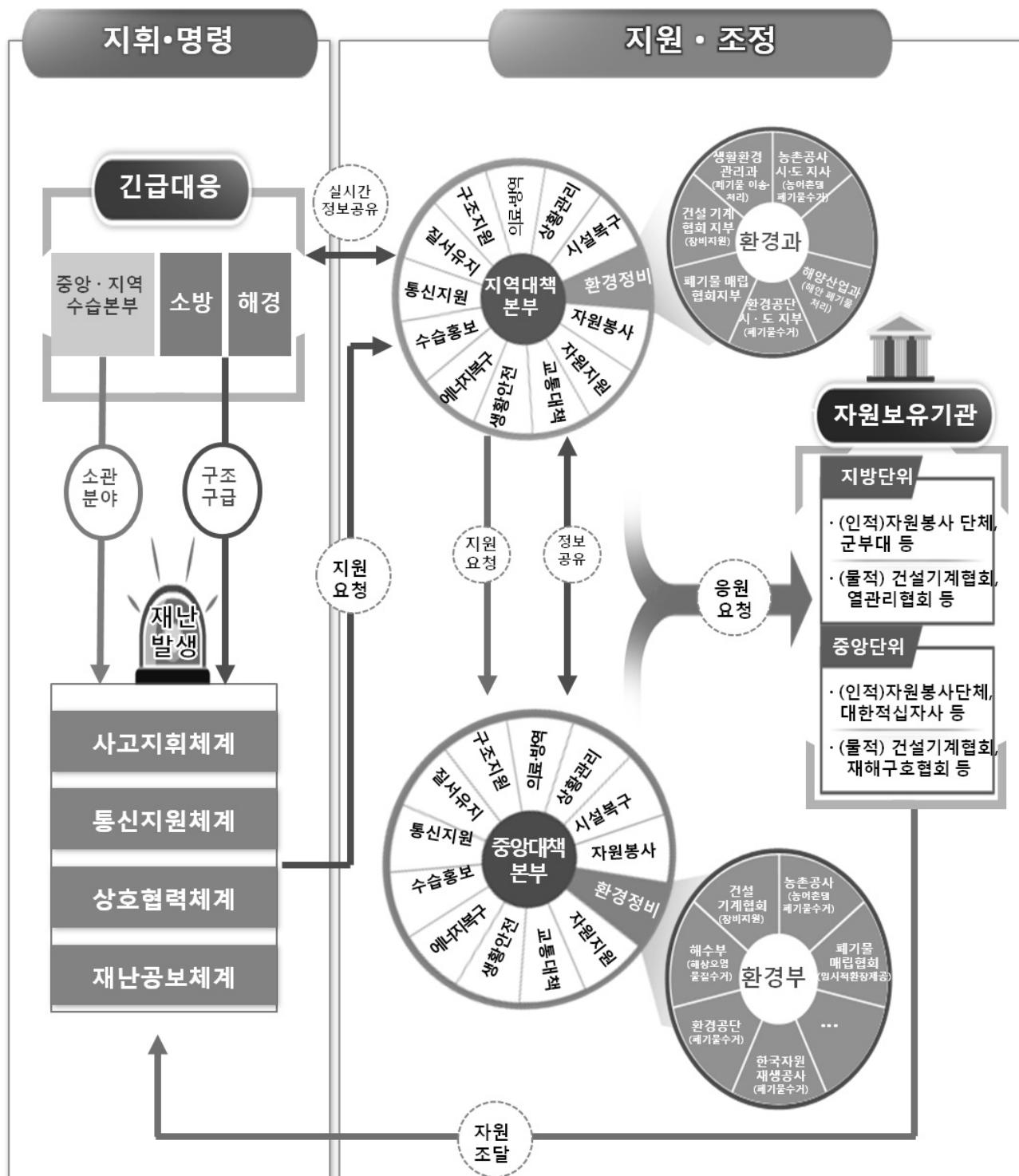
## 참고 국가재난관리표준체계

- ◇ 재난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재난참여자들이 재난대비·대응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역할, 기능, 방법 등 표준화된 원칙



## 참고 재난관리 표준 절차도

- ◇ 재난현장의 긴급대응기관과 중앙대책본부 등 지원기관간의 지휘·명령, 조정·지원 등의 재난관리 표준 절차



## 1-2 현장을 통합적으로 조정·지원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확립

- ◇ 현장의 대응기관들을 통합적으로 지원·조정(Support & Coordination) 할 수 있도록 중대본 기능 강화, 공통기능(13개) 협업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전면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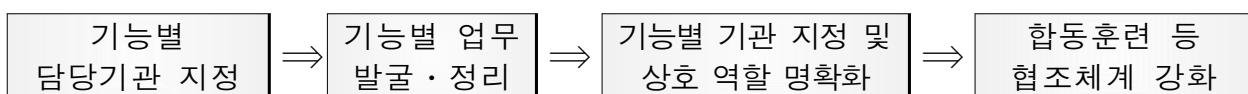
### 가. 재난현장 통합 지원·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중대본(국민안전처 또는 총리)이 모든 재난(자연·사회재난)을 통합적으로 조정·지원하고, 중대본·중수본 역할 명확화로 컨트롤 기능 확립
  - \* 중대본운영지침 개정('15년), 중수본 운영지침 표준(안) 마련('15.6월)
- 지역재난의 총괄 조정·지원기관으로서 지대본의 역할 명확화
  - \* 지대본 역할과 책임 등 지역대책본부 운영표준조례안 마련('15년)

### 나. 모든 재난에 필요한 필수기능 중심으로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종래, 재난유형별 협업은 자원(인적·물적) 활용 극대화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  
⇒ 사전에 동일기능 수행 기관들 간 협업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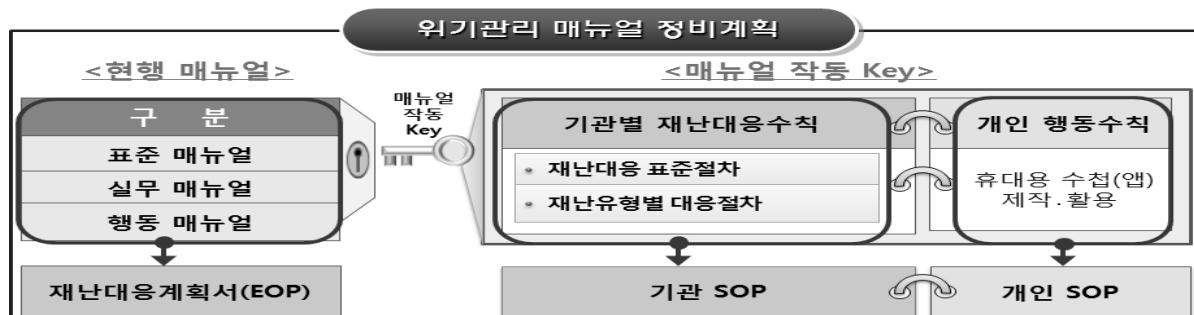
< 협업체계 구축 절차, 세부 SOP 개발 >



\* 13개 필수기능 : 상황관리,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홍보, 교통대책, 의료방역, 자원봉사관리 등

### 다. 쉽고, 간단하게 매뉴얼을 일제 정비하고, 숙달 훈련 강화

- 기관·개인별 행동절차(SOP) 중심으로 구성체계 개편 등 매뉴얼 간소화 및 현장활용성 제고, 앱개발로 휴대성 제고



- 반복적인 매뉴얼 숙달 훈련\* 및 훈련결과를 매뉴얼 개선에 반영

\* 재난유형별 중대본·중수본 CPX 훈련(매주 1회), 합동종합훈련(매월)

### 1-3 분야별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개선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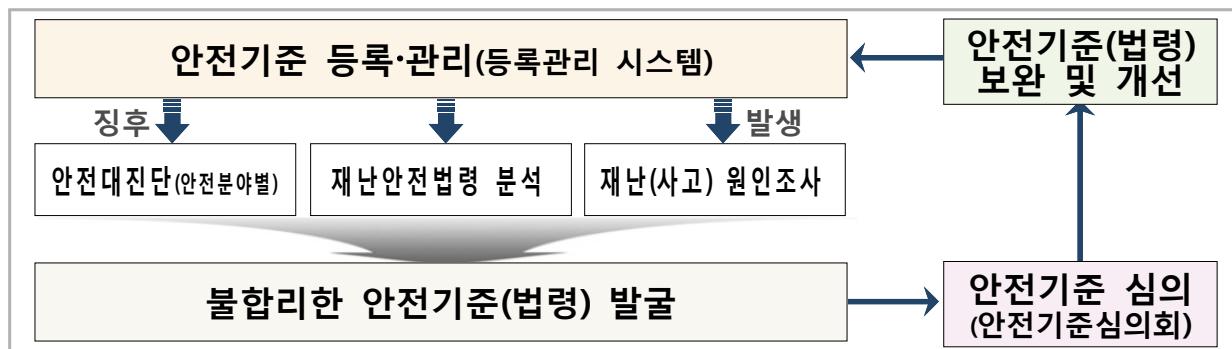
- ◇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각종 안전기준 및 법령, 안전관리감독 업무, 안전예산사업 등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개선체계 구축

#### 가. 「안전기준 등록·심의제」를 통한 안전기준 정상화 추진

- 선순환 안전기준관리체계\*를 구축, 안전기준간 중복·혼선을 해소하고, 안전 기준 미비로 인한 안전사각지대 해소

\* 범정부 차원의 안전기준 통합적 관리·운영체계 구축 및 근거법령 제정 추진

< 안전기준 등록·심의제를 통한 안전기준 관리 체계 >



- 「안전기준 심의회(국민안전처 차관 등 20명)」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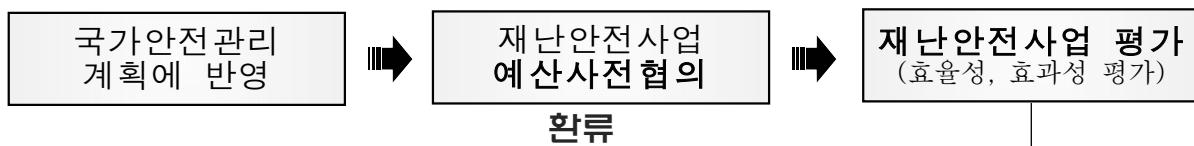
\* 건축시설, 교통, 산업, 환경, 보건식품, 정보통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나.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사업평가 등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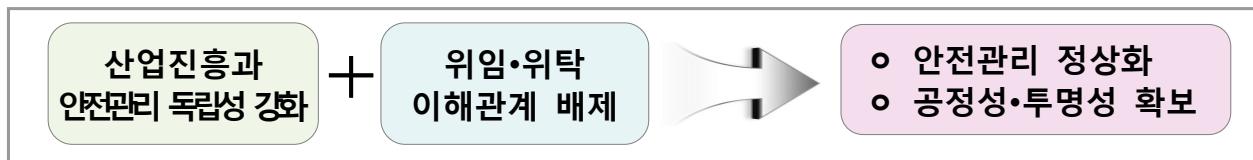
- 국가재난관리 관점에서 재난안전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안전처)

\* 국민안전처에서 부처 중기계획, 투자방향 및 순위, 차년도 예산요구 등 종합 검토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사업에 대해 효율성·효과성 등 평가 ⇒ (각부처) 평가 결과를 차년도 재난안전사업 및 집행계획에 반영



## 다.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및 관리감독체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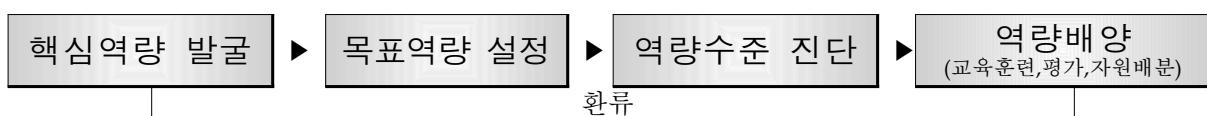
- 위임·위탁방식(자기감독식, 독점식)을 개선, 안전관리 공정성·투명성 제고
  - \* 소관부처 자체진단, 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15년) 및 추진('16년)
- 안전관리업무의 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하는 관리감독체계 개선
  - \* 실태조사 및 부처합동 개선방안 마련('15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메타검사, 안전관리 전문 감독기관 신설 등 안전관리체계 개편 추진('16년 ~)

## 라. 국가안전관리계획 위상 정립 및 계획 수립체계 개편

-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정점으로 타 계획(집행계획, 시도계획)간 연계\* 강화
  - \* 기본계획(정책 방향), 집행계획(분야별 대책), 시도계획(협업, 대응중심)
-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계획수립 체계\*\* 개선(~'15년)
  - \* 재난안전사업 평가와 연계 추진 / \*\* 국민참여 확대, 지역분석 포함 등

## 1-4. 목표기반 재난관리로 재난안전관리체계 고도화

### 가. 역량목표체계에 기반한 효율적·체계적 재난관리 추진



- 역량목표체계 개발을 통해 교육훈련 방향 및 프로그램 설정, 재난자원의 배분 전략 수립, 재난관리기관의 평가 및 환류 등 체계적 재난관리

## 나. 국가 재난관리표준체계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재난관리 표준체계」 개발 및 재난환경변화에 따라 보완·발전\*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에 연구전담 TF 구성(1단계, '15.3월) ⇒ 연구전담연구팀 구성(2단계, '15.9월) ⇒ 연구분야 확대 및 별도조직 구성 협의('16.3월)

## 전략 2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

### 2-1 지자체 재난대응 역량 및 책임성 강화

- ◇ 1차적 책임기관인 지자체의 조직, 전문인력, 재정 지원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등 책임성도 강화

#### 가. 부단체장 등 고위재난관리자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 재난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상현실기반 재난 대응 시뮬레이터를 개발('16~'17년) · 활용하여 교육효과 제고
  - \* 공무원 교육훈련지침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6년)
- 고위관리자 ‘교육의무대상 관리카드’ 작성·관리 의무화, 고위관리자 교육이수 여부 지자체 평가반영 등 교육운영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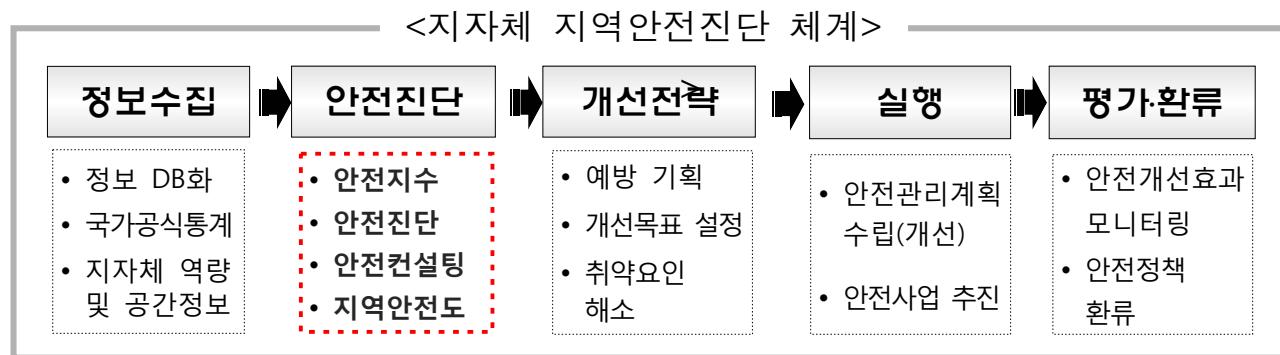
#### 나. 재난안전업무 전담 실·국 신설로 지자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 재난유형별 분산된 조직을 일원화하여 재난안전업무\* 효율적 수행
  - \* 지역재난 컨트롤 타워, 재난안전총괄, 매뉴얼, 교육훈련, 안전점검, 상황관리 등
- 재난담당인력 증원을 통한 재난안전 전문성 강화('16년~)
  - \* 시·도 및 시·군·구의 인구 및 관리시설규모 등을 고려, 조직 및 인력 확대 검토

#### 다. 지자체 재난안전 재정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지방교부세(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합리적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재난안전 및 예방투자 확대
  - \* '15년 예산 : 8,078억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937억,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복구비에 우선 지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예방사업 투자, 점검 결과 및 평가 등과 연계 추진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15.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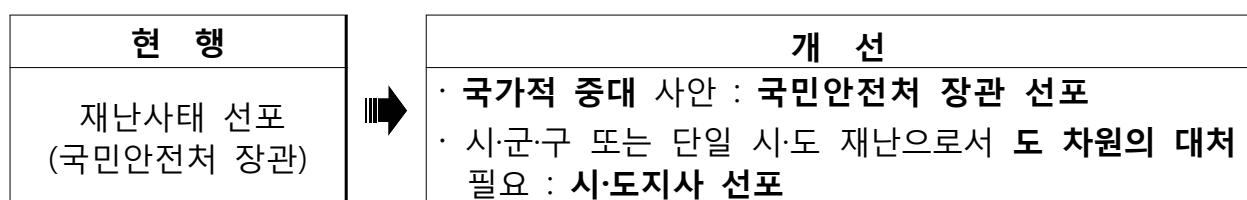
## 라. 지자체의 지역안전진단 지원



- (안전컨설팅)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15.3월), 지자체(8개, 2억) 진단 지원
- (안전지수\*) 객관적 통계(209종 통계)로 안전수준 측정 (1~5등급) 및 제공
  - \* 시군 특성을 고려, 9개 분야(화재·교통·범죄·추락·의사·안전사고·자연재해 등) 측정
- (안전진단) 200여종의 지표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상세 진단
- (지역안전도) 자연재난 환경(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진단(1~10등급)

## 마.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등 지자체 책임성 강화

-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 \* 재난안전기본법 개정('16년) : 중앙(지원·조정) / 지자체(초기대응 및 현장관리)
- 신속한 초동 대응,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 \* (재난사태 선포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비축물자(3개월분)의 사용, 해당지역 소재 행정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여행자제 권고 등
- (안전감찰 및 기관경고) 비위·심각한 안전관리 업무위반에 대해서는 안전감찰 실시 및 기관경고 추진
  - \* 기관경고와 지자체 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실행력 강화

## 2-2 빈틈없는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대비 교육·훈련 강화

- ◇ 재난안전 교육 훈련 상시체계 전환, 교육훈련기관 확충을 통해 공공 기관 등의 재난담당자 전문성 및 현장대응역량 제고

### 가. 재난대비 훈련 표준화 및 상시훈련체계로 전환

- (표준화) 훈련설계, 방법 등 재난대비훈련지침\* 마련(총리령 제정, '16년)
  - \* 재난유형별 시뮬레이션→훈련설계→CPX훈련→현장훈련→훈련평가 및 환류
- (상시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시훈련' 체계로 전환('15.6월)
  - 상시훈련 관리방안 마련(국민안전처), 상시훈련계획 수립·시행(각 부처)
- (평가개선) '훈련절차 중심'에서 '목표달성을 위주\*'의 평가로 전환
  - \* 훈련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훈련평가모델 개발('15년)

### 나. 공공기관의 재난안전 전문인력(방재안전직렬) 양성 및 확충

- (기반구축) 방재안전직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범정부 TF\*\* 구성('15.5월)
  - \* 채용, 전직, 교육프로그램, 인센티브 등 /\*전문가, 안전처, 인사처, 행자부 등
- ※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전문가 확충('12.12월, 대통령 10대 공약)
- (인력충원) 중앙부처·지자체 결원 직위 방재안전직 우선 채용 및 공공기관 방재안전직 신규 채용 확대('15년~)

### 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을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허브(Hub)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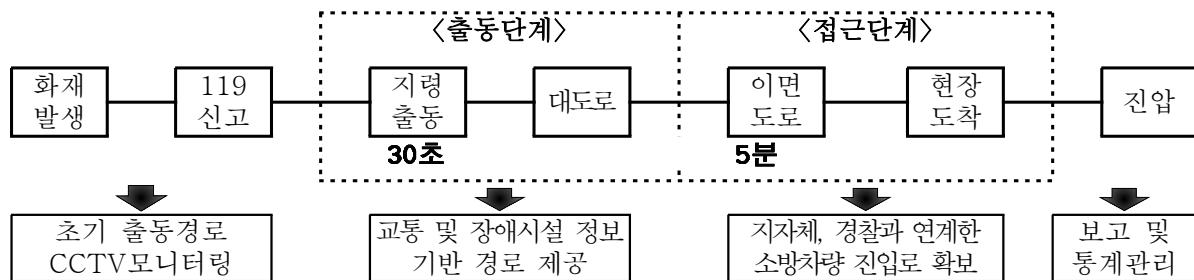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가칭)으로 개편
  - 연간교육수요 확대(10천명⇒70천명)에 따라 사회재난 교육훈련 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 2-3 육상(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 ◇ 육상 재난현장의 즉각 대응을 위한 반복훈련,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서비스 확보

### 가. 신속한 구조·구급 출동체계 확립(골든타임 확보)

- (조직확대) 전국을 4개 권역화  $\Rightarrow$  “119특수구조대” 신설
  - \* (1단계) 수도권(남양주) · 영남권(대구), (2단계) 충청·강원권(충북), 호남권(전남) 추가 신설
- 전국 소방헬기 관제시스템\* 구축('15.12월)
  - \* 산림청·해경본부 시스템을 공동 활용, 소방과 경찰에 관제시스템 구축
- 전문 구조인력, 장비 보강을 통한 긴급구조자원 접근시간 단축('16년~)
  - \* 촘촘한 구조자원 확보(중앙-시도특수-소방서 구조대) 현장대응역량 강화
-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속·안전한 출동체계 구축('15년~'17년)
  - \* 소방차 우선출동시스템 개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확대 설치
- 자체 CCTV 연계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 구축('15년~'18년)
  - 시도 종합상황실  $\Leftrightarrow$  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와의 시스템 연계
    - \* 출동 장애요인 사전 파악, 적정한 출동로 선정 정보 제공



- 재난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모바일 현장지휘소 구축\*
  - \* 위성통신망 확대 / 위성중계차량 및 위성장비 신규 설치
- 응급구조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16년~)
  - \* 구급상황관리시스템(국민안전처), 국가응급이송정보망(복지부) 통합

## 나. 현장 소방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 (대응능력 표준화) 재난대응에 필요한 핵심대응역량 개발('15년~'19년)

- 대응분야 등 긴급구조·구급 표준 시나리오 개발('15년~'17년)

\* (5개 유형) 화재, 유해화학, 초고층, 특수재난, CBRNE

- (전문인력) 다양한 재난에 대응 가능한 전문119 구조대원 양성(~'17년)

- 구조대원의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률 확대('14년 54% → '17년 70%)

\* 소방관 구조능력 실기평가를 통한 자격인증('14년 현재 2,012명 인증)

- 소방공무원 전문 교육훈련 인프라 강화 ('17년~'21년)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전문화(신임 교육, 특수사고 대응, 재난현장지휘 교육)

- 소방과학연구실의 전문성 강화 등 기능 보강\*('15년~)

\* 분야별 전문연구인력 충원 및 연구기반 확충을 통한 현장지원역량 강화

## 다. 특수사고 및 생활안전사고 신속대응 체계 구축

- 화학물질 운송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15년~'18년)

-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관제·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및 국가기관 협의체(안전처,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구성
-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관한 표시제도 통일화 및 위험물질 운송운반차량의 정기검사제도 및 안전관리 교육 등 안전관리 제도 개발

- 물놀이사고, 자살 등 생활 속 사고 신속대응체계 마련('15년~'18년)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살사고 대응시스템 구축
- IT기술 활용, 신속한 활동을 위한 위치정보 조회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 119시민수상 구조대 운영(6~9월)을 위한 우수자원 모집 및 교육·훈련 강화

## 2-4 해상(해경) 현장대응역량 강화

- ◇ 해안경비 업무 중심의 해경을 구조·안전 중심의 해경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확충 추진

### 가. 해양사고 인명구조 역량 획기적 제고

####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확대 추진

- '15년 중 서해 및 동해 특수구조대 신설 추진

#### ○ 항공구조대 인력증원 및 항공구조대 확대

#### ○ 항공 인명구조 역량 강화

- 야간·악천후 등 '골든타임' 내 신속 대응이 가능한 대형헬기 도입

- 전문 항공구조술 노하우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및 해외 기관간 교류

#### ○ '해양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잠수지원정 도입 추진

- 수중훈련, 전복·침몰선 수색구조, 헬기구조 훈련 지원

- 심해 수색 구조 작업이 가능한 잠수지원정 신규 도입

#### ○ 인접국(중·일·러 등) 수색구조기관 간 합동훈련 및 교류 협력 증진

#### ○ 지속적인 반복 교육·훈련으로 인명 구조역량 제고

- 민·관·군 합동훈련 본부(반기1회), 지방본부(분기 1회), 안전서(매월)별 실시

구 분	항공구조사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전문훈련	• 미국·일본 구조기관간 교류	• 수중구조, 선박화재 진압 등
위탁교육	• 해군 6전단 위탁교육	• 해군 해난구조대 위탁 교육

## 나. 해양오염 사고 초동 대응역량 강화

### ○ 해양사고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구축\*

\* 긴급방제팀 확대(남해→동·서해), 해양환경관리공단과 공동대응태세 유지, 민간업체 등과 방제비축기지 장비·자재 동원협약 사전 체결

### ○ 민·관·군 합동 방제훈련 고도화로 골든타임 내 대응능력 확보

\* 기름이적·파공봉쇄업체 등과 협약체결 및 국민방제대 교육·훈련 지원

###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유해화학물질(HNS) 사고대응태세 확립

\* 환경부, 중앙119구조본부, 합동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전문기관과 협업

## 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확충 및 관제사 교육훈련 강화

### ○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인 및 태안 연안에 VTS 구축 추진

\* 경인연안('14~'17, 139억), 태안연안('15~'17, 107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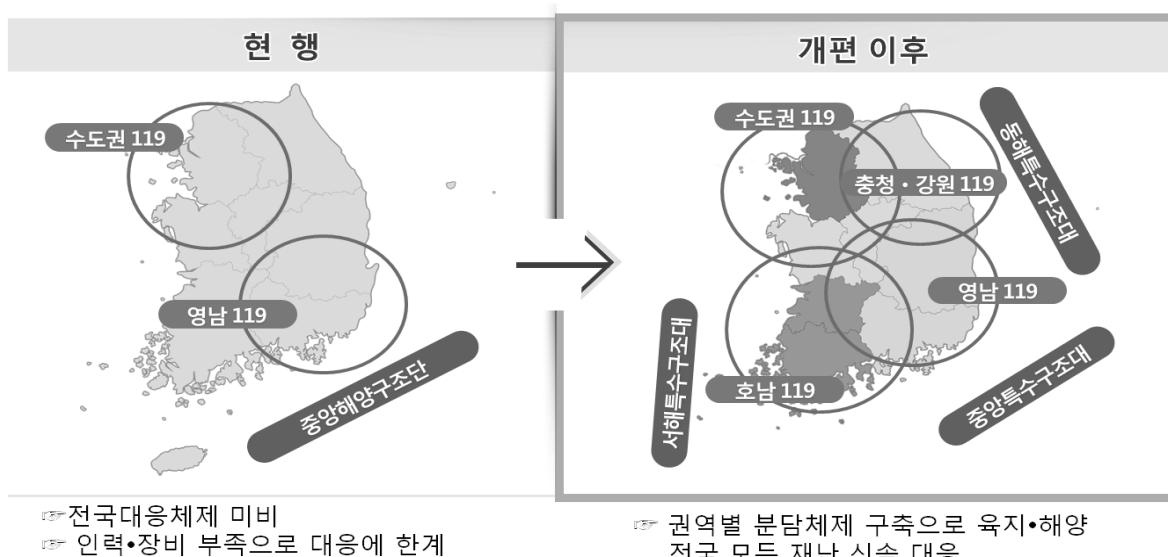
### ○ 입출항선박 안전 확보 및 음영구역 해소를 위한 항만레이더 설치

\* 호산항('14~'15, 22억), 미포항('14~'15, 21억), 보령신항('15~'16, 74억)

### ○ 연안 VTS 관제사 교육 연장(4주→ 10주), 상황관제 훈련 강화\*

\* 도상훈련(매월, 자체 시나리오 훈련), 실제훈련(분기, 함정·상황센터 등 현장세력 동원)

### 참고 : 특수구조대 확대 개편



## 전략 3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 3-1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기반 구축

-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로드맵(Roadmap)을 작성하여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습득해야 할 안전 관련 지식·기능을 맞춤형으로 실시
  - \* 대형재난 발생 대비 교육 훈련을 철저히 할 것('12.4.21, VIP)

#### 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15년~)

- (범정부 기구) 안전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협의체 구성('15.6월)
- (법률 제정) 안전교육 기본법인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가칭) 제정

#### 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하드웨어) 권역별·테마별 안전체험시설 확충, 체험교육 강화('16년~)
- (전문인력)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 \* 단기 : 과정이수형 전문가 / 장기 : (가칭)안전교육사(국가자격증) 양성
- (소프트웨어)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15년~)
  - \* 영유아, 학생, 여성, 근로자, 군인 등 교육대상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 영·유아기

#### 청소년기

#### 청·장년기

#### 노년기

- |                |                  |                  |                   |
|----------------|------------------|------------------|-------------------|
| ▪ 실종·유괴 방지교육   | ▪ 학교내 안전사고 방지교육  | ▪ 직장내 안전교육(직종별)  | ▪ 가정내 안전교육(미끄러짐)  |
| ▪ 교통(횡단보도 건너기) | ▪ 체험활동(수련회 등) 교육 | ▪ 산업건설안전(보호구 착용) | ▪ 야외활동 안전(등산, 운동) |
| ▪ 놀이시설 안전교육    | ▪ 수상안전 교육(물놀이 등) | ▪ 화재안전 대피요령      | ▪ 건강안전 교육(각종 질환)  |



## 3-2 범국민 안전문화 전방위적 확산

- ◇ 정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안전문화 협업체계**를 구축, 전략적 홍보, **안전 콘텐츠 보급**, 생명수호지기 활성화 등으로 안전문화 확산

### 가. Bottom-up 방식의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 확산

- 안전문화 기업대표자 협의회 구성('15.4월), 기업안전문화\* 확산
  - \* “안전이 비용”이 아니라, “안전이 이익”이라는 공유가치(Shared value) 확산
- 안문협(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지역기반 자원봉사단체(자율방재단, 의용 소방대 등)등과 협력, 전략적 안전문화 운동(특정분야를 일정기간 홍보) 전개
- 안전문화 온라인채널 활성화, 안전문화 공모전 등 광범위한 홍보 추진
  - \* 블로그(안전가득코리아), 안전교육교재·포스터·웹툰, 어린이 안전리플렛 등
- 시기별 주요 홍보테마를 선정, 민·관 합동 전국적 캠페인 전개(연중)
  - \* 개학기 어린이(3·8월), 행락철 교통(4·10월), 휴가철(7·8월), 음주운전 예방(11·12월) 등

### 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안전콘텐츠 개발·보급

-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산('15년)을 통해 위험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
  - \*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GIS 기반의 지도로 표출, 사용자의 위험회피 지원
- 쌍방향\* 생활안전지도 구현 및 민간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대('15년)
  - \* 안전신문고와 연계, 이용자가 제공한 재난안전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 구현
  - \*\* 민간서비스(네이버, 다음 카카오, SK T-map 등)와 연계, 생활안전지도 활용 제고('15년)
- 소방안전과 관련한 모바일 게임 개발

### 다. 위기현장 현신봉사자(생명수호지기)에 대한 예우 확대

- 생명수호지기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명예의 전당 마련('15년), 생명 수호지기 전략적 활용(교육강사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시상시기 탄력적 운영(연말⇒수시·정기), 언론기관 및 기업과 연계·홍보

### 3-3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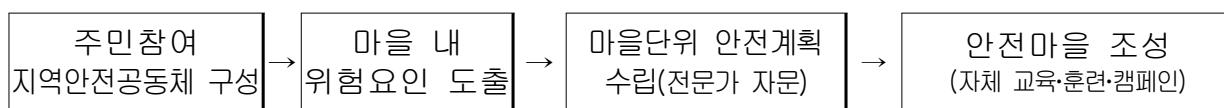
- ◇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안전공동체 만들기, 신고체계 개선 등을 통한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 가. 지역내 자율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 13개 협업기능을 중심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 유관기관 확인(역할·임무 명확화)⇒합동대응계획, 합동훈련⇒역량 결집
- 재난자원봉사리더(코디네이터\*)를 양성, 자원봉사 역량 활용 극대화('15년)
  - \* 자원봉사단체와 MOU를 통해 양성하고 자원봉사자 접수, 배정, 안내 등 관리기능 수행
- 자원봉사자 정보를 DB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매뉴얼 제작('15년)

#### 나.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마을 만들기

- 계획수립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15년)



- 우수사례 홍보 등 제2의 새마을 운동(안전과 공동체 의식)으로 확산('15년~)

#### 다.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긴급신고 전화 통합

- 긴급전화는 112와 119로, 비긴급전화(민원상담)는 110으로 통합



【 3개 신고번호 통합 (112 · 119 · 110) 】

【 긴급·비긴급 신고 구분 통합 】

\* 긴급 신고전화 통합 BPR/ISP 수립 및 통합사업 추진('15년~)

- ◇ 안전신문고 등 국민참여 신고 활성화(상향식 안전대진단)와 집단지성을 활용한 민관합동 안전진단(하향식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사회 구현

## 라. 국민참여 신고 활성화를 통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생활 주변 각종 위해요인(시설, 제도 등)에 대한 국민신고 활성화\*

\* (일반국민) 안전신문고(통합신고포털) 앱 구축('15.2월) 및 홍보를 통한 일반신고 활성화

(전문가 그룹) 안전관련 학회·협회 등을 통한 전문분야 기획신고

(민간단체) 안전모니터 봉사단, 재난안전네트워크 등과 협업하여 신고 활성화

- “신고하면 처리되고 개선된다”는 선순환 안전신고시스템 정착

\* 안전신고 3회 검토, 빅데이터 분석으로 제도개선 발굴, 신고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등

## 마. 집단지성을 활용한 산업연계형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추진체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총리, 총괄조정), 안전대진단 추진본부(본부장:안전처장관, 계획수립)-부처별 추진단(단장:차관, 점검시행)

\*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 : 위원장(안전처장관), 민간위원 44명

- (진단기간) 매년 2~4월을 집중 진단기간, 중요시기별 수시 진단

### < 진단방법 >

- (민간부문 역할 확대) 부처별로 민간전문가 활용 강화, 특정 관리대상시설 점검에 민간전문업체 참여(재난관리기금 활용토록 개정 추진, '15년)
- (정밀안전진단 활성화) 민관합동점검결과 위험성이 높은 시설 정밀안전진단
- (법령 · 제도 진단) 부처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 · 제도진단팀을 구성 운영

- (환경체계)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 · 보강, 제도개선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정밀진단 관련 업체, ICT 업체 등 관련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5년 후 17개 분야 12,000여명 일자리 창출 기대)

### 3-4 안전복지 정책 강화

- ◇ 어린이·노인·여성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재난보험 확대,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등 안전복지정책 강화

#### 가.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위해요소 진단·개선체계 구축

- 범정부 「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단」 구성\*,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 민관합동(어린이, 노인, 여성 등 3개 분과) / 국민안전처 및 관련 민간전문가

- 취약계층 위해요인 관련 정보 공유체계\* 구축

\* 정보현황 일제조사('15.6월), 정례회의 개최 등 정보공유체계 방안 마련('15.9월)

#### 나.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대책 추진 철저('13~'17년)

\*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 놀이시설, 통학차량 안전 등 4대 분야 33개 과제(16개 기관)

\* 노인 안전종합대책 : 노인 돌봄체계, 안전 개선 등 4대 분야 18개 과제(5개 기관)

\* 가정방문서비스 여성안전대책 : 택배사칭 대책 등 2대 분야 11개 과제(10개 기관)

- 사회복지시설 안전설비 강화 및 교육훈련 활성화('15년~)

\*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설비 확대 및 안전매뉴얼 작성·보급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 및 화재피해 주민 지원(재건축 등/사회공헌사업과 연계)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운영 확대 및 단속·홍보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15,752개소, 노인보호구역 678개소('14.6.30 기준)

- 재외국민\*(여행객 등), 해외 건설현장\*\*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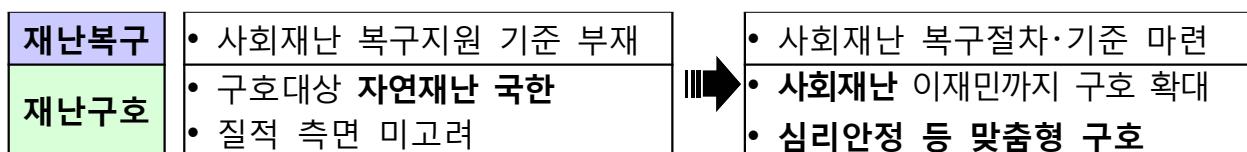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해외발신 119콜을 접수하여 처리

\*\* 해외 건설현장 등 재외국민 밀집지역에 응급의료 상담시스템 구축

## 다.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의무보험 대상시설 가입기준 축소·조정 등 대상 확대 및 보상한도·미가입 제재규정이 없는 법령 개정 추진(연중, 각부처)
- 풍수해 보험 가입률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풍수해 보험시장 확대
  - \* 가입률 제고로 예산 확대, 신규상품 발굴 및 가입 범위확대·기준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 사회재난보험 확대 도입방안 검토\* 및 재난보험 총괄 관리체계 구축
  - \* 보험 대상범위, 보험요율 및 보상방법 등 연구용역('15년)

## 라. 재난 피해자 지원 확대



- (재난복구) 사회재난\* 국고지원\*\* 기준 마련
  -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가능도록 기준 마련
  - \*\* 최소한의 생계·구호지원 등에 대해 지원액, 재원부담률 등 검토
- (재난구호) 사회재난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구호(구호기금 활용)
- (심리지원) 부처간 심리지원 협업체계\* 구축 및 현장중심\*\*의 맞춤형 재난 심리지원 실시
  - \*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 부처별 역할·임무 등 협업체계 구축
  -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현장중심의 원스톱 심리지원체계 운영

## 마. 해외재난대비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지원체계 강화

- 해외 재난 발생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추진
  - \* 외교부 안전처간 Hot-line 설치, 직원 파견 등 협조, 해외구조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적 지원 체계 매뉴얼 마련('15년), 해외파견 구조대원 전문역량 강화 등
- 국내재난 발생시, 외국인 사고수습 지원
  - \* 해당국가 공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숙소 등 편의 제공
- 해상수색 구조기관간 합동훈련(한·중·일·러) 및 인적교류 강화

## 전략 4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 4-1 재난조사 및 평가환류체계 강화

- ◇ 재난관리 평가분야·대상 확대 및 평가기법 선진화, 재난안전사고 원인 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적인 재난관리 실현

#### 가. 재난관리 분야·대상 확대 및 평가기법 선진화

- (평가확대) 재난관리 평가분야\* 및 평가대상기관\*\* 확대

\* 자연재난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재난 및 안전분야를 포함하여 총괄 평가

\*\* 정부중요시설(행자부), 교정시설(법무부) 등 / 에너지·경전철·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 (평가 실행력) 평가결과 항목추가, 대외 공개 등 실행력 강화

\*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

(공공기관) 평가결과 언론 공개, (지자체) 특별교부세와 연계, 대외 공개

- (평가 선진화) 실적위주에서 역량평가\*로 전환, 재난관리능력 제고 유도

\* 개인, 조직이 재난단계별로 갖추어야 할 역량(Capability)을 설정하고 수준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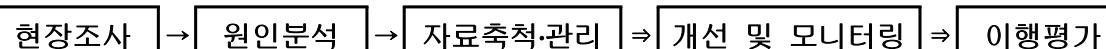
#### 나. 재난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 기관별 재난사고원인조사를 연계, 통합적 원인조사체계 구축('15~'17년)

- 위기정보, 사례분석, 재난이력관리 자료 등 기관간 연계·통합 관리

- 원인조사 역량 강화\* 및 선순환(조사-개선-이행) 원인조사체계 확립

< 원인조사체계 흐름도 >



\* 국민안전처(조사분석관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재난원인조사실) 신설, 역량 강화

- 유사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원인조사 정보공유 체계('15~'17년) 및 이력관리\*시스템 구축('15년~'17년)

\* 재난안전사고 이력관리시스템 공동운영기준 마련('15년)

## 4-2 예방을 통한 연속성 확보

- ◇ 국가·공공기관·기업 등의 기능연속성 확보계획 수립·추진으로 재난 등 위기발생에도 중단없는 업무수행 및 기능 유지

### 가. 국가기반 주요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기반시설 보호 강화

- 국가기반시설\* 재지정 등 보호대상 확대\*\*

\*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등 9개 분야 274개 시설

\*\*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특정대상시설 등 보호대상 검토

- 국가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및 평가·환류 강화

### 나. 재난 등 위기발생 대비 공공기관의 기능연속성 확보

-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능연속성 계획(COOP<sup>2)</sup>)\* 수립 의무화(재난법 개정)

- 특성을 고려한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지침 개발 보급(안전처, '17년)

-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교육, 평가환류 체계 구축('17년)

### 다. 기업의 자율적 재난안전관리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기업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세제지원, 가산점 부여 등)

- 기업재해경감 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업재난관리사 향후 5년('16~'20년) 5,000명 양성('14년, 137명), 관련학과 확대 설립 (현재 인천대 1개⇒6개),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및 우수기업 인증 대행업 활성화

2) 기능연속성계획(COOP,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 위기 시에 핵심기능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계획

## 4-3 과학적 재난예방 강화

### ◇ 정보통신기술(ICT), 국가지리공간 정보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예방 강화

#### 가. 지능 맞춤형 국민안전 통합경보 서비스 구현

- 지능형 통합경보시스템\*으로 전환, 중복·비효율 및 경보사각지대 해소

\* 도심전광판 등과 연계하여 듣는 방식에서 '듣고+보는'방식 전환, 예·경보 시설간 중복(민방위/재난예·경보) 해소 통합경보시스템 마련, 예·경보시스템 기술표준안 마련 등

※ 통합경보시스템 및 기술표준안 개발('16년), 시범사업('17년), 전국 확대(~'19년)

#### 나. 법정부 긴급통신 관리·운영체계 확립

- 긴급통신 장비(기지국, 단말기 등)·인력 현행화로 공동활용 기반 조성

- 재난 시 통신두절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부 긴급통신체계\* 구축

\* 긴급통신수단 활용, 협의회 등 긴급통신수단관리 지침 제정('15년)

#### 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재난관리

- 재난관리 전단계\*에 과학기술을 활용, 효율적 재난관리 추진

\* 위험징후 감시→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심리기법→교육훈련 등

-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과학적 피해예측\* 시스템 고도화

\* (풍수해) 피해위험도 예측시스템(~'19년) / (지진) 피해추정 예측 시스템 구축(~'17년) 등

#### 라. 과학적·체계적 재해예방사업 확대 강화

- (종합개발) 단위사업 지향, 주민 참여형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 계획수립부터 주민 참여, 종합예방사업으로 추진('16년 시범사업후 확대)

- (급경사지) 계측센서 및 CCTV 활용, 정보통합관리로 효과적 사업 추진

- (소하천) 소하천의 Life-Cycle 단계별(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로 관리 기준 정비('15년) 및 소하천 정보 관리체계 구축('16~'17년)

- (저수지) 위험분석을 통한 우선 사업 결정(위험도평가기법 개발, '15년)

## 4-4 안전산업 육성

- ◇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전투자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강화

### 가. 안전산업 발전 기반 조성

- 안전산업의 정의·분류를 체계화하는 「안전산업특수분류체계」를 제정 ('15년말)하고 정기적인 안전산업 실태 조사 실시('16년~)
- 안전기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인센티브 지원 강화('15년말)
  - \*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계약구매 지원, 지원금 지급, 공사·물품 구매 등
- 안전분야 인력을 현장인력, 전문인력 등 수준별로 특화하여 육성
  - \* 재난관리 특성화 대학원 신설 및 연차별 확대(~'17년)
  - \* 소방·응급분야 중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15~'17년)
- 국내 우수 안전기술·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 \* 해외인증 획득 지원 및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채널 다양화

### 나. 재난안전 R&D 시스템 혁신

- 법정부 차원의 재난안전 R&D 총괄·조정기능 강화 및 재난안전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
  - \* '15년 국가전체 R&D 18조 9,231억 원의 현 3%(미·일본 5% 수준)
- 재난안전 과학기술 분류체계\* 마련, 정책수립 및 R&D사업 관리에 활용
  - \* 표준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임시분류 제정 (가칭) 총괄선정위원회 개최('15년 4월) 및 운영('16년~)
  - ※ 이와 별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행계획」에 재난안전 과학기술 별도분류체계 반영('15.10월) 추진
- 과학기술을 적극적 활용, 재난안전관리 효율성 극대화

\* 소방·해경 등 재난 대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R&D 추진 방안 모색

## 다. 안전분야 민간부문 역할 확대

### ○ 안전점검, 컨설팅 등의 민간 참여를 통한 안전산업시장 확대

\* 가스, 시설물, 전기 등 분야별 민간시장 참여 점진적 확대 추진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제도 및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활성화 지원

### ○ 재난보험을 활용한 안전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

\* 의무보험의 신설·확대 및 의무보험 법령상 미비점 개선(보상한도 설정, 제재조항 마련 등)

### ○ 공공정보의 민간개방을 통한 새 비즈니스 창출

\* 재난안전분야 공공데이터의 전면적 개방 추진('17년까지 81건 공개)

\*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제 도입 검토

## 라. 공공과 민간의 안전 투자 활성화

### ○ (공공)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등 안전투자 확대

\* '15년 주요 시설물 보수보강예산 : 1.9조원, '15년 재해예방사업 예산 : 1.3조원

### ○ (공공) 사이버 보안 강화, 에너지·교통 등 주요 공공기관 안전투자\* 확대

\* 주요 시설물 통제·관리 SW 안전진단 실시('15년 20개 시설, 42억원)

### ○ (민간) 기업의 노후 SOC 등 안전투자에 인센티브 및 투자지원을 지원하여 민간의 안전투자 확대 유인

\* 안전설비투자펀드(금융위),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 확대(기재부) 등

## 전략 5 분야별 안전관리

### 5-1 학생 및 학교 안전관리

- ◇ 학교内外 안전교육 강화, 체험위주의 학생 교육 훈련,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심리 치료 강화 등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가. 학교 내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안전교과(초1~2) 또는 단원(초3~고3) 신설 추진('17년 학년도부터 적용예정)
  - \*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연구를 통해 최종 확정
- 유아~고교단계까지 발달단계별 7대 안전교육 표준안\* 개발·적용('15.3월)
  -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적용 이전('15~'17년)에는 표준안을 각종 교재 개발 및 교과·비교과 수업에 적용

#### 나.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체화

- 실제상황을 가정한 학교 내 대응훈련 강화
  - \* 대학도 민방위 훈련 참여 유도(점검반 운영), 기숙사·합숙소 소방대피 훈련(분기별 1회) 등
- 수영교육 시범운영 확대('15년), 초등학교 수영교육 확대 추진(계속)
- 휴대가 가능한 포켓형, APP형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 대내·외 활동(수업, 수학여행, 실습교육 등)에 대한 운영매뉴얼 마련, 시행

#### 다. 교원을 안전관리 준전문가로 육성

- 유·초등, 중등(체육), 보건 교과 등 직접적인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양성 시에 안전과목 이수('16.3월 입학생~)
- 전체 교육양성기관에서 재학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의무화하고, 교사자격 취득 검정기준에 반영('16.3월 입학생~)

- 교원 임용·승진시 응급 구조능력 평가체계 적용 검토
  - (가칭) 학교안전관리지도사\* 자격 신설 및 임용·승진시 가산점과 연계 검토
    - \* 학교대상 학교안전교육 등 실시 / 안전, 구급, 재난관련 등 이론실기 시험
- 전체 교원 대상 “안전교육 직무연수과정” 개설 운영

## 라. 교육인프라 구축 및 관리 강화

- 안전업무를 전담하거나 담당하는 조직 강화
  - \* 교육부에 학교안전총괄과 신설 및 안전대책 수립,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재난안전 업무 총괄전담기구 설치, 교감을 학교안전책임관(CSO)으로 지정 등
- 이동식 안전체험교실(‘안전행복버스’) 운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교육청 평가 감사 시 안전교육 점검 요소 강화

## 마. 학교안전교육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령 일원화

- 여러 법령에 분산 규정된 안전교육을 「학교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안전 교육 관련 규정 신설은 「학교안전법」 내에서 협용
- 안전교육 대상 및 범위 구체적 명시(내용·횟수·시간 등)

## 바. 심리적 위기 지원 및 학생 건강 보호

- 학교폭력 예방 및 부적응학생 상담·치유 지원
  - \* 고화소 CCTV 설치 확대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PFA-S(Psychological First Aid-School) 매뉴얼을 개발하여 학교기반 재난에 대한 심리적 응급 처치 지원(‘15년 개발 및 시범⇒’16년 전국)
- 학교급식 안전점검에 학부모 등 민간인 참여 확대 및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 사. 대학 안전관리 강화

- 대학 내 연구·실험실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등 평가(‘15년~)
  - \* 대학알리미에 시설안전평가결과, 안전교육현황 등을 공개 유도
- 대학생 집단연수시 숙박, 보험, 사전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점검 강화
  - \*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확보 운영매뉴얼 마련(‘14.3)

## 5-2 에너지 안전관리

- ◇ 산업발전을 위한 ‘先 수급·後 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안전을 우선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에너지 안전관리로 전환

### 가. 가스·전기·석유분야 안전관리 강화

-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한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구축

\* 독성가스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주기 맞춤형 안전관리, 석유 지하비축기지 수리시스템 (수벽터널, 수벽공) 설치 등

### 나. 안전기술개발 및 안전인프라 구축

- 고압가스, 독성가스와 전기설비의 실증실험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 기술 R&D 추진 및 인프라 구축

- 독성가스 안전관리기술, 지하매설 도시가스배관 탐측 방지,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기술, 중소형 LPG 안전기기 등 개발('14년~)
- 가스화재·폭발사고 실증실험을 위한 시험·평가센터 건립('16년) 및 독성가스 사고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화처리센터 구축('17년)
- 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종합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18년)

### 다. 에너지 취약계층 안전복지망 구축

- 농어촌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보급하고 취약계층의 LPG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고무호스→금속배관)

\* LP가스 공급가격을 절감(30%)하고, 사고예방 효과는 5배 증가

- 전기안전 응급조치 수혜대상 확대(현행 299만가구→1,868만 가구)

## 5-3 산업단지 안전관리

- ◇ 관련부처 및 전문기관간의 협업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합동방재센터 역할 강화,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 안전 관리 강화

### 가.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및 기업지원 강화

- 관계 부처(안전처·환경·산업·고용부)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안전관련 시설 등의 설치 및 안전지도·진단 실시
  - \* 근로자를 위한 산재예방시설 설치(고용부), 유해화학물질 누출 감시 설비(환경부) 등
- 고위험(독성가스 등) 영세사업장에 대한 점검·기술 지원\*(가스·전기안전 119), 노후취약 가스시설 개선비용 용자 등
  - \* 정부 검사기관 및 군 화학 특기 퇴직자 등 전문인력 활용 검토

### 나. 산업단지 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역할 강화

- 관계부처 협업으로 합동방재센터의 대상산단 확대 및 기능조정을 통해 합동지도·점검 기능 강화\*
  - \* 지방관서(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소방본부 · 소방서)와 합동방재센터간 업무 협의 및 연간 점검 계획 공유
-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안전관련 지도 및 점검 강화
  - \* 해빙기, 우기, 혹한기 등 취약시기별 안전관련 홍보 및 자체점검 강화

### 다. 안전요소를 고려한 산업단지 관련 법령 정비

-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강화(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 '14년)
  - \* 입주기업체에 대한 응급상황 조치 등 안전관리계획서 징구, 입주업체 비상연락망 확보를 통한 상황 시스템 구축 등
- 산업단지 내 위험물 · 폐기물간 안전 이격거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완화 추진('15.6월)
  - \*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등의 면적비율

## 5-4·5 감염병 대책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 ◇ 의료자원 선제적 확보, 예방접종 확대 등으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거점 확충 등으로 응급의료 체계 개선

### 가.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 강화

- 신종 감염병 대응계획 보완·모의훈련 실시로 유관기관 대응체계 강화
- 항바이러스제 등 의료자원의 선제적 확보
  - \*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항바이러스제 인구대비 20% 이상 비축 유지
  - \* 고도격리 진료시설 구축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국내생산 기반 확보

### 나. 예방접종 지원 확대

- 예방접종 비용 본인부담 폐지, 예방접종 지원항목 단계적 확대
  - \* 정기예방접종 대상 확대 : (기존)13종 ⇒ ('15) 14종
- 출생아, 취약계층 예방접종대상자 관리강화를 통한 접종률 향상
  - \* 부처간 정보공유 및 접종 취약계층 집중 관리 프로그램 운영

### 다.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 24시간 재난응급상황실 운영체계\* 구축
  - \* 국민안전처와 재난사고발생 정보를 실시간 공유, 지자체 및 응급의료기관과 정보 공유 및 비상연락망 가동
- 재난거점병원 확충(현 20개⇒41개)하여 1시간 이내 재난의료지원팀(DMAT) 현장도착 비율 개선(52%⇒74%)
  -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5.6월) / 재난거점병원 지원 강화
- 재난의료 전문인력을 양성(DMT 63개팀⇒105개)하고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매뉴얼(단일화)을 작성('15.6월), 관련부처 합동훈련 강화(분기별)

## 5-6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 강화된 화학안전관리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취약분야 관리 강화
- ◇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반 확충, 화학안전 문화 확산으로 국민안전 담보

### 가. 선진국 형 화학안전관리제도 조기 안착

-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등 화학안전관리제도 단계적 시행('15.1.1~)

\* '15(290개소) → '16(약 1,000개소) → '17(약 1,300개소) → '18(약 1,800개소) → '19(약 5,000개소)

\*\*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평시 안전 관리체계와 비상대응체계를 마련·이행하게 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기검사 이행('15년 4천여개소), 정기 검사 후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 화학안전설비 투자 지원\* 확대, 안전진단·컨설팅 지원 강화(매년 1,000개소) 등 중소업체 안전관리 지원 확대

\*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까지 공제

(펀드지원) 금융위에서 '17년까지 5조원(산은 2.5조, 기은 2.5조) 대출(1%P 감면) 지원

### 나. 화학사고 취약분야 현장안전 역량 강화

- 유해화학물질 수입·통관 관리 강화

- 통관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합동조사,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 구축 및 통관감시 강화

- 황산 등 테러 가능물질 집중 지도·점검

\* 소규모 화공약품 판매업체 특별지도·점검,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 해외직구 관리 강화 및 온라인 실명인증제 시행으로 구매자 인적사항 확인

○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 강화

- 운반자의 유해물질 취급·관리 안전교육 강화(2년마다 16시간), 화물 전용 휴게소 집중 점검(연 2회) 등

#### **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중심의 화학사고 대응체계 공고화**

○ 합동방재센터 등 사고대응기관 역량 강화

- 화학사고 대응 전문 교육과정 신설, 현장수습조정관 등 인력 양성
- 화학사고·테러 전문교육훈련장(중앙소방학교, 화학물질안전원) 확보, 화학사고 현장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기업·주민 중심의 사고대응 협업 강화

- 위해관리계획 적용대상 사업장에 비상대응훈련 연 1회 실시 유도
- 지역주민·기업체·사고대응기관 합동 모의훈련 진행

○ 화학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관리 기술개발('15~'21, 880억 원)

- 화학사고 피해예측, 사고 현장 유해화학물질 차단·제거, 사고 후 환경·건강 영향평가 등 19개 기술

#### **라. 범사회적 화학안전 문화 확산**

○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노력 확산

-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공동체(총 49개 공동체, 390개 업체 참여)에 대해 교육·기술지원, 사고사례 공유 등 운영 내실화 및 수범사례 확산

○ 대국민 정보공개 및 사고정보 공유 활성화

- 화학물질·제품 정보시스템 마련('15~'17), 화학물질 사고이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화학안전 국민참여 확대 및 사업장 종사자 안전교육 본격화

-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 활성화,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종사자교육 대상자 확대 및 온라인 교육 본격화

## 5-7 제조·건설·서비스업 사업장 등 산업현장 안전관리

- ◇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가.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

- (기업) 원청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의 위험 작업에 대해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과, 안전보건공시제('16년~) 도입
  - 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 체제\* 확충
    - \*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외부위탁 금지 검토, 50~299인: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전환지원, 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 신설
- (근로자) 산재예방활동 참여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 공정별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 의무화,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작업제한권 부여 등

### 나. 재해다발 요인 특성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화학물질, 위험기계기구 등 재해다발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 화학물질 : 특별관리물질 지정·관리 확대 / 위험기계 : 안전인증 및 검사제도 개선 / 고소작업 : 안전방망 등 추락사고 예방사업 지원 확대
- 신규·장년·여성근로자, 소규모사업장, 특수형태종사 등 산재 취약 부문 지원 확대를 통한 안전보건 격차 해소

### 다. 산업재해 안전보건기반 구축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 정보 공유, 안전산업 육성 등 기반 확충
  - 수규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체계 선진화
    - \* 모든 기업의 준수할 사항, 업종·유해인자별 특성 등 법령 반영
-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등 사업장 안전보건문화 확산 도모
  - \*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 5-8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 대형 시설물 중심의 안전관리를 중소형 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안전진단 업체와 시설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가.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 시설물 관리주체를 일원화\*('15년), 중복 규제·혼선방지 및 전문성 강화
  - \* (현행) 시특법상 1·2종은 국토부 / 재난관리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안전처
  - (개선)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로 편입하고 국토부가 관리

### 나.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동·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을 2종 시설물에 포함하고 취약시설물을 정기점검 강화
  - \* 반기 1회에서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년 3회 이상으로 강화

### 다.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1,2종 시설물이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무상점검 실시하고 보수 지원
  - 대한적십자사·건설단체총연합회와 보수·보강 지원 협약을 체결('14.3)
    - \*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 도로 중 육교 및 지하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

### 라. 시설물 안전점검 신뢰도 확보

-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 컨설팅\* 및 자격검증\*\*을 실시하여 업체의 기술력을 보완하고, 부실업체는 퇴출
  - \* 부실사례, 부실방지 노하우 등 교육 / \*\* 인력, 장비 등 등록기준 확인

### 마.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감독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설물 중대결함을 주민에게 공지하고,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독려(과태료 부과)

## 5-9 대형교통(도로·철도·항공) 안전관리

- ◇ 상시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 중심의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사전에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예방

### 가. 도로 교통사고 예방관리 강화

- 사고유발 대형 운수업체(버스·화물차 등)대상으로 안전점검 강화
- 일반 국민, 운수업체 종사자 대상 체험형 교육 기회 확대 제공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 홍보 강화
  - \* 매주 마지막 화요일을 “벨트 데이”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캠페인 전개

### 나. 대형 철도·지하철사고 예방관리 강화

-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여부 상시·불시 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
- 노후·취약 철도시설 개량('15년 4,694억원), 내구연한 경과 전기·신호설비 교체, 스크린도어 설치 확대 등 안전시설 보강 지속 추진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 도입, 현장 종사자 안전수칙 준수 법제화 등 인적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 예방관리 강화
  - \* 열차사고 건수(연간) : (기준) 7.8건 ⇒ ('15) 7.0건 ⇒ ('17) 5.7건

### 다. 항공기사고 예방관리 강화

- 항공안전법 제정 및 항공안전감독관 확충을 통한 정부 안전기능 강화
- 안전우려 항공사 집중관리 및 교통량 증가 대비 항공안전시설 확충
  - \* 항공사고 건수(연간) : (기준) 5.1건 ⇒ ('15) 3.68건 ⇒ ('17) 2.66건
- 대응훈련 반복, 국민대상 비상대응요령 교육·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 \* 승객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항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김포·인천 공항, '15. 6월)

### 라. 교통시설 관련 Cyber 보안 강화

- 국토교통 사이버 안전센터 선제적 방어체계 전담인력 확충 및 위기대응 훈련 강화(연3회)

## 5-10 해양안전 강화

- ◇ 연안여객선 및 선박검사제도 등 해양안전 분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박종사자의 안전대응능력과 일반 국민의 안전문화의식 제고

### 가.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 (선사) 자체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 또는 안전관리 전문회사 위탁
  - (운항관리자)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 운항관리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 (정부) 전문성 있는 '해사안전감독관'으로 채용, 지도·감독
-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 일원화(舊 해경청 ⇒ 해수부)
- 표준운항관리규정 및 운항관리자용 업무매뉴얼 마련('15년)

### 나. 선원대상 법정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자격기준 강화

-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개선 및 강화
  - \* 안전실습교육 평가제 도입, 교육당 인원 축소(40⇒20명)로 교육 내실화, 선원 안전재교육 면제 규정 폐지, 교육기간 확대 등(선원법령 개정, '15.1월)
- 선박종합비상훈련장 구축('15년, 35억), 실제와 같은 비상상황 훈련 실시
- 선원의 소명의식\* 제고 및 여객선 선장의 자격기준 강화
  - \* 제복착용, 여객안전관리 승무원 승선 운영,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요건 강화, 해기사 면허 체계 개편(단순등급기준→업종·직무별 면허로 변경)
- 선박·인명 구조 의무 위반 선장·해원 처벌 강화(선원법 개정, '15.1월)
-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원 최소 승무정원 현실화 및 예비원 확보 의무 확대(개선방안 마련, '15년→법령개정, '16년)

## 다. 선박안전기준 강화

- 개조허가대상\* 강화, 개조허가 前 전문가 자문 의무화, 복원성이 저하되는 개조 금지 등 합리적 선박 개조관리체계 도입

\* (현행) 선박 길이/너비/깊이/용도 변경 → (확대) 현행+시설(객실, 구명, 소방, 거주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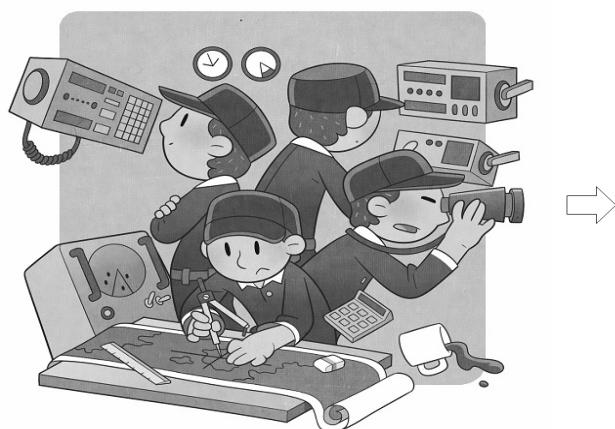
- 정비사업장이 제조업체로부터 정비능력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 라.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으로 해양안전종합관리 첨단화

- (선박) 선박 내 다양한 항법시스템을 표준화, 전자해도 화면에 연계하여 항해사가 안전항해에만 전념하도록 항해환경을 조성
- (육상) 각종 해양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선박위치 기반의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항해사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
- (통신) 기존의 해상무선통신체계를 현대화하고 육상의 통신 인프라(LTE-M)를 해상에 활용하여 해상의 통신장벽 해소

\* ICT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존>



<e-Navi>



- 지역별 사업설명회 및 사업단 구성('15년), 연구개발 추진('16년, 159억), '17년 이후(1,149억)

## 5-11 원자력 안전

- ◇ 원전의 운전·노후화 및 증설에 대비하여 전생애주기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생활 방사선 관리를 통해 일상에서의 안전성 확보

### 가. 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全 분야(설계·제작·구매·납품·설치·정비)에 걸쳐 품질규제활동 강화\*
  - \* 품질보증 검사 주기 단축(2년→1년), 정기검사 입회율 확대(80%, '15년) 등
- 원안위 법적 규제대상을 원전사업자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설비의 설계·제작자 및 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

### 나. 방사선 안전 및 방사능 방재체계 점검·개선

- 모든 방사선 이용기관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방사선 사고 방지
- 방사성오염 수입고철의 국내유입 원천 차단
  - \* 현재 10개의 공항·항만에 감시기 53대 운영, '15년에 20대 추가 설치
- 비상계획 구역\*, 방호약품\*\* 구비 등 방사능 재난대응체계 강화
  - \* 기존 단일비상계획 구역(8~10km) → 2단계(예방적 보호조치구역(3~5km),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20~30km)) / \*\*갑상선 방호약품(원전반경 16km→30km)
- 방사능 방재 훈련 주기 단축\* 및 분야별 집중훈련으로 실효성 제고
  - \* 연합훈련(원안위 주관) : 5년→1년, 합동훈련(지자체) : 4년→2년 등
-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운영, 보안전략 등 원전사업자의 사이버보안계획 심사, 사이버보안체계에 대한 특별검사 시행

### 다.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및 소통 확대

-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의 독립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 안전 규제 기금 신설 추진
- 지역에 원전안전협의회를 구성,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정기 개최(분기별),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
  - \* 방사선 안전 등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안건 발굴 논의

## 5-12 가축질병 대책

- ◇ 구제역 등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상황에 따른 초동긴급방역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며 평소에는 사육주체의 방역능력 강화

### 가. 구제역 관리체계 개선 및 청정화 회복기반 구축

- IT 기술 활용, 농가 백신 공급·접종 사항 전산관리 및 교육실시
- 백신·접종시술비 지원, 위반농가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 및 검사 강화
- 항원 수입 후 국내제조 및 「백신연구센터」 설립('12~'16), 국내 백신생산 추진 ('19년~)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재도약 추진

### 나. 외래 질병 유입방지 방역관리 강화

- 철새 이동 경로의 국가간 예찰정보 공유 등 국제공조체계 구축
- '철새 AI 위험알림시스템' 상시 운영 및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 다. 농가 등 사육주체의 방역능력 강화

- (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원기준 차별화 및 인센티브 부여
- (계열사)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 도입(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소속농가에 대하여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의무화
- (사육환경 개선) 축사시설 개선 및 친환경·동물복지 축산 육성  
\*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13.2 대규모농가 ⇒ '16.2 소규모), 방역 취약농가시설현대화 지원 및 동물복지 인증 확대('14 육계 ⇒ '16 오리 등)

### 라.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초동긴급방역 추진

- 조기신고 시 살처분보상금 감액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 탄력적인 방역대 설정과 살처분 최소화(발생농가만 살처분 원칙)
- 실시간 방역상황의 통합관리 및 방역기관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5-13 정보통신 안전

- ◇ 통신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와 정전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마련
  - \* ('14.4) 삼성SDS, 과천 통신국사 화재로 인터넷전화 72만회선 장애
  - \* ('14.3) SK텔레콤, HLR장애로 이동전화 560만명 가입자 피해 발생
  - \* ('14.3) SK브로드밴드, 동작사옥 교환장비실 화재로 일반전화 2.7만회선 장애

### 가. 주요 통신기반 사업자 관리체계 강화

-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이행의무 부과, 통신재난 예방·대응활동 책임자 지정 및 전담부서 설치·운영 추진
- 통신재난 발생시 보고대상 사업자 확대\* 및 보고기준 구체화
  - \* 기존 가입자수 10만 이상 기간통신사업자 이외에 이용 전화회선, 사업자의 서비스 매출규모, 통신시설의 중요성 등 고려 보고대상 선정

### 나. 중요 통신시설의 통신망 안전성 확보

- 기술적합 이행확인 주기 단축(5년→2년), 순환단전 대상 제외 추진(한전 협조)
- 태풍 등으로 인한 정전을 대비한 자가전원 공급시설 확보

### 다. 안전점검 등 사전 예방활동의 실효성 제고

- 중요 통신시설의 기술기준 적합 확인 강화
- 중요 통신시설 지정·관리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5-14 기타

### 1 사전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가. 산불 감시 및 지원체계 마련

- 산불예방시설(감시카메라, 산불소화시설 등) 확충 및 진화 헬기 도입
- DMZ 산불 대응을 위한 진화헬기 투입절차 간소화 및 국방부 헬기 지원 체계 마련
  - \* 동해안 접경지역 군부대 소화전 25대 설치 완료 및 '17년까지 3개소(15대) 추가 설치

#### 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시스템 공동 활용

- 유관기관과의 합동진화시범훈련 확대, 지역별 훈련통합지휘본부장(지자체 부단체장) 및 관계기관 역할 명확화로 현장대응역량 강화
-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고도화와 유관기관과의 공동 활용('15년 초)
  - \* '17년까지 전국 산악지역에 약 200개소의 산악 기상관측망 구축으로 실시간 기상관측을 통한 정확도 높은 산림재해예측
- 산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유관기관 공조 강화
  - \* 야간 및 인력투입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산불진화를 위한 '소화탄' 개발 추진

### 2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

- 산사태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사방사업 지속적인 확대
- 부처간\* 협업을 통한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 추진
  -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운영
- 실시간 산사태 예측 토대마련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
  - \* 산림지반특성지도 제작('16년), 산사태 조기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7년까지)
- 지자체 및 지방청에 산사태대응팀을 신설('15년), 산사태 신속 대응

### 3 산림휴양시설의 재난안전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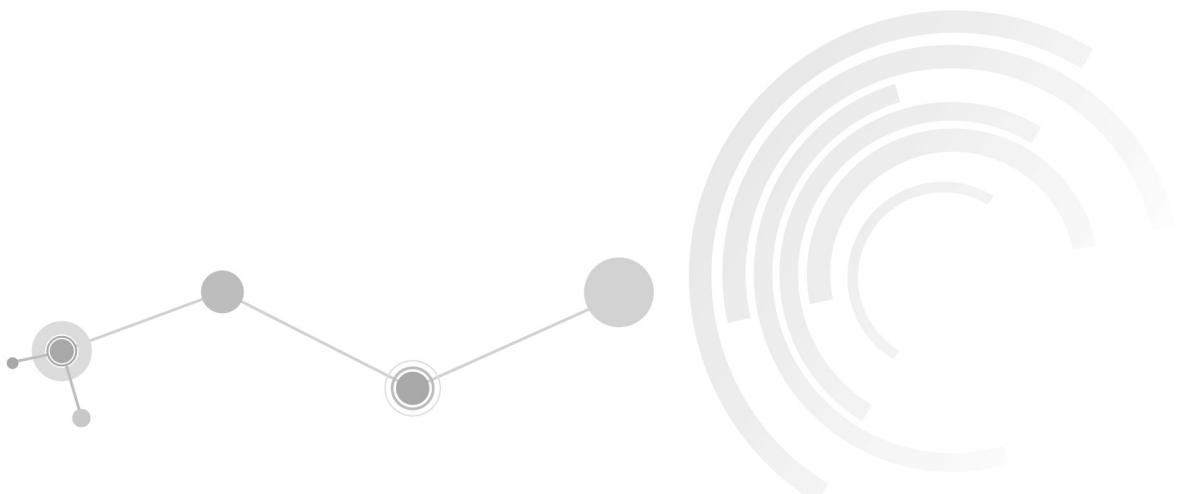
- 자연휴양림마다 ‘안전점검 책임책임자’를 지정, 안전점검 실시
- 산림휴양시설 운영자 모의훈련 정례화(연2회)
-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금액에 대한 기준 제시
  - \* 보험금의 하한선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준용
- 급증하는 숲속 야영장 법제화\*, 기준·타당성 및 인증제 도입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15.12월), 야영장 모델 개발('15~'16년)
- 이용자·관리자를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비치

### 4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 ICT 활용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 방재설비 재원·점검·유지보수 관리, 재난이력관리 등 DB화 프로그램 개발
- 현장 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훈련 및 점검체계 강화
  - \* 분야별 전문기관(가스·전기·소방 등) 합동훈련 및 점검
- 문화재 소유자, 안전경비원 대상으로 재난예방 및 비상대응 교육 실시
  - \* 소방안전협회 위탁교육(4~7월/ 10회), 지자체 자체 교육 1회 등
- 국민안전처, 산림청 등 재난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의체 구성('15.9월)



##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 ■ 1. 자연재난 관리대책 (12)

- 1-1 풍수해 ■ 1-2 해일 ■ 1-3 설해·한파 ■ 1-4 낙뢰
- 1-5 기름 ■ 1-6 지진 ■ 1-7 황사 ■ 1-8 녹조
- 1-9 적조 ■ 1-10 조수 ■ 1-11 폭염 ■ 1-12 기타(화산·재난지원·기상·방송)

### ■ 2. 사회재난 관리대책 (10)

- 2-1 화재(대형화재·문화재) ■ 2-2 산불 ■ 2-3 시설물(시설물·지반침하저수지)
- 2-4 교통(도로·해상·항공·철도) ■ 2-5 화생병(방사능·유해화학물질·생물재난)
- 2-6 환경오염(해양수질) ■ 2-7 국가기반체계보호(총괄·에너지·통신·항만·금융·의료·수도·환경·정부전산망)
- 2-8 김염병 ■ 2-9 가축전염병 ■ 2-10 해외재난

### ■ 3. 안전관리대책 (7)

#### ■ 3-1 생활안전 (10)

- (1) 취약계층(아동·학생 등) (2) 어린이 놀이시설 (3) 승강기 이용 (4) 생활제품  
 (5) 의약품·의료기기 (6) 전가가스 (7) 등산활동 (8) 다중이용업소 (9) 물놀이 (10) 수상레저

#### ■ 3-2 교통안전 (5)

- (1) 도로교통 (2) 어린이 교통사고 (3) 보행자 (4) 내수면 유도선 (5) 해수면 유도선

#### ■ 3-3 산업안전 (5)

- (1) 사업장 (2) 건설현장 (3) 산업단지 (4) 농작업 (5) 연구실

#### ■ 3-4 시설안전 (6)

- (1) 정부청사 (2) 문화관광체육시설 (3) 사회복지시설 (4) 의료시설  
 (5) 교정시설 (6) 자연휴양림시설

#### ■ 3-5 범죄안전 (2)

- (1) 4대 사회악 근절 (2) 자살 예방

#### ■ 3-6 식품안전

#### ■ 3-7 기타(북한·방문국민 안전)

## 1. 자연재난 관리대책

### 1-1 풍수해

#### 가. 목 적

- 태풍의 대형화 및 국지성·계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가중되고 있는 풍수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 및 체계적 복구대책 강구
- 현장중심의 철저한 사전대비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신속한 상황대응 능력 강화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추진
  -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점차 대형화·빈발화 추세인 산사태 피해 최소화,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주요기반시설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시행

#### 나. 범 위

- 자연재난의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등) 대책

#### 다. 주요대책

##### 【주요과제】

- 재난예방을 위한 단계적 관리체계 구축
  - 사전재해영향성협의제도 운영,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자연재해예측 및 저감 연구개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
-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응 대책 추진
  - 지역자율방재역량 강화, 재해사전예측시스템 구축, 유형별 표준운영절차 개발 및 매뉴얼 개정,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선진형 풍수해 피해예측 시스템 개발, 재해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등

- 신속한 복구의사 결정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복구체계 개선
  - 풍수해보험, 재난구호 및 재난심리안정 지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통합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재난유형별 복구 계획 절차개발, 피해주민 간접지원 및 민관협업을 통한 이재민 구호서비스
- 수방방재대책 및 사전점검
  - 하수처리시설 침수방지 점검, 공공하수도의 우수 관리기능 강화, 식·용수분야 매뉴얼 개정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현장 대응체계의 실효성 확보
- 공공하수도 우수 배제·저류능력 확대
  -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하수도 인프라 설치 등 침수예방대책 수립·추진
- 국립공원내 재난취약지구와 노후 예·경보시설 정비 등 선제적 예방사업, 위기대응 교육훈련, 산행안전지수 제공 및 탐방객 안전교육 확대 등
- 호우 대비 하천·하구나 수중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 사전수거, 중·하류 유역의 부유쓰레기 수거시스템(차단막, 수거장비 등) 구축 등
- 풍수해·설해 및 충해·재선충병 등에 의한 문화재피해 긴급보수
- 산사태취약지역의 사방사업, 사전점검·정비 및 주민대피체계 구축, 재해방지 조림,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임도 구조개량, 산사태예측 시스템 개선
- 내재해형 임산품종 및 냉해예방시설 지원, 임목도복 피해 최소화, 기상이변에 대비한 수목·시설물 관리 도로 및 보도 이용자의 안전 확보
- 노후 항만시설 보수·보강, 침수예상 항만지역 정비, 높은 파고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파제 보강,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촌지역 재해분석 및 취약지역 관리시스템 등 농촌지역 맞춤형 재난 대피 기반 기술, 주민친화형 농촌지역 재난 복구 기술 개발
- 에너지시설 피해를 최소화 대책 수립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유지
- 도로, 하천, 공항, 댐, 상수도에 대한 우기대비 취약시설 사점점검 및 우기전 보수·보강, 홍수기 위기경보 수준별 비상근무 실시 및 피해발생·확산 방지
- 태풍·풍랑에 따른 단계별 다중이용선박 통제 및 조업선 대피 유도

## 【예방대책】

- 재해취약성 사전조사, 재해 위험도 평가 후 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 수립·시행 및 재해위험지구별 행동매뉴얼 마련 등 재해위험지구 체계적 관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관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정비 등 재난취약시설의 점검·정비 강화
- 재난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 등을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재계획 및 풍수해 저감 종합 대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필요 인력, 예산, 장비의 확보
-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수방기준 및 내풍 설계기준 검토·보완, 우수유출 저감 시설 설치,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비상대처(추진)계획 수립 등 태풍 피해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 재난대책본부-방송사간 사전협조로 효과적 재난방송실시, 공보창구의 단일화 등 재난발생시 실시간 정확한 정보 제공

## 【대비대책】

-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비상소집체제 및 정보 수집·전달수단 확보, 응급대응을 위한 표준행동요령 작성, 정기적 훈련 등 응급대응체계 정비
- 정보의 수집·전달, 구원요청 등 기동력 있는 광역단위의 실천적 방재훈련
- 예·경보 시스템 작동상태 점검, 자연재난 취약지역 예·경보 시스템 확대·구축
- 상시현장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야간·휴일 등 행정 사각시간대 대응체제 확립 및 피해현장 정보수집의 신속화·체계화

## 【대응대책】

- (재난발생 직전) 비상근무 및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대응체제, 기상·재난상황 대국민 홍보, 침수·고립·산사태·저수지붕괴위험 등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홍수 예상시 댐, 배수펌프장 등의 사전조치
- (재난발생 직후) 지역본부의 현장의 신속한 상황파악, 현장상황관리관과 중앙 수습지원단을 활용한 현장상황관리 등 중앙·지방간 상황 공동관리제 운영
- (재난정보) 통신수단 확보, 피해상황 조치파악 활동

- (교통소통) 도로침수·낙석·토사유실 등 교통두절지역 응급복구, 도로관련 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및 대규모 재난시 군부대 지원요청, 사전 우회도로 지정

### 【복구대책】

- 공공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능복원과 개선복구의 기본방향 결정, 지자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복구방안 강구(정부는 이를 지원)
-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재난복구계획(안) 마련, 재난 원인분석조사단(민간)을 통해 재난원인분석·평가 기술 검토와 자문
- 재난발생으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 등 복구비 지원
- 선진기술을 접목한 피해조사장비 현대화, 피해조사시 민원 청취제도 도입 등
- 국민 스스로가 개인이 소유한 보험가입 대상시설에 대해 위험관리를 실천하는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 활성화

### 라.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국민안전처	● 재난대응총괄,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산림청	● 산사태 예방대책 강구, 임산물·임목 피해방지 대책	
기상청	● 태풍 관련 기상정보의 유관기관 전파	
미래창조과학부	● 통신두절에 따른 소통대책 강구 및 지역재난대책본부-방송사간 사전 협조체계 구축	
교육부	●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과 학교 휴업 및 등·하교 시간 조정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소관 산업·에너지 관련 시설 등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에 대비한 광역지원체계 구축	
국방부	● 긴급 방재, 물자 등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 농경지 및 수리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관리	
환경부	● 상·하수도 시설 및 재해쓰레기(폐기물) 처리 등 재해 대책 강구, 국립 공원지역 시설물관리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보건복지부	● 긴급의료지원대책 및 재해지역 방역대책 추진	
국토교통부	● 도로통제 발생대비 협조체계 구축, 홍수대책 상황실 운영 지하철·철도 운행중단 대비 대체교통수단 확보	
해양수산부	● 선박·항만, 수산 증·양식 시설, 어선·어항시설 관리 등	
경찰청	● 교통통제상황 발생 대비 도로관리청과 신속한 통제를 위한 사전 협조체계 구축, 사회질서 유지	
지방자치단체	● 광역 시·도별로 지역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통보시스템 구축	
문화재청	● 여름철 풍수해 특별 재난대책기간 운용(6월~9월), 징후 감시활동 및 피해우려·위험개소 일제 정비·보수 지원	
농촌진흥청	● 농촌지역 대피·구호체계 개선	

## 마.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국가 구현

## 1-2 해일

### 가. 목 적

- 해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안제방 및 수문의 정비와 경계·피난체계의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강구 필요
- 태풍이나 온대성 저기압에 의해 발생하는 해일에 대비 대국민 예·경보 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 및 저지대 등 해안 시설물의 정비
- 일본 서부해역에 규모 7.0이상의 지진발생시 우리나라 동해안에 1~2시간 이내 지진해일 내습가능성에 대비한 지진해일 대책 강구

### 나. 범 위

- 태풍이나 온대성 저기압 및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해일에 대한 대책

### 다. 주요대책

#### 【주요과제】

- 과거 해일피해 등을 분석, 대국민 홍보, 민·관·군 합동 해일대비 종합훈련체계 구축,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경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방위 경보단말 추가, 노후단말 교체사업 및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의 운영실태 점검 등
-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측기술 개발하고 지진해일대응시스템에 관련기능을 탑재하는 등 신속한 주민대피 지원기능 강화
- 현행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및 대피로 등의 관련 시설의 점검 및 관리 강화

### 【예방대책】

- 해일 취약시설물 점검·정비 등 예방대책 수립
- 해일 예측·정보전달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홍보
- 해일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표준대응절차 수립과 시설물 응급복구체계 확립
-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해안지역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 【대비대책】

- 선박으로부터 접수, 경계순찰 사전준비, 통신수단 정비 등 경계활동체제 확립
- 안전한 피난소·피난경로 사전정비, 즉시피난 유도 등 피난조치활동체제 정비
- 정보 수집·전달체제 확보, 응급대응을 위한 표준행동요령 작성 및 정기적 훈련
- 방재훈련 실시,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및 재난정보의 전달·분석체계 구축
- 침수방지를 위한 해안보존시설 점검 및 재난우려시 신속한 대피조치, 연안 지역 침수에 따른 전기·감전사고 방지대책, 연안지역 침수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이동식펌프 확보 등 2차 재난 방지대책 점검

### 【대응대책】

- (재난발생 직전) 비상근무 및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대응체제,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침수·고립예상지역과 산사태발생 예상지구 등 재난위험 지역에 대한 주민안전대책 강구, 태풍, 홍수 등 발생이 예상될 경우 댐, 보, 수문, 배수펌프장, 양·배수장 등 사전조치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지
- (재난발생 직후) 지역본부의 현장의 신속한 상황파악, 현장상황관리관과 중앙수습지원단을 활용한 현장상황관리 등 중앙·지방간 상황 공동관리제 운영
- (2차피해 방지)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와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확대 방지, 토사재난위험장소를 점검하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하여 응급조치 및 필요시 주민 대피 유도 등

## 1-3 설해 · 한파

### 가. 목 적

-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추진으로 설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속한 제설작업 및 자율적 방재체제 전환
-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 폭설로 인해 도로상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여건 조성

### 나. 범 위

- 설해(대설) 및 한파에 대한 대책

### 다. 주요대책

#### 【주요과제】

- 지역자율방재단과 민간모니터위원회 활용, 신속한 상황관리 및 사전예방활동
- 산악지역, 고립예상지구 및 등반객 안전대책 강구
- 서울, 인천, 경기 등 자치단체 간 취약경계구간에 대하여 연계제설체계 구축
- 제설인력, 자재, 장비 및 각종 비축물자 확보
- 시설기준 적정여부, 규격품 사용, 관리실태 등 계도 강화
- 동파방지를 위한 계량기 보온, 동파방지 계량기 및 개량형 보호통 보급 확대, 취약지역 중점관리, 동파방지대책 종합상황관리, 주민 행동요령 홍보(환경부)
- 국립공원내 폭설 대비 탐방객 안전위해요소 관리, 설해대비 교육·훈련,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행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교육
- 제설제 등 자재·장비·인력 사전확보, 제설창고 등 시설확충, 고갯길 등 취약구간 관리 강화, 교통마비 우려시 ‘先제설 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통행제한 등

## 【예방대책】

- 제설, 동해방지 등에 관한 계획 추진, 눈사태방지를 위한 삼림조성·시설정비,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설해대비 조사·연구, 설해예방 조직정비·물자관리 및 장비확보, 도로별·지역별 교통대책 및 농·수산시설 설해경감대책 강구
- 설해대책에 필요한 자료 집적, 시험 및 연구시설 확충, 방재기술개발 등 설해예방대책 연구 활성화
-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용 등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실시

## 【대비대책】

- 국민행동요령, 강설, 교통통제 및 차량 안전장구 휴대운행 등 설해방재 홍보
- 건축물소유자·관리자 등의 보도·이면도로 제설책임 홍보

## 【대응대책】

- 비상근무 및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설해 대응 활동체계 확립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상황발생시 즉시출동이 가능하도록 고립예상 지역별로 동원인력 및 장비 지정, 군·경·산림·소방 등과 인명구조용 헬기지원체계 등 고립예상지역 대책추진

## 라.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기능
부처공동	● 설해대비 소관시설물 사전점검·확인 ● 소관 피해시설 조사 및 응급복구대책 수립·시행
국민안전처	● 재난대응총괄,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국방부	● 제설, 응급복구 및 구조 등에 인력·장비 동원 준비·지원
미래부, 방통위	● 통신두절에 따른 소통대책 강구, 방송사간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긴급 의료지원 및 방역대책 추진
경찰청	● 설해피해 예상지역 교통통제 및 교통흐름 조정
기상청	● 기상특보 및 예측정보 신속 전파, 지역별기상정보 수시제공
지방자치단체	● 관내 도로(위임국도 포함)의 제설대책 수립·실시
철도운영기관	● 철도차량 증편운행 등 교통대책 실시, 철도 두절상황 응급복구

## 1-4 낙뢰

### 가. 목 적

- 최근 기후 변화로 소나기성 집중호우와 함께 낙뢰 발생 횟수 증가, 건축물의 고층화와 등산·골프·낚시 등 야외활동 인구 증가로 낙뢰피해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추진

### 나. 주요대책

#### 【주요과제】

-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자율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강화
- 민·관 합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NET-WORKING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 법제화 및 제도정비 등으로 피로시설 안전관리 및 설치기준 확대 개선, 낙뢰 피해 예방 및 위험요인 근본적인 해소방안 강구

#### 【예방·대비】

- (예방대책 수립) 비구름을 동반 기상상황 모니터링, 낙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각각의 소관시설 안전관리대책 마련
  - 자치단체별로 안전관리대책 수립, 경보기·음성방송시설 등 낙뢰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대국민 홍보·교육) 중앙 및 지자체의 대국민 홍보·교육 추진
  - 낙뢰 발생시 행동요령과 대처법 등 홍보·교육, 반상회 등의 주민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유치원·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대처법 교육 등

#### 【대응·복구】

- 낙뢰사고 발생시 교수·전문가 등으로 조사반 구성, 사고현장을 조사,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사례를 전파

## 1-5 가뭄

### 가. 목 적

- 가뭄에 대비 기상분석, 가뭄상습지 관리, 수리시설 점검·정비 등 용수대책을 사전에 강구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최소화
-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댐·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 및 가뭄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 안정적 용수공급

### 나. 주요대책

#### 【주요과제】

- 가뭄대비 관계부처 합동지침 수립
- 부처별 가뭄 상황 정보지를 합동 발간, 정보공유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 가뭄피해 조사 기능(재해경감대책협의회) 수행
- 상습가뭄재해지역 일제조사 및 중장기 대책 마련
- 시설물간 연계운영을 통해 용수공급능력 증대,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및 가뭄대비 지하수 지원체계 구축, 취수원 이원화 등 비상용수공급 방안 수립
- 지하수, 해수담수화, 빗물저류지 등 다양한 확보 방안 추진, 신규댐 건설 및 기존댐 재개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확대 및 관로 복선화

#### 【예방대책】

- 가뭄발생시기 예측과 경보발령기준을 정량화, 물절약 프로그램의 개발, 시설물별 용수관리시스템 개발, 가뭄의 평가와 예측 모형, 이수 및 절수관리 지침 등 가뭄 예방대책 관련 연구개발 추진
- 효율적 빗물관리 방안 강구, 댐 등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 다양한 수자원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확보 등 상습가뭄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 수계별 댐저수 현황 및 용수공급전망 검토, 가뭄관리시스템 개선

## 【대비대책】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개발과 가뭄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집적, 연구시설 확충 등 관련 연구와 조사 활성화
- 양수장비 적정 보유량 확보, 기상분석 및 생육상황 관찰 등 가뭄예상지역 관리
- 가뭄 우려단계시 용수원 개발 지원, 양수·절수재배 등 가뭄확산 단계 조치사항 시행 및 가뭄대책 추진체제 전환 등 조치
- 가뭄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계획 수립, 기관간 공조체계 구축

## 【대응대책】

- 비상근무 및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가뭄 대응 활동체제 확립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유휴우물,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 상수도, 전용상수도 등의 활용 및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 장비·인력(군·소방) 확보, 먹는 샘물업체 긴급식수 공급 등 긴급대책 추진
-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30% 감량공급)~4단계(급수 중단)로 구분 각급기관·지자체별로 단계별 급수대책 수립·추진
- 가뭄 상황 전파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대책 시행
- 경비함정 이용, 도서지역 긴급 식수 공급

## 【복구대책】

-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 가뭄대책용 양수기, 양수용 관정 설치 등 지원 등
- 가뭄 피해조사 및 복구 시행, 가뭄관리시스템 보완, 용수공급 대책 마련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기능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li> <li>● 재난 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li> </ul>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분야 가뭄상황 관리 및 지원</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분야(생활용수) 가뭄상황 관리 및 지원</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상수도·공업용수·댐분야 상황관리 및 지원, 산하기관 활동 종합·조정</li> </ul>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분야 가뭄상황 관리, 감시체계 유지</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지역 재난·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총괄, 지휘</li> </ul>
K-w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뭄 대비활동, 용수 공급량 조정 검토, 물차·병물 등 지원</li> </ul>

## 1-6 지진

### 가. 목 적

- 최근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빈도 증가와 대규모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됨에 따라 지진피해 저감을 위해 시설물 내진대책, 대응 및 복구 등 지진재해 관리체계를 구축
  - 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문화재 등 대한 지진대책을 강구, 지진발생시 적정 생활용수를 공급 유지, 환경오염 및 수인성전염병 등 피해를 최소화
  - 지진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도모

### 나. 주요대책

#### 【주요과제】

- 내진설계 상위기준 설정
  -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을 위한 지진위험 평가기술 및 설계지반운동 표시방법 고도화기술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정비, 국가 활성단층 지도 제작 및 각종 지질 및 지반조사 DB 통합 관리 등
- 시설물 내진대책 추진
  - 제2차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혜택에 관한 홍보 강화, 국가내진성능목표 등의 상위기준 설정시 부처별 소관 내진설계기준 재설정
- 지진재해 대응 및 복구
  - 지반피해 예측시스템 개발 및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과 연계, 관련 매뉴얼 (표준, 실무, 행동 등) 보완, 지자체별 피해원인 조사 및 위험도 평가 추진, 지진재해에 대비한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및 구호물자 확보
-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
  - 지진방재 분야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전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수요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교육교재 다양화, 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관계기관 훈련지원 및 훈련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매뉴얼에 반영 등 결과환류

- 환경기초시설(상수도·하수도)의 내진성 확보
- 문화재 지진 위험지도 데이터 구축, 목조·석조 문화재 내진점검, 문화재의 진동 특성을 고려한 지진 피해 시뮬레이션 등 지진 방재 R&D추진
- 원전 안전정지 유지계통 및 용수공급시설 내진성능 개선, 침수 방호설비 보강, 화력발전소 기존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취약점을 보강

### 【예방 · 대비】

- 국가 내진성능목표 설정, 국가 활성단층지도 제작,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활성화, 지진해일 주민대피계획 개선, 지진방재훈련, 매뉴얼 보완 및 교육·홍보
- 문화재 주변(담장·못·수목 등)이 지진피해 우려시 관계부서 협의·정비, 건조물 문화재 주변 지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추진
- 법정 안전검사 및 내진성능 확보, 가스·유류·방사선 등 위험물질 누출방지대책 마련

### 【대응 · 복구】

- 지진 및 지진해일대응시스템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방안 고도화, 재해복구계획 수립·시행
-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추가 붕괴 위험 지역 응급조치, 피해복구비 지원
- 구급의약품·복구자재·장비 확보 및 유사시 긴급대응,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공급, 에너지설비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 추진 (산업부)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국민안전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총괄 등	
기상청	● 지진, 지진해일 관측 및 신속한 통보 등	
미래창조과학부	● 중요 통신시설의 보호 및 긴급 복구 등	
방송통신위원회	● 주요 방송시설의 방송 송출 대책 추진 등	
농림축산식품부	● 피해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한 응급 복구 등	
국토교통부	● 댐, 도로, 철도 등 주요 시설물 응급 복구 등	
해양수산부	● 항만시설의 신속 복구 등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교육부	● 지진발생 지역 특별 교육대책 수립 등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신속 가동 등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 활동 주기적 발표 지원 등	
환경부	● 비상급수 및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등	
국방부	● 지진피해에 대한 인력·장비 지원 등	
경찰청	● 지진발생 지역 치안 유지 등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유류·가스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	
고용노동부	● 사고 현장 수습활동 지원 및 기술지원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능 누출시 대책 추진 등	
행정자치부	● 정부청사 등 주요시설물의 내진대책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	●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문화재청	● 문화재 지진방재대책 추진	
국립중앙의료원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응급의료 지원, 비축물품 제공	

## 라. 고려사항

- (관련계획) 제1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15~2019)

## 1-7 황사

### 가. 목 적

- 황사는 호흡기·안질환 등을 유발하고 교통·항공부문 사고, 식물생장저해, 산업설비 피해 등 건강 및 경제적 피해를 유발
  - 중국, 몽골 등에서 기원하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문제로 황사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저감 노력 필요
  - 최근 황사는 봄철 뿐 아니라 가을·겨울에도 발생, 연중 황사대응체계 필요
- 황사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산업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추진 및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한 취약계층(호흡기계 질환자, 어린이, 노인 등) 피해 예방

### 나. 주요대책

- 황사 관측장비 확충, 황사발생 확률예보 기술개발 등 예보능력 향상
- 황사 성분 관측항목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제 고도화, 황사 건강영향 조사, 위해성평가를 통한 건강보호 권고기준 제시 등 위해성 경보체계 구축
- 건강·산업·노동·교육·농업·항공·식품 등 분야별 대책 추진 및 황사발원·예비 특보·특보발령 등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 황사 대응 정책협의체 강화, 사막화지역 생태복원 공동연구, 사막화방지 협력 사업, 황사발원지 국가와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 동북아 황사대응 협력
- 황사의 주요 발원지인 몽골지역과 중국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림사업으로 국내 황사피해 저감 노력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환경부	● 중앙황사대책상황실 총괄, 황사대응상황 및 피해보고 총괄	
기상청	● 황사 예·특보 및 상황전파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교육부	● 황사 예·특보 발령상황에 따른 대응	
국토교통부	● 공항, 항행 안전시설 점검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황사상황에 따라 실외경기 개최 자제·취소 권고 등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체 상황 전파	
식품의약품안전처	● 황사대응 식품안전관리요령 홍보	
농촌진흥청	● 농작물, 가축 및 농업시설 관리요령 홍보	
지방자치단체	● 황사피해 상황접수·보고	

## 라. 고려사항

- (관련계획)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2013~2017)

## 1-8 녹조

### 가. 목 적

- 냄새물질에 의한 수돗물 이취미 발생 등 취·정수 장애를 유발하는 녹조를 사전에 예방하고, 녹조발생시 신속·체계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
- (목표) 2019년까지 4대강 본류구간에서 발생하는 녹조현상 50% 저감

### 나. 주요대책

-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충, 하폐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공동 처리시설 및 퇴비화 시설 확충 등 하천의 총인농도 관리강화(0.035mg/L 이하)
- “범부처 조류연구 협의체” 구성·운영,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조류발생 메커니즘과 거동특성 및 정수장의 녹조처리 공정개선 등 연구
- 4대강 수계에 독소와 냄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 수계관리 자문협의회, 민관합동 수질모니터단 등 수질관리정책에 민간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거버넌스) 조성
- 관계부처 합동 녹조대응 TF와 수계별 녹조대응 현장 TF를 운영, 녹조 발생시 상류 댐·보·저수지의 저수량을 효율적으로 활용 등
- (예방) 4대강 본류구간 조류경보제 시행, 하천·호소의 조류발생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녹조발생 감시·제어기술 개발 및 실용화 R&D
- (대비) 녹조발생에 대비하여 상류 댐·보·저수지 저수량을 활용 관련규정 정비, 녹조발생 대비 4대강 수계 고도처리시설 확충, 총인저감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추진
- (대응) 관계부처 녹조대응 실무협의회 및 수계별 녹조대응 현장 TF를 구축하여 녹조발생시 신속대응, 항공감시·환경지킴이 등 입체적 녹조감시, 녹조 대량발생시 녹조제거선·물순환설비·제거물질살포기 등으로 신속제거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류 대발생(녹조) 대응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 재난대비 예방활동, 조류방제 및 수습활동 지원</li></ul>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관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 조치 및 협조 요청 -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li></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장지휘본부 설치 등 재난대응 및 방제활동 실시</li><li>● 사고 원인조사 및 피해 평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li></ul>	

## 1-9 적조

### 가. 목 적

- 매년 적조 발생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14년에도 전남 완도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된 적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피해 발생
  - \* ('12년) 44억원 → ('13년) 247억원 → ('14년) 74억원
- 체계적인 적조대책을 마련하여 어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

### 나. 주요대책

- 남해안 적조 광역조사, 연근해 적조 모니터링 확대, 무인관측장비 활용 자동 예찰 시스템 및 '적조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 양식장 정화 및 적조방제, 적조 조기예보 및 모니터링 강화, 구제물질 개발, 적조 발생 메커니즘 등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 상습 피해어장 면허제한 등 양식면허 관리강화, 피해어장 구조개선
- (예방) 적조 예찰 및 예보 기능을 강화하여 적조대응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 적조 발생 1주전 예보를 2~3주전 예보가 가능하도록 발전
- (대비) 적조 발생 전 방제물질 확보, 공용 및 개인 장비 확충, 사전대비 훈련 실시, 양식어장 현황 파악
- (대응) 이동식 가두리시설로 개선, 적조에 강한 품종전환, 임시대피지(안전해역) 지정, 민간 적조대응 활동 지원,
- (복구) 신속한 어업피해 조사 및 확정, 어업재해 지원금 지급,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급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해양수산부	● 대책 총괄, 상황대응,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언론 홍보, 일일보고서 작성 및 통보, 추진상황 대응	
국방부	● 방제 및 피해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국민안전처	● 방제 및 피해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환경부	●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방지시설 설치	
국립수산과학원	● 광역 예보·예찰, 피해방지 대책연구, 종합상황실 운영	
해양환경관리공단	● 방제 인력 및 장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 연안해역 적조 예찰, 방제장비 구입 지원, 황토 및 토취장 확보, 적조 방제, 어업인 지도 등	
국방부	● 방제 및 피해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수협	● 피해 예방대책 지원, 방제 인력 및 장비 지원	
대학, 연구소	● 피해 저감기술 연구 및 개발	
언론기관	● 적조 발생 상황 홍보 및 피해최소화 방안 방송	
어업인	● 상시 모니터링, 어장주변 적조방제, 지자체 방제단 지원	

## 1-10 조수

### 가. 목 적

-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조수 피해에 대비한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여 위기관리능력 제고

### 나. 주요대책

-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항만시설·국가어항·연안정비
- 조수 재해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각종 시설물의 방재 설계기준 규정 및 점검,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 등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 (예방) 조수 재해 피해저감 종합대책 수립, 조수 재해 감시 및 사전차단 강화, 주민 및 해양안전 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 등
- (대비) 유관기관 공조·협조체계 구축·유지, 긴급지원체계 구축·훈련, 예·경보 정보 전달체계 구축·운영, 재해예방 홍보 및 교육훈련 실시
- (대응) 신속한 상황전파, 응급복구지원본부 설치·운용, 재난방송 활용 대국민 홍보 강화
- (복구)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피해원인 조사·기록·평가 실시, 피해사례 영상자료 수집·보관, 재해지도 제작

### 다. 추진체계

기 관	주요 기능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수습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li> <li>● 해양오염 방제 지원, 인명 수색·구조, 사고해역 통제 등</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상자 구호 및 치료 협조·지원</li> <li>● 지역재난상황 총괄 및 수습·복구 종합대책 강구</li> </ul>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상황 조사, 종합상황 관리 및 연안재해취약성 평가</li> <li>●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li> </ul>
지방해양항만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현장 임무를 직접 수행</li> </ul>

기 관	주요 기능
기획재정부	● 사고수습 및 복구 관련 예산 지원
국방부(해군본부)	● 인명 수색 · 구조, 초동대응에 필요한 장비 · 인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SNS를 통한 유언비어 유포 방지, 대국민 홍보
보건복지부	● 긴급 환자 수송 · 진료 및 인력, 앰뷸런스 등 지원 ● 장례지원, 피해자(가족) 및 사고관계자 심리상담 지원
환경부	● 기름, 유독물질 등 유출에 따른 오염 방제업무 지원
경찰청	● 사고현장 인근 차량 등 질서유지, 사고원인 조사 지원
기상청	● 해상기상 정보제공 관련 협력체계 구축 · 유지

## 1-11 폭염

### 가. 목 적

- 지구온난화 등으로 전 세계적인 폭염관련 건강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혹서기 실시간 건강피해 감시체계를 운영
  - 관측자료 및 기후변화 예측결과에서 폭염일수 및 피해 증가(7~8월 집중)
    - \* '00년 이후 전반적으로 폭염 사망자 증가, 특히 '12년에 59명 사망

### 나. 주요대책

- 응급 의료기관으로부터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정보 일간 집계
  - 관련기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염 건강피해 현황정보 제공 및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발간
-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 준수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강화, 폭염 건강피해 현황정보 신속 제공, 폭염대비 건강피해 예방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인식 제고

## 1-12 기타

### 1 화산재해 대책

#### 가. 목 적

- 현재로서 백두산 화산폭발의 시기·규모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가능성이 상존하며 폭발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산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 구축

#### 나. 주요대책

- 화산재난 관리 기반 마련
  - 화산재난을 재난유형에 포함하는 등 화산재해 관리업무 법적근거 마련, 화산재해 피해예방 및 대응 관련 연구개발, 화산폭발 위기경보 수준 및 국민행동요령 등
- 화산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화산분야 교육·훈련 강화
  - 여러 가지 피해유형을 통합한 피해예측시스템과 관련DB를 탑재한 화산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 관련 매뉴얼 개정·보완, 해외 화산방재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화산재 관리대책 마련
  - 기관별 소관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대책을 수립, 환경·산업·교통 등 분야별 화산재 관리기준 마련, 화산방재 초·중·고 교육교재 개발 및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합동훈련 추진
- (예방·대비) 화산재 피해경감대책 및 관리기준 수립, 화산방재 법적기반 마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매뉴얼 개정, 교육교재 개선, 화산재난 대응훈련 강화 등
- (대응·복구) 화산재난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수행

## 다. 추진체계

기관명	기능(역할)	비고
국민안전처	● 화산재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 총괄 등	
기상청	● 국·내외 화산 관측 및 통보체계 구축 등	
미래창조과학부	● 중요 통신시설 보호 및 신속 복구 등	
행정자치부	● 화산재난 관련 지자체 대응 지원 등	
국방부	● 긴급 재난발생시 군 지원 등	
교육부	●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 화산 관련 정부 대처상황, 계획 등의 대국민 홍보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물 오염 확인 및 방제 등	
산업통상자원부	● 화산재에 의한 산업피해 최소화, 라이프라인 관리 등	
보건복지부	● 재해지역 방역, 진료 실시 및 비축약품 등 지원 등	
고용노동부	● 화산폭발로 발생한 근로자 피해 회복 지원 등	
환경부	● 상수원 보호 및 재해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	
국토교통부	● 항공기 등 교통 및 물류 수송대책 점검 등	
해양수산부	● 수산물 오염 검사 및 수급안정대책 추진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전 피해 확산 방지 대책 강구 및 시행 등	
경찰청	● 피해지역 주민 대피유도 및 교통관리 등	
방송통신위원회	● 재난방송 등 지원체계 점검 등	

## 2

## 재난관리 지원

### 가. 목 적

- 재난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 의료지원체계 구축
- 재난지역에서 수인성 감염병이 대규모 발생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에 대한 범정부적 위기관리 활동방향을 규정
- 재난·재해 발생시 당사자, 가족, 주변인 등에 대하여 조기개입, 지속적 심리 지원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 회복 지원
- 대규모 재난 발생시 예산·세제지원 및 물가대책마련 등 수행

### 나. 주요대책

#### 【주요과제】

- 재난시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현장지휘체계 정비, 재난상황 전파 및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중앙 지휘조직 마련, 재난거점병원 지정(총 35개소) 및 연차적 재난대응 시설·장비 지원, 응급의료지원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 감염병 예방약품 비축·지원, 질병발생 조기 감시 및 신속한 역학조사 수행
- 전국 광역·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피해자 및 지역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상담 등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비비 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 유통질서 문란, 생필품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 발생시 물가대책 시행

#### 【예방·대비】

- 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 구축, 재난업무 담당자와 의료지원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 재난심리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인력·자원 확보 및 유관기관 연계
- 위험지역 순찰 및 재해정보 수집, 재난관리부대·외근경찰관 구조·구급훈련, 재난우려구간 교통통제 및 우회, 비상근무 및 비상소집 준비

## 【대응 · 복구】

- 권역별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응급의료 활동,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서 지속적 모니터링
- 재난시 초기 현장 인력파견 등 조기개입, 지속적·체계적 심리지원 서비스
- 피해우려지역 집중순찰을 통한 인명구조, 침수·유실·두절 등 도로상황 파악 및 교통통제, 피해지역 경력투입·복구지원 및 교통관리·방범활동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국민안전처	● 재난현장 지휘통제본부 운영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응급환자 이송	
보건복지부	● 재난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교육부	● 학생, 교직원 등 정신건강지원	
기획재정부	● 예비비 지원, 세제지원 등	
국립중앙의료원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재난의료지원팀, 닥터헬기 등 지원	
국립병원	● 재난심리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등 수행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①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②재난 피해자 지원 확대방안 강화

### 3 방재기상

#### 가. 목 적

-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기상감시 및 예측역량을 제고하고 특이기상 예측 능력과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 등의 경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지원

#### 나. 주요대책

- 빈틈없는 위험기상 감시 및 예보체계 확보
  - 위험기상 감시 입체관측망, 국가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및 국가 지진조기 경보시스템 등 구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마련
- 우리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및 기상예측체계 마련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기후정보 생산·제공, 위험기상 감시·분석기술의 사회적 응용 확산
- 기상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강화
  - 위험기상 관측·분석·수치모델의 융합기술 고도화, 황사·연무 감시·예보 기술, 태풍 예보기술 개선, 현장중심 재해기상서비스 및 방재업무 지원기술, 재해기상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감시·예측기술, 재해기상 예측정확도 향상
  - 기후변화대응 도시농림 맞춤형 기상서비스 및 수도권 초고해상도 기상서비스
- (예방) 국가기상관측망의 최적 구성, 방재기상정보망 운영
- (대비)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현행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활동
- (대응) 방재기상본부 운영, 재난예상시 기상특보 발표·통보, 기상속보 운영

#### 다. 추진체계

기 관 명	주요 기능
기상청	● 기상예보 및 특보 등 기상정보 지원 및 제공
국민안전처	● 풍수해, 지진, 화산에 관한 정보공유 및 대책
산림청	● 산불대책
원자력안전위원회	● 인접국가방사능누출 대책
환경부	● 황사대책

## 4

**재난방송****가. 목 적**

-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국지적 재난 및 신종 재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고도화 구축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

**나. 주요대책**

- 관계기관간 재난방송 정책협의 및 효율적인 재난방송 수행을 위한 중앙재난 방송협의회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운영
- 재난방송종합 매뉴얼 체계화 및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자 인권·사생활 보호 강화 및 방송의 공적역할 강화
- 기상이변 등 재난의 복합화·대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재난 방송시스템 고도화 추진
- (예방·대비) 소속기관·방송사 담당자 훈련, 재난정보 신속한 자동자막송출 시스템 점검, 재난방송 주관기관 지정 및 재난방송시스템 지원
- (대응·복구) 재난상황의 실시간 대처를 위한 통합재난관리시스템(재난방송 분야) 24시간 상시 운영, 재난방송 매뉴얼에 의한 단계별 재난방송 실시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미래창조과학부	● 재난방송 제도 및 수행 총괄	
방송통신위원회	● 재난방송 제도 및 수행 협조	
국민안전처	● 재난방송 요청	
기상청	● 자연재난 관련 예·경보 및 재난정보 전달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 관련 예·경보 및 재난정보 전달	

## 2. 사회재난 관리대책

### 2-1 화재(폭발)

#### 1 대형화재

##### 가. 목 적

- 대규모 화재(폭발사고) 발생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위기상황 발전요인의 사전제거 및 감소를 위한 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 나. 주요대책

- 전국 4개 권역별 「119특수구조대」 및 재난현장지휘 교육훈련센터 등 재난 환경·소방행정 수요에 맞는 인력 확충 및 장비 개선·보강
-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 신고접수·출동조치 등 종합 상황관제능력 제고
- 중앙상황실 재난영상정보시스템, 지자체 CCTV 연계 119출동 길안내 서비스, 모바일 현장지휘 시스템 등 모바일 재난현장관리 시스템 구축
-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를 위한 교통시스템 개선, '소방차 길 터주기'의 생활화 및 홍보콘텐츠 개발 등 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율 향상
- (예방) 종합적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을 통한 선제적 예방관리
  - 화재위험평가, 소방점검공영제 도입 등 화재취약시설 중점관리와 지속 가능한 화재예방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 (대비) 초고층 화재진압장비 등 첨단 소방장비 지속보강과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한 소방대원 교육·훈련 강화
- (대응) 상황실↔현장 정보연계, 대원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Control Tower 기능 제고 등 효율적인 소방활동 전개

- (복구) 단계별 화재대응활동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철저한 화재원인 규명을 통한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국민안전처	● 대형화재, 폭발 예방 및 대응·수습 총괄	
경찰청	● 주민 긴급대피 지원 및 교통통제 등 질서유지 ● 사망자 신원 확인 협조	
미래창조과학부	● 피해 통신시설 긴급 소통대책(우회·대체) 시행 ● 자막방송 등 재난방송 지원 등	
교육부	● 이재민 수용 및 자원 집결지 지원 ● 학생 피해상황 확인 및 수습, 사상자 파악	
외교부	● 외국인 사상자 파악, 외국대사관 지원 및 대외협력 ● 외국의 구조지원 협조 관련 정부 통합창구	
법무부	● 피해자 신원 확인 지원	
국방부	● 응급구조·구급 요원 및 장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재난방송 지원 ● 언론 인터뷰 및 오보 대응 등 언론활동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가스분야 전문 인력 및 장비 지원 ● 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조치 활동	
국립중앙의료원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①소방대응 인프라 강화, ②소방현장 대응 능력 강화

## 2

## 문화재 화재

### 가. 목 적

- 서울 송례문 화재 이후 방화 사고를 포함한 전반적인 재난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문화재 피해 및 훼손 발생 방지 도모
- 사후복구에서 예방중심의 대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하여 문화재 보존정책과 공존하는 상호연계 가능한 예방효과 증대  
※ 문화재는 목조가 많고 대부분 산간오지 또는 도심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의 출동시간에 제약이 많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실정

### 나. 주요대책

-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 국가지정문화재외 등록문화재 방재설비 구축, 전기설비 등 방재설비 유지보수 및 고도화, ICT활용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 주기적 순찰 및 방재설비 일상점검, 화재 지킴이견(犬)을 현장 배치, 현장인력 방재교육 및 훈련,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 활용
- 문화재 방재운용기반 강화
  - 문화재 방재설비 감리기술기준 지침, 문화재 안전관리지도 개발, 동산문화재 전기설비 안전대책, 문화재 낙뢰피해 현황조사 및 안전대책
-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
  - 궁능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 · 시설물에 안전인력 배치, 소방 및 종합경비시스템
- 국보 · 보물 및 중요 민속문화재 등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방염사업 추진
- (예방) 문화재 담당자 · 관리자 대상 방재 교육, 문화재 재난 예방점검, 방재 시설(방범, 경보, 소화시설) 및 안전경비인력 배치 등 재난예방 사업 추진
- (대비) 문화재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 문화재 재난안전 관련 연구기술개발, 위기관리 연습 · 훈련, 목조문화재 맞춤형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등
- (대응) 문화재 소산 및 보호조치, 중요 문화재 대피장소 확보 시행, 문화재 피해 우려 시 현지조사단 구성 · 파견
- (복구)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실시, 피해복구현장 지휘 · 기술 지원 및 국고보수정비 사업 추진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지역 화재 피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li> <li>● 인접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 및 홍보</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화재 예방 방화선, 인화물질 제거 사업 추진</li> <li>●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 배치 및 소방시설 관리 점검</li> </ul>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 예방 종합대책 수립 · 시행 - 산불 취약 지역의 관리, 문화재 주변 산불 소화 시설 설치</li> </ul>	
국방부 (군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주변 방화선 구축 및 인화물질 제거 등 (환경정비) 지원</li> </ul>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관련 기상 정보(예보) 및 기상 정보 제공</li> </ul>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산불 방지 대책 추진</li> <li>●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행위 단속 및 예방 활동</li> <li>● 국립공원 문화재 지역 내 방화선 구축 지원</li> </ul>	
문화재 소유(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방화선 구축, 문화재 주변 인화물질 제거</li> <li>● 화재 예방 활동 및 감시 활동</li> <li>● 소방 시설(소화전, 소화기, 방수총, 저수조 등) 관리 점검</li> </ul>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문화재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 2-2 산불

### 가. 목 적

- 기상여건, 산림상태, 사회·경제 여건상 산불발생 위험과 산불의 대형화 개연성이 높아짐
  - 건조일수의 지속적 증가, 불규칙적인 계절풍(IVEN)이 발생과 함께 숲이 울창해짐에 따라 낙엽층 등 산림 내 연소물질이 증가
- ※ 건조주의보(일) : ('08)94 → ('10)78 → ('12)94 → ('13)91
- 산불 피해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자원 및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여 산림의 생태적·환경적 가치 향상
- (목표) 최근 10년 평균 산불피해 면적 대비 매년 5% 감축
  - 최근 10년 평균 776ha → '19년 600ha

### 나. 주요대책

- 원인별 산불요인 사전제거 및 대응체계 구축
  -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산불예방 홍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기관 및 지역별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수립을 지원
- 산불방지 기반시설 확충 및 산불취약지역 관리 강화
  -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및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 확대, 취약지역 감시인력 집중배치 및 인화물질 제거사업 시행
- 진화 지휘체계 정착 및 유관기관별 임무 명확화
  - 상황관리 및 진화자원 공유시스템 마련·활용, 유관기관 협동 진화훈련 확대
- 공중진화 향상을 위한 헬기 추가도입 및 승무원 안전교육 강화
- (예방) 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산불취약지(주요사찰, 소각 산불 등) 관리사업,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산불감시·계도활동
- (대비) 봄·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산불 방지 및 산불진화 협정 등 국민참여 확대, 산불원인자 검거능력 향상

- (대응) 산불상황 전파 및 산불현장 지휘(통합지휘본부), 산불확산시 지역 주민 긴급대피 및 주요시설물·주민 보호
- (복구) 피해 유형별·임상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태적 복구기술 적용,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옥·축사·농림시설 등에 최우선 응급복구 지원

## 다. 추진체계

기 관	주요 기능
행정자치부	● 지자체의 산불경각심 고취 및 예방활동 지원 협조
국민안전처	● 민가·시설물 보호, 산불예방·진화, 헬기 공조 투입
법무부·검찰청	● 사회봉사 수명자 산불감시원 활용, 산불원인자 엄중 처벌 협조
국방부(공군본부)	● 사격장내 책임 진화, 산불진화에 군병력·헬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영농교육시 무단 소각행위 금지 계도 및 산불방지 홍보 실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행위 차단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철도공사)	● 도로변, 철도변 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 작업 실시 ● 고속도로 전광판에 산불 예방 홍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 송배전선로 주변 산불방지 대책강구, 정전사고 방지 대책 강구
경찰청	● 가해자 검거, 방화우려지 및 산불취약지 순찰 협조
기상청	● 산불관련 기상정보(예보) 및 산악기상 정보제공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예방 활동
우정사업본부	● 산불방지 계도·감시에 우편집배원 참여
한국방송광고공사	● 산불취약시기에 지역방송에 홍보 지원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사전예방과 진화체계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2-3 시설물

### 1 시설물 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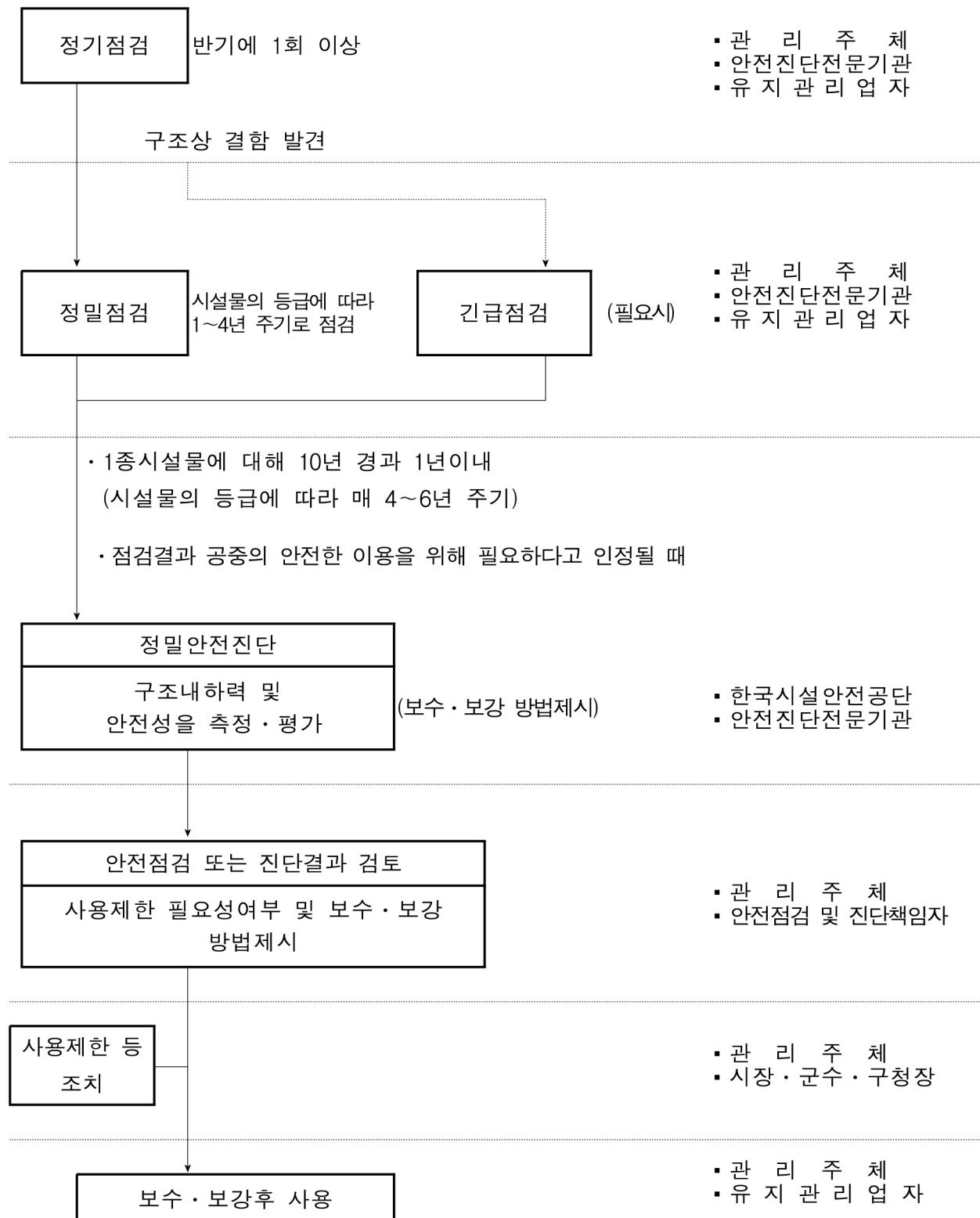
#### 가. 목 적

- 10여년 후 시설물 고령화 시대에 진입으로 위험노출 및 불안감 증가 예상, 유지·보수 투자의 지연은 SOC 시설 노후화와 서비스 수준 저하를 유발하여 성능보완,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 초래 우려
-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S(Safe, Sustainable, Smart) 시설물로의 전환을 통한 종합적인 시설안전 구현

#### 나. 주요대책

-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 1·2종 시설물 확대 조정 및 소규모 시설물 관리체계 도입, 안전점검·진단 기술자 전문성 강화, 안전점검 적기시행 및 노후 시설물 관리 강화
  - 시설물 실태조사 제도화, 시장친화형 안전진단전문기관 육성 및 공정성 강화,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Needs 중심의 교육
-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실현
  - 국민이 참여하는(안전신고, 안전감시단 등) 시설물 안전문화 확산, 생활기반 시설물 등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및 민간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환경변화 선제대응형 안전관리로 전환
  - 지진재해 대응체계구축 및 내진기준 정비, 이상기후 대응(내풍·내설) 안전 관리 강화, 시설물 성능평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진, 유지관리 취약요소 발굴 및 Feedback(설계-시공-유지관리-기준 보완)
- 지능형 기술 촉진 및 효율화
  - ICT 기반 시설물 첨단 진단기술 확보,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기술 선진화, FMS(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성능개선 및 활용 확대, 유지관리 분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도입·활용기반 마련

## 다. 추진체계



## 라. 고려사항

- (관련계획)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13~'17)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추진과제)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등 시설물 안전관리

## 2

## 지반침하

### 가. 목 적

- 대규모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지하개발의 증가, 지하시설의 노후화 등 점증하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 나. 주요대책

- 생생한 땅속 정보를 제공하여 지반안전 강화
  - 3D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하여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 지하공간 정보의 제공과 업데이트 등에 대한 통합기준을 마련
- 대형 굴착공사 현장 인근 주민의 불안 해소
  -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은 지하수·지반·인근시설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및 대책수립 의무화, 설계·시공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굴착 영향범위까지 확대, 대형 굴착공사는 객관적인 안전성 확인 및 공사중 지도·감독 강화
-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 예방계획 수립·계측 등 지자체 역할 명확화, 생활속 싱크홀 징후를 발굴·홍보, 기 설치된 관정을 활용하여 균일한 전국 지하수 관측망 구축, 노후 관로 실태 정밀조사('15~'16) 및 노후 관로의 교체·개보수 등 정비 지속추진
-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
  -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하공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추진, 기술 개발(지하공간정보 제작, 지하수 흐름 조사, 도심지 지반 안전성 평가 등)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국토교통부	●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관리 ● 관련 법령 및 기준 제·개정, 기술개발 과제 발굴·추진	
환경부	● 노후관로 정밀진단 및 지반침하 조사	
지방자치단체	● 취약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 지원 ● 지반탐사 지원 및 굴착정보 관리	

### 라. 고려사항

- (관련계획) 지반침하(싱크홀) 예방대책('14.12, 민관합동 T/F)

### 3 저수지

#### 가. 목 적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빈도·강도의 증가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안전대책 강화 필요
- 집중호우시 노후화 된 저수지의 붕괴, 누수 등을 방지하여 하류지역 주민의 피해 및 사회적 불안감 등 해소

#### 나. 주요대책

-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 노후 수리시설 정기적 안전점검·관리 및 노후·재해우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추진, 수리시설 위기상황 긴급점검·지원 전문인력·장비 보강, 일정규모(30만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민·관 합동 비상대피훈련
- 재해없는 농업생산기반 구축 지원
  -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 및 적기 보수·보강, 가뭄상습지 조기해소 및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대응한 다목적농총용수개발
  - 강우패턴 변화에 따른 상습침수 저지대 농경지 배수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규모시설 치수능력 증대사업 확대
- (예방) 정기점검, 해빙기 및 우기대비 점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 (대비) 사고우려지역·위험시설 응급조치,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 (대응) 긴급상황시 인명·재산 피해예방 조치, 추가사고 예방 위한 긴급 점검
- (복구)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등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관리 총괄</li> <li>● 정기적인 안전점검, 수리시설 보수보강 지원</li> </ul>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안전대책본부 운영</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발생시 신속보고 및 응급조치, 피해 예방대책 강구</li> </ul>	
시설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적·정기적 안전점검, 재난대책종합상황실 운영</li> </ul>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과학적·체계적 재해예방사업 확대

## 2-4 교통

### 1 도로(육상운송)

#### 가. 목 적

- 이상기후로 인하여 국지적 집중호우 및 폭설 등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사고예방 및 피해발생시 응급복구 실시로 신속히 교통 소통을 정상화하여 국민불편 최소화
  -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365일 고속도로 관제기능 유지
- 유관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물류거점 및 사업장별 비상수송 대책 등을 선제적으로 수립·시행

#### 나. 주요대책

- 소규모교량(100m 미만)에 대한 정밀점검 확대,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통수단면 부족교량 개선, 국도변 비탈면 정밀조사 및 보수·보강 등 정비
- 사고발생·위험구간 안전점검 및 시설보강,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 개선,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약자 대상 교육·홍보
- 시기별·대상별·사고원인별 사고예방대책 시행, 교통수요 급증대비 특별교통관리, 교차로 소통확보, 무인단속장비 확충, 비상상황 대비 유관기관 합동 FTX
- 사고시 사상자 구호 및 도로통제 등 신속한 초기대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고정보 전파, 대형사고나 강설·폭우 등 자연재해로 교통두절시 교통통제 및 우회
- 대형교통사고시 정확한 사고원인 신속규명, 빽소니, 무보험 등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
-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지속추진
- 안전한 교통 활동에 필요한 차세대 ITS 시범사업 추진
- (예방)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미비사항 조치
- (대비) 우기전 배수로 정비, 방재물자 비축
- (대응) 예찰활동을 강화, 기상특보시 비상근무 실시 및 재해발생에 신속히 대처, 폭설위험 예상시 사고예방을 위한 '先제설 後통행' 원칙 적용
- (복구) 비탈면 붕괴나 도로유실시 신속히 우회도로 지정·안내 및 응급복구, 다음해 우기 전까지 항구복구, 폭설시 신속한 제설 및 교통소통 유지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CCTV 영상, 교통소통 및 통제 정보 제공</li> <li>● 돌발상황 정보(교통사고, 도로침수 등)</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부도로 CCTV 영상, 교통소통 정보(경찰청 관할)</li> <li>● 돌발상황 정보(교통사고 등)</li> </ul>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사태 위험지역, 예보 및 발생정보 제공</li> <li>● 산불 실시간 현황정보 및 위험예보</li> </ul>	
국립중앙의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li> </ul>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재난 방송(공중파 TV, 라디오, DMB, 인터넷 등)</li> </ul>	

## 2

## 해상교통

### 가. 목 적

- “우이산호 및 캡틴반젤리스L호 유류유출사고”, “세월호 사고” 등 최근 대형 해양사고의 빈발로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고조
- 해양사고 원인의 약 90%를 차지하는 인적요인의 체계적 관리와 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켜 연안해역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함으로써 해양 사고 최소화

### 나. 주요대책

- 종사자와 일반국민 대상의 안전교육 실시 및 해양안전캠페인 전개, 인적요인 관리기법의 발굴·전파, 해양안전문화지수 개발 및 안전도 향상도모
- 행정지도 강화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제 운영, 해사분야의 안전경영 의식 고취를 위한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주요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추진
- 해양에서 대형 인명사고시 ‘골든타임’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특수구조단 운영 내실화, 연안사고 구조역량 강화, 교육훈련 및 수색구조 매뉴얼 고도화
- 민간 구조활성화를 위한 자생기반 조성,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통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민간자율구조대 활성화 및 민간 구조자원 D/B化
- 함정·헬기 등 구조장비 최신화, 해상 응급의료 인력·장비 확보, 사고 다발 해역 및 主 조업지 분석에 따른 경비함정 전진 배치로 효율적 안전관리
- 연근해 어선에 V-PASS시스템 설치 확대, 구명조끼착용 생활화 운동 및 법제화
- 지구 전 지역의 조난위치를 실시간으로 구현 등 해상 조난·안전 통신시스템 구축, 국제적 수색구조 협력 강화
- 취약시기별 노후 선착장 개선명령 및 유·도선과 시설 점검, 선박검사기관과 복원성 자료 등 정보공유, 해상안전 기동점검단 운영, 운항실태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점검체계 개선, 해상안전 위해사범 단속
- (예방) 해양안전교육 강화, 안전점검 강화, 연안해역 안전성 평가
- (대비)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운영 내실화, 항로표지 시설확충 및 기능 강화, VTS/AIS 인프라 정비 및 확대, 원격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보강, 러·일·중 등 주변국과 국제 수색구조 협력 강화, 해양선박사고 매뉴얼 개선·보완

- (대응) 중앙·지방 구조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운영, 기관별 업무지정, 대형 사고시 안전관리비상대책 본부 운영, 사고선박 위치파악 및 정보사항 보고·전파, 위기 유형별 및 단계별 대응조치 시행(관심→주의→경계→심각)
- (복구) 복구지원팀 구성, 유가족 지원, 선체인양 등 사고수습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색구조 총괄, 2차사고 방지활동</li> <li>● 중앙긴급통제단(헬기지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 가동</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상자 구호 및 치료 협조·지원, 수습·복구 종합대책 시행</li> </ul>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 수색·구조, 방제 등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 및 복구 관련 예산 지원 등</li> </ul>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해역 및 인근지역 상세 기상정보 제공 등</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활동) 사고 관련 지원대책 마련</li> </ul>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적국(船籍國), 연안국 등 관련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응·협력</li> </ul>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선원 등 북한 관련 사항의 협력·지원 등</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신문·방송 등) 분석 지원, 온라인 여론 수렴 등</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 피해자(가족 포함) 및 사고관계자 심리상담 지원</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 등 육·공 교통수단과 관계된 선박사고 협력·지원 등</li> </ul>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징후 감시, 위기경보 발령 및 중앙수습본부 운영 등</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현장 인근 교통통제 등 질서 유지, 해안수색 지원</li> </ul>
국립중앙의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li> </ul>
선박안전기술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사고 상황에 따른 정부활동 지원</li> </ul>
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내 피해시설 파악, 수습 및 복구 인력·장비 투입</li> </ul>
수협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어선 안전지도 및 홍보</li> </ul>
한국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손상 조사 기술검토 등 지원 등</li> </ul>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①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②한국형 e-Navigation 구축을 통한 예방체계 첨단화, ③선원대상 법정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자격기준 강화, ④선박 안전기준 강화, ⑤해경 현장대응능력 및 인프라 확충, ⑥해상 교통관제시스템 확충 및 관제사 교육훈련 강화

### 3 항공

#### 가. 목 적

-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13.7.7), 삼성동 헬기사고('13.11.16)가 발생함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된 우리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
- 항공재난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항공기 사고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복구와 함께 인적·물적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
- (목표) 항공사고를 매년 15% 감축  
※ 100만 비행횟수당 사고건수 ('14) 4.5건 → ('15) 3.68건 → ('17) 2.66건 (현 세계 최고 수준 2.7건)

#### 나. 주요대책

-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항공안전법 제정, 경영실적 악화 항공사에 대한 집중관리(전담감독관, 특별점검)
- 인센티브(상시점검횟수 감축)를 통한 안전책임 경영제 정착, 승무원 피로관리 강화를 위해 승무시간 제한기준 개선 및 한국형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 도입, 안전우려 외항사에 대한 취항금지 규정을 항공법령에 반영
- 재래식 비행절차(사천·포항·대구·광주공항)의 성능기반항행(PBN)절차로 전환, 항공교통량 증가 대비 및 유사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한 「항공안전통제센터」 구축,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계기착륙시설, 예비레이더 등) 확충 및 현대화
- 운항정보를 확인하면서 비행할 수 있는 차세대 감시시스템 운항지원체계 구축, 헬기업체 교육기준을 마련하고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확대 추진
- 항공사고 특성에 맞는 골든타임제 운영, 시나리오 다양화를 통한 훈련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 협조체계 구축, 주요공항에 사고대처 등 비상대응요령 교육을 위한 미니부스 설치 등 대국민 항공안전문화 확산
- (예방) 안전운영체계 준수여부 등을 정기 및 수시 감독, 국제표준안전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여 미비점 개선,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구축, 관제시설 현대화

- (대비) 사고대응 시나리오 다양화 및 지속적인 항공기 사고수습 모의훈련 실시, 유사시 승객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항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
- (대응)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항공사 사고대책반 등 기관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을 적극 홍보
- (대응) 피해자·가족 지원시설 설치, 공항내 사고시 신속한 시설물 복구 및 공항 운영 정상화 대책 추진,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관리, 재난시 초동조치 및 지휘</li> <li>● 유관기관에 행·재정적 지원 등</li> </ul>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의 대응·복구 관련 지원에 관한 총괄·조정</li> <li>● 소방·구조·구급 활동 등 긴급 지원체계 운영</li> </ul>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서의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총괄·조정</li> </ul>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 수색구조 인력 및 장비지원</li> </ul>	
지방항공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상황 파악·통제,</li> <li>● 항공기 운항통제 및 기동불능항공기 처리 감독</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대응 장비 및 인력 지원, 공공시설 복구</li> <li>●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임시구호시설 운영</li> </ul>	
국립중앙의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li> </ul>	
공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 시설 복구 및 공항운영 정상화</li> </ul>	
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족 지원, 사고현장 수습</li> <li>● 기체처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동원</li> </ul>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항공 안전관리 대책

## 4 철도

### 가. 목 적

- 철도 안전제도 선진화, 정부안전 감독기능 강화 등을 통해 인적과실 및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장애 예방을 강화
- (목표) 철도사고 사망자수 '19년까지 10명으로 감축

### 나. 주요대책

- 철도운영자에 대한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를 위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제도 도입, 철도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을 수립 및 활동강화
- 기관사 기본안전수칙(출발전, 운전취급절차 등)을 철도안전법령에 반영, 철도관계업무 종사자에 대해 자격제도를 도입
- 노후시설 교체 및 전기·신호설비 보강, 철도역사내 스크린 도어 설치 확대
- 고속열차 안정화(열차장애 예방) 대책 추진, 기대수명을 고려한 예방적 차량 안전관리(기대수명 도래 차량 5년마다 정밀진단 등)
- (예방) 안전시설 및 설비 개선·보완 등 사고요인 사전 제거, 역사 및 터널내 화재사고 대비 방재설비 개선, 교량·터널 등 철도운행 관련 취약시설 집중 관리, 신설·개량선에 대한 사전점검, 철도위험물 안전 운송체계 확립
- (대비) 대피소·긴급대피로 등 긴급 구조·구난체계 구축, 사고 대비 인력·장비·물자 동원태세 구축,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점검, 철도관계자 교육·훈련 및 사고발생시 승객 대피요령·대응방법 등 홍보활동 강화
- (대응) 현장 위주의 신속한 초동조치, 2차사고 방지, 신속한 사고·피해 규모 파악, 가용 장비·인력 등을 신속히 투입, 가스·전기 등 복합적 재난대응체계 가동
- (복구) 철도안전감독관 및 조사단 등의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사상자 처리·지원대책 강구,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기수습대책 수립

## 다. 추진체계

구 분	주요 기능
국토교통부	● 사고수습의 총괄, 관련 상황 대처 및 비상대책 시행 주관
국민안전처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지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지역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국립중앙의료원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한국철도공사	● 긴급구조·구호 지원, 유관기관간 협조 ● 전동차 운행 조정 관리 및 대체 교통대책 시행
지방자치단체	● 관할구역 사고수습·지원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조치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철도 안전관리 대책

## 2-5 화생방 사고

### 1 방사능

#### 가. 목 적

- 증가하는 원자력안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하고
- 국가 방사능 방재체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통해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목표) 체계화된 원자력 안전관리, 재난 규모별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 구축, 안전소통·협업·협력 확대

#### 나. 주요대책

##### 【주요과제】

- 설계·제작·구매·납품·설치·정비 등 원전全분야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사선 이용기관의 책임강화를 통해 종사자 안전보장 및 방사능사고 사전예방, 국제 핵안보 환경변화를 반영한 효과적 방호체제 구축 및 핵투명성 유지
- 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방사능방재 기반체계 확립, 비상시에 대비한 시설·장비·물품 확충 및 체계적 관리, 훈련강화 등을 통해 유관기관 비상대응역량 제고, 방사능재난 비상대응시설·장비 상시 가동태세 유지
- 원자력안전 정책 및 관련 정보 공개 및 주민 교육·홍보 등 원자력안전 소통 체계 구축,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의 원자력안전 협력확대, 원자력안전 정책협의회, 사고대응·의료 등 방재유관기관간 국가차원의 유기적 방재체계 구축

##### 【예방대책】

- 원자력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사·점검 및 품질보증검사,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및 일일작업량 보고의무를 부여
- 방사성 오염 수입고철의 국내유입 감시, 한·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시스템 개선, 원자력 전용품목 관련기술 통제 체제 강화

## 【대비대책】

- 군·경·소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시설 부지별 합동훈련 및 주민보호·환경탐사·비상진료 등 분야별 집중훈련 실시
-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및 비상진료 장비·시설 확충을 통한 신속한 의료대응 체계 구축, 주민보호시설·물품에 대한 점검 강화, 물리적 방호 협력체계 구축 등
- 긴급 경보시설을 기준 원전반경 2km에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으로 확대 설치,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인구분포, 구호소 활용가능 시설수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구호소를 확대 지정
- 갑상선방호약품을 비상계획구역 전체로 점진적 확충, 대규모 사고로 현장지휘 센터 설치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거성 강화 설비 설치

## 【대응대책】

- 방사능 재난대응 총괄조정 및 현장대응활동 지휘·통제
  - 환경방사능탐사 및 방사선영향평가 수행을 통해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방호약품 배포 등 주민보호조치 결정
  - 연합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통일되고 일원화된 대외정보 제공, 유언비어 대응
  - 사고현장 환경방사능감시활동 및 방사선 피폭 의료대응 총괄
  - IAEA 등 국제기구 방사능재난 상황 통보
  - 필요시 원전사고 수습 및 방사능오염 제거를 위한 관계기관 인력·장비 지원 요청

## 【복구대책】

- 원안위·사업자·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재난조사위원회 구성, 사고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
- 대피주민 복귀방안, 사고지역 제염·복구 등 중장기 방사능 재난 사후대책 시행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 만큼 재정적 담보를 확보하고 원자력손해 발생시 배상책임한도액까지 신속 보상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원자력안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능 재난 총괄 조정 및 현장대응 활동 지휘·통제</li> <li>●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li> </ul>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li> <li>● 주민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지자체 대응활동 지원(필요시)</li> <li>● 방사성 오염 시설 제염, 방사선 감시활동 지원</li> </ul>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에 필요한 특별예산 지원</li> </ul>	
미래창조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연구기관 활용 인력·장비 및 재난방송 지원</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호시설 지정 협조 및 학생대피 지원, 학사일정 조정</li> </ul>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정보교환, 지원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창구 운영</li> </ul>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장비 등 지원</li> </ul>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지역 인력 및 재정지원방안 강구</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발생 내용 발표 지원</li> </ul>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생산 농축산물 방호, 방사능 오염에 대한 통제</li> </ul>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전사업자의 사고수습 지원, 전력수급 지원 등</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현장응급의료 및 지역 주민 심리안정화 지원</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급수체계 확보, 환경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제거 중장비 지원, 공항 방사능오염검사 등</li> </ul>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어항 및 수산시설보호</li> </ul>	
식품의약품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지역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방사능오염 관리</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보호조치 지원 및 주민통제</li> </ul>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류분석 및 방사성물질 이동 경로 분석 등</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대피 및 보호, 수송대책 강구</li> </ul>	
원자력안전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사고해석 및 방사선영향평가</li> </ul>	
원자력의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가동</li> </ul>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자력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 및 사고확대 방지</li> <li>● 방재유관기관 인력·장비 지원</li> </ul>	
국립중앙의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기관 지원 필요시 방호복 등 제공 및 오염지역 주민 응급진료 지원</li> </ul>	

## 라. 고려사항

- (관련계획) 제1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15~'19),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12~'16), 제1차 생활주변 방사선방호 종합계획('13~'17)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사능재난 분야 계획으로 간주  
(방사능방재법 제34조제2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①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②방사선안전 및 방사능 방재체계 점검·개선, ③원자력 안전소통·협업·협력 확대

## 2

## 유해화학물질

## 가. 목 적

- 화학사고는 폭발적 분출로 인해 짧은 시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사전 예방대책 강화 및 사고시 신속하고 유효한 대응조치 필요
- 선진 화학안전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으로 사고피해 최소화
  - '12.9월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지속적인 화학사고에 국민불안감 상존  
※ 화학사고 발생건수 : '12년 9건 → '13년 87건 → '14년 97건

## 나. 주요대책

- 정기검사·안전진단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시행, 관세청과 자료 공유로 무허가·미확인 업체 관리, 저장탱크 물질표시·보호장구 비치 등 확인·교육 등 화학물질 취급현장 안전확보
- 상시적 사고대응 전문교육, 전문교육훈련장 신설, 지역 기업·유관기관간 협조 체계 및 對주민 통보체계 구축, 합동 모의훈련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 역량 강화
- 화학사고 피해예측·교육훈련 시스템, 누출 화학물질의 차단·제거기술, 사고후 생태계·인체에 미치는 사후영향의 과학적 관리기술 등 선진 대응기술 개발
- 통계조사·점검결과·사고이력 등 관련정보 공개, 온-오프라인 화학법령 상담·교육, 설명회 및 중소 영세업체 대상 방문교육 등 화학사고 예방문화 확산
- (예방) 유해화학물질 및 관련 취급시설 안전관리, 수입·운송관리
- (대비) 합동방재센터 중심의 화학사고 대응기관 역량 강화, 사고대응장비·물자·시설·인력 확충, 합동훈련 실시
- (대응) 화학사고 대응기관의 신속한 가동 및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2차 사고(오염확대, 수질오염사고 확대 등) 대비 대응활동 전개
- (복구) 필요시 화학사고조사단 구성을 통해 사고조사 및 영향조사 실시, 사후 복구계획 수립, 피해주민 지원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화학사고 수습지원</li> <li>● 재난관리책임기관 활동 종합 및 조정</li> </ul>	
유역(지방)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지역 화학사고 예방, 사고원인조사 및 피해평가</li> </ul>	
화학물질안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사고 물질·대응정보 및 영향범위 등 제공</li> <li>● 화학사고 현장기술지원, 대응관련 시스템 운영·보급</li> </ul>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지역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li> <li>●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조사</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시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주민보호조치</li> </ul>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복구 지원활동 총괄 조정</li> <li>● 위험물 취급정보 공유,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li> </ul>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성가스 취급정보 공유, 취급사업장 관리</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발생시 위험상황신고실 운영, 초동대응 지원</li> </ul>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지역·인근지역 상세 기상정보 제공</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발생 시 현장통제 지원 및 사고원인 조사</li> </ul>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시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재난방송 자막 송출</li> </ul>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지역내 화생방 신속대응(사고물질조사, 제독활동 지원)</li> </ul>	

## 라. 고려사항

- (관련계획) 화학물질안전관리 종합대책('13~'17)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①선진국형 화학안전관리제도 조기안착, ②화학사고 취약분야 현장안전 역량강화, ③합동방재센터 중심의 화학사고 대응체계 공고화, ④범사회적 화학안전 문화 확산, ⑤특수사고 현장대응능력 강화

### 3 생물재난

#### 가. 목 적

- 생물테러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에 대비한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마련
  - 교황방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한·아세안 정상회담 등 대규모 국제 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됨에 따라 안전태세 확립 필요성 증가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생물테러, 화학테러, 사이버테러 등)의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 필요

#### 나. 주요대책

- 대비·대응 역량 강화
  - 조직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필수 물품 비축 및 보급체계 구축, 전문인력 확보, 조사·연구 및 관련 실험실 건립
- 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응
  -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
- 조기인지를 위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감시체계 강화
  -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의료인 교육·홍보강화
- 병원체 조기진단을 위한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검사담당자 전문성 강화
- 위기상황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자원동원계획 수립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지휘본부 운영, 원인물질 조사 및 초기 통제선 설정</li> <li>● 질병별 조치 시행 및 역학 조사</li> </ul>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관리 인력·시설 지원</li> <li>● 원인물질 탐지활동 및 인체제독 지원</li> </ul>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심우편물 검색 강화</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보호장비, 환경 제독 및 환경검체 분석 지원</li> </ul>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반입 물품 검색, 긴급제공 의약품·장비 통관 협조</li> </ul>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제지역내 진·출입 통제, 질서유지 등</li> <li>● 공항·항만 보안활동 지도 강화</li> <li>● 응급진료소·구호소 운영, 인력장비 이송헬기 지원</li> <li>● 주민 대피·환자 이송 및 전문인력·장비 동원 지원</li> </ul>	
국립중앙의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기관 지원 필요시 방호복 등 제공 및 오염지역 주민 응급진료 지원</li> </ul>	

## 2-6 환경오염

### 1 해양오염

#### 가. 목 적

- 기름 등 유해물질의 해상 운송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 상승 및 여수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 등 최근 잇따른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해양 환경재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및 관심 고조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 및 피해 최소화

#### 나. 주요대책

- 대응기술 및 장비개발, 관리체계구축을 통한 해상에서의 HNS(위험 · 유해물질) 대응역량 강화
- 해양오염 취약 선박 · 해양시설 중점관리 및 선박 ·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이행실태 점검, 기름이송작업계획서 준수 의무화, 안전관리 문화 확산
- 방제 교육 · 훈련 강화 및 방제정 · 장비 보강, 유출유 확산예측 프로그램 및 해양오염예방관리시스템 고도화, 해안방제정보 D/B 구축 및 해안방제지원 시스템 개발, 해안오염평가팀(합리적 방제조치 · 방제중지 권고) 운영
- 방제작업 후 오염지역 모니터링 및 복원사업,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국가 · 지역긴급방제 계획 개정, 한 · 중 · 일 · 러 방제정보 교류 · 지원 및 합동 방제훈련 추진
- (예방) 해양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기름이송작업계획서 준수 의무화
- (대비) HNS(위험 · 유해물질) 관리체계 정립, 어촌계 방제대응센터 설치 · 운영, 대 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교육 · 훈련, 방제정 및 최신 방제장비 연차적 보강
- (대응) 신속출동이 가능한 긴급방제팀을 운영, 유출차단 등 초동조치 강화, 오염평가 · 대응전략수립 · 방제자원 동원 등 방제조치
- (복구) 생태계 및 해양환경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방제조치에 관한 사후 평가 실시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지역) 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 총괄·조정</li><li>●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사고현장 방제 지휘·통제</li></ul>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해지역 주민 지원대책 강구</li><li>● 해양오염영향조사</li></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안 방제 및 어장·양식장 보호</li><li>● 자원봉사자 관리, 보건 및 의료지원</li></ul>	
해양환경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에 의한 현장방제 지원</li><li>●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기술 지원</li></ul>	

## 라. 고려사항

- (관련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응역량 강화

## 2

**수질오염****가. 목 적**

- 폐놀, 1·4다이옥산, 유류, 유해화학물질 등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취·정수장 급수 중단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배출사업장, 하폐수처리시설 등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고 발생시 철저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확산 차단 및 피해 규모 최소화

**나. 주요대책**

- 수질오염사고 감시체계 구축
  - 산업폐수관리체계 선진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신설,  
수질오염감시경보제 등 감시강화,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지정 등
- 수질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
  -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운영, 수질오염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사고대응  
방제 훈련·교육, 광역적 수질모니터링 체계,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활용,  
취약시기 수질관리대책 마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예방·대비) 수질자동측정망·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하천 감시, 갈수기·장마철 등  
취약시기 수질관리대책 추진, 상수원통행제한도로 및 수질오염사고 유발시설  
점검, 사고 대응 방제훈련·교육
- (대응) 사고발생 보고 및 현장 초동조치, 오염물질 확산 예측 및 광역적  
수질모니터링 실시, 방제인력·장비 동원, 2차 수질오염사고 확산방지 조치
- (복구) 피해조사 및 긴급복구, 사고원인 및 전개과정 분석·평가, 수질오염  
사고 방제시스템 보완, 사고후의 환경영향조사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질분석 총괄(분석기관, 지점, 항목 등)</li><li>● 지자체의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지원 확대</li></ul>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난현장 소방력 동원,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긴급이송</li></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탐·보 방류량 조절 등 협조</li></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민·관·군 합동방제 등 방제활동</li><li>● 비상급수체계 가동 및 지역주민 행동요령 공지</li></ul>	

## 2-7 국가기반체계보호

### 1 총괄

#### 가. 목 적

- 에너지 등 기능 마비시 인명, 재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지속적인 기능 유지(업무연속성 확보)
  - \*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중요시설 등 9개 분야 102개 기관 274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13.10월)

#### 나. 주요대책

-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 설정 및 보호지침 개선
  - 국가기반시설의 합리적 지정기준 마련 및 재정비 추진('15년~), 단기적 보호 관리계획의 조기 수립·자동('15.3월), 국가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보호지침 수립주기를 1년→5년 단위로 개선('16년~)
- 교육·훈련 및 주요정보 DB화
  - 기관별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맞춤형 보호역량제고 훈련 및 결과 환류, 시설현황·위험도분석·필수기능·관련전문가 등 주요정보 DB 구축 등

#### 다. 추진체계

기관명	기능(역할)	분야
국민안전처	● 국가기반시설 보호업무 총괄·조정 ● 국가기반시설 담당자 보호역량 제고 지원	제도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분야 국가기반시설 보호활동 ● 소관 관리기관 및 시설의 지정·관리	에너지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 분야 국가기반시설 보호활동 총괄 ● 소관 관리기관 및 시설의 지정·관리	정보통신
국토교통부	● 교통수송, 식용수 분야 국가기반시설 보호활동 총괄 ● 소관 관리기관 및 시설의 지정·관리	교통수송, 식용수

기관명	기능(역할)	분야
해양수산부	● 교통수송 분야 국가기반시설 보호활동 총괄 ● 소관 관리기관 및 시설의 지정 · 관리	교통수송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금융 분야 국가기반시설 보호활동 총괄 ● 소관 관리기관 및 시설의 지정 · 관리	금융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분야 국가기반시설 보호활동 총괄 ● 소관 관리기관 및 시설의 지정 · 관리	보건의료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분야 국가기반시설 보호활동 총괄 ● 소관 관리기관 및 시설의 지정 · 관리	원자력
환경부	● 환경, 식용수 분야 국가기반시설 보호활동 총괄 ● 소관 관리기관 및 시설의 지정 · 관리	환경, 식용수
행정자치부	● 정부청사 분야 국가기반시설 보호활동 총괄 ● 소관 관리기관 및 시설의 지정 · 관리	정부청사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국가기반시설 연속성 확보를 통한 보호역량 강화

## 2 에너지 – 전력, 천연가스, 석유

### 가. 목 적

- 어떠한 재난에도 최소한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전력, 천연가스 및 석유수급의 안정성 도모

### 나. 주요대책

#### 【주요과제】

- 정부·공기업·민간이 함께하는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마련, 전력 유관기관들의 기준준수 여부 관리
- LNG 생산국 및 바이어와의 공조체제 구축, 가스수급 차질대비 사용제한 계획 수립, 천연가스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
- 지하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수리시설 설치, 유조선 접안 방호재 설치, 석유비축탱크 소방시설 점검

#### 【예방대책】

- 안정적 전력 수급대책 및 전력설비·발전연료 확보대책 추진,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계통의 예비(우회)체계 구축
- 일일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안정적 재고수준 유지 노력 전개, 사전 징후 및 언론·여론동향 파악, LNG 생산국 및 바이어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 해외유전 개발 및 원유도입선 다변화, 중동 주요 산유국과의 협조체제 구축

#### 【대비대책】

- 전력 분야 위기대응체계 구축, 전력수급 안정대책 및 비상 수요관리 대책 수립, 비상수급 조절계획 수립·점검 등
- 국내외 LNG 시장동향 분석 및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대국민 가스 소비 절약 홍보, 가스수급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별 대응 검토
- 비축유 방출 계획 및 석유수급 조정계획 수립, 에너지 절약 및 정부시책에 대한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 【대응대책】

-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로 위기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광역정전 방지 및 발생시 비상대응체계 가동,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로 2차 피해 방지
- 가스 사용제한 시행계획 수립 및 제한공급, 재해발생 예상지역 및 취약시설 긴급 안전점검
- 위기유형에 따른 대응조치, 국제에너지기구 등과 원유 수급·가격 정상화 노력, 위기극복을 위한 홍보 및 불안심리 해소 노력

## 【복구대책】

- 신속한 피해복구로 전력 공급·유통체계 정상화, 위기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시행
- 위기대응조치 수행결과 평가 및 보완, 피해시설의 조속한 정상가동을 위한 후속조치, 항구적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강화
- 위기진행 기간 중 발생한 피해사례 종합 및 복구대책 마련·시행, 위기대응 조치 등에 대한 평가·보완

## 다. 추진체계

기관명	기능(역할)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li> <li>● 석유수급대책위원회, 에너지비상대책본부 등 운영</li> </ul>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구조·구급</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정책 운영 총괄</li> <li>● 전력수급 위기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대책 강구</li> </ul>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가스 생산국 등과의 협력 등 대외 경제협력</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안유지 및 주요 시설물 방호</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활동 및 홍보 지원</li> </ul>	
원자력안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 유지(안전규제, 비상대응시설 관리)</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된 노사관계 유지 지원</li> </ul>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시설 방호 지원</li> </ul>	

기관명	기능(역할)	비고
방송통신위원회	● 홍보 지원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의 정전대응방안 점검	
국토교통부	● 승용차 부제, 대중교통 활성화 등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지방자치단체	● 지역대책본부 운영, 에너지절약대책 시행	
전력거래소	● 장·단기 전력수요 예측, 전력수급 안정대책 시행	
한국전력공사	● 송전·변전·배전 설비 건설·운영	
발전회사	● 발전설비 건설·운영, 장·단기 발전연료 조달방안 추진	
전기안전공사	● 비상발전기 가동 협조 요청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 절약 홍보	
가스공사	● 위기수준 평가 및 비상발령, 비상대책본부 운영	
전력거래소	● 기저발전기 가동률 제고 및 중유우선가동 협조	
도시가스협회	● 가스공급 중단지역 가정취사용 연료공급 지원	
석유공사	● 해외생산 원유 도입, 지역별 수요파악 및 비축유 방출	
석유관리원	● 가짜 제품 유통현황 파악과 단속	
정유사	● 정부비축유 활용계획과 원유수급대책 시행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① 전기·가스·석유분야 안전관리 강화, ②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인프라 구축, ③ 에너지 취약계층 안전복지망 구축

### 3 통신

\* 정보통신, GPS전파혼신, 우주전파재난 등 포함

#### 가. 목 적

- 각종 재해·재난발생시 국가 기간망인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가기능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철저한 준비·점검으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통신수단 등 효율적 대응환경을 구축하는 등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
- GPS 항법신호는 차량내비는 물론 국가정보통신 인프라에서도 그 활용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전파혼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국가차원의 대비책 마련
- 우주전파환경 변화로 인한 위성·항공·항법·전력 및 방송통신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주전파재난 대책 추진

#### 나. 주요대책

##### 【주요과제】

- 통신사업자의 재난관리 실행력 제고 및 중요 통신시설의 기술기준 적합확인 강화
- 통신재난 보고대상 사업자 확대 및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 개선
- 노후H/W 교체, 스마트기기 연동 등 최신기술을 적용한 통신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 이동환경에서의 GPS 교란방어 및 GPS 전파혼신 검증플랫폼 등 기술개발, GPS 전파혼신 감시사각지대 해소, 이동환경에서의 GPS 혼신 방어기술 및 전파혼신 검증 플랫폼 기술개발 등
- 태양활동 관측 및 예·경보체계 강화, 대응체계 구축, 전문교육·홍보프로그램·국제 협력활동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 【예방대책】

- 통신재난시 보고의무 통신사업자 범위 확대,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통신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주요 기간전송망 다원화 및 통신장비 이중화, 중요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 마련

- (GPS 혼신) 위기징후 실시간 감시, GPS 혼신 관련정보 수집·분석·전파,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점검, 'GPS 혼신대응반'등을 구성·운영, GPS 혼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피해범위·양상·규모 예측, 방어기술 등)
- (우주전파재난) 우주전파재난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측 및 정보수집 역량 강화, 연구개발(피해여부·양상·규모·시점 예측 등) 우주전파환경 예보서비스

### 【대비대책】

- 위기대응 매뉴얼 현행화, 통화량 급증 대비 소통계획 수립 및 대국민 홍보, 유형별 모의훈련, 통합재난관리시스템(UDMS) 고도화, 통신사업자 교육 강화
- (GPS 혼신) 범정부적 GPS 혼신 감시시스템 구축·확대, GPS 혼신 대비 백업·방어·대체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교육 및 모의훈련 추진, 위기수준 평가 등
- (우주전파재난) 위기징후 감시, 위협정보 수집·분석·전파, 재난대비 백업·방어·대체시스템 확보, 우주전파환경 경보, 대국민 홍보·교육 및 모의훈련

### 【대응대책】

- 위기수준별 재난관리조직 운영(상황파악, 상황전파, 복구지원, 재발방지대책), 유관기관 및 통신사업자와의 협력체계, 통신재난관리협의회 활성화
- (GPS 혼신) 경보단계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에 기초한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 적극적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 불안심리 해소
- (우주전파재난) 사태의 분석·평가를 통해 대책결정 및 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에 기초한 대응·복구 방안 전파, 적극적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 불안심리 해소

### 【복구대책】

- 긴급복구자원·긴급통신수단의 사전 확보·관리,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사별 긴급복구 우선순위에 따른 신속한 피해복구 및 통신장애 피해 최소화, 긴급 복구 물자의 공동 활용 등 추진
- (GPS 혼신) 국가기반시설 및 관련 서비스 조기 복구, 재난 발생원인 분석 및 대응활동 종합 평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기술개발 및 운영체계 보완
- (우주전파재난) 사태의 분석·평가를 통해 대책결정 및 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에 기초한 대응·복구 방안 전파, 적극적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 불안심리 해소

## 다. 추진체계

### ① 정보통신재난

기관명	주요 기능
미래창조과학부	● 관련 상황평가 방송통신분야 위기경보 발령 ● 비상대책 시행,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SO, IPTV, 위성 등)
국민안전처	●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상황 대응관련 통합 지원
국방부	● 방송통신 주요시설 방호, 군 기능인력 및 장비 지원
고용노동부	● 노사쟁의 조정 및 불법파업의 조기종결 유도
경찰청	● 관련 동향·정보 수집 및 전파, 주요시설 방호 지원

### ② GPS 전파혼신

기관명	주요 기능
미래창조과학부	● GPS 혼신 대응 위기경보 발령 ● GPS 혼신 피해 예방을 위한 백업·감시·방어시스템 확보
중앙전파관리소	● GPS 혼신 위기 관련 혼신 대응반 편성 운영
국방부/합참	● GPS 혼신 국방분야 상황 총괄 및 조정
국토교통부	● 항공기 관련 GPS 혼신 위기 평가·경보체계 운영
해양수산부	● 선박 관련 GPS 혼신 위기 평가·경보체계 운영
국민안전처	● 경비세력 및 선박 안전관리활동 등 시행
외교부	● ICAO, ITU 등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외교적 대응 주관
통일부	● GPS 혼신 관련 대북 대응 주관
지방자치단체	● GPS 혼신 위기상황 시 주민(근로자 포함) 보호대책

### ③ 우주전파재난

구 분	임무 및 역할
미래창조과학부	● 우주전파재난 분야 위기경보 발령(NDMS 등 활용) ● 우주전파재난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 작성·배포
국민안전처	● 우주전파재난에 의한 대규모 재난관리 지원활동 총괄 조정
국방부	● 우주전파재난 국방분야 총괄 및 조정
산업통상자원부	● 우주전파재난 전력분야 상황 종합
국토교통부	● 우주전파재난 항공기 관련 상황 종합
해양수산부	● 우주전파재난 선박(어선, 여객선, 상선) 관련 상황 종합
기상청	● 우주전파재난 기상·기후관련 상황 종합
지방자치단체	● 우주전파재난 위기상황 시 주민(근로자 포함) 보호대책 추진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정보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

## 4 교통(항만)

\* 도로, 철도, 항공, 해양교통 등은 교통재난 분야에 포함

### 가. 목 적

- 교통수송 분야 국가기반시설인 전국 무역항만(12개소)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항만의 대외경쟁력 확보

### 나. 주요대책

- (예방)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장비확보 및 인력양성
- (대비) 항만운영 대체인력 확보, 민간소유 예선 투입 시스템 구축, 재해복구 정보센터 및 보안시스템 구축 운영
- (대응·복구) 군인력 지원, 용선대체,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보수 등

### 다. 추진체계

기관	주요 기능
국민안전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위기상황 점검 및 대책협의
국방부	● 인력 및 장비 지원
기획재정부	● 예산 지원 등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 관련 업무 지원 등
해양수산부	● 위기상황 긴급전파 및 비상 항만운영 대책 마련
경찰청	● 질서 유지 및 지원
항만공사	● 항만 내 피해시설 파악, 수습 및 복구 인력·장비 투입 등

## 5 금융

### 가. 목 적

- 금융전산 기능 마비 시 국민의 금융재산과 금융의 필수기능 및 금융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분야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 재난시 대국민 금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금융전산분야 국가기반 시설 기능마비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하도록 위기대응 역량 확보
    - \*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온라인 지급결제 등
  - 재정경제사이버안전센터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국가 기반 금융전산시스템 보호

### 나. 주요대책

- 업무연속성을 위한 금융전산 안전관리체계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점검·보완, 금융전산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금융전산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충, 재난 상황(자연재해 등) 24시간 감시 및 조기 탐지체계 구축
- 금융권 공동 백업전용센터 구축, 노후IT설비 교체 등 IT인프라 안전성 강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인프라 확충, 국가기반시설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확대, 출입통제, 인원 및 장비 등 물리적 보안을 강화
- 관련부처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전산 국가기반시설 안전점검, 위험 요인을 식별에 따른 대응대책과 이행여부 점검
- 금융전산분야 재난관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운영, 현장중심 재난대응 훈련
- 사이버침해에 대한 금융전산분야 관제체계 구축 및 운영
  - 모의훈련, 취약점 진단, 전문교육 등을 통해 사고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 정보자산 취약점 이력관리 강화
  - 정보자산 취약점을 관리·평가·개선하는 통합관리 DB구축, 우정정보시스템 웹서비스 및 인프라 상시진단, 신규도입 및 변경되는 시스템 보안성 검토
- 기반망 구조 및 관제환경 고도화 설계 추진
  - 기반망 네트워크(전송망·교환망) 구조 재설계, 운영관리환경 아키텍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수립 등 전송망 구성방식에 대한 전략 수립

### ○ 기반망 백업체계 강화

- 내용연수가 경과한 관내국 백업구성 노후장비를 적정 성능의 신규장비로 교체 등 기반망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 (예방) 금융전산핵심시설 위기관리 예방계획 수립·시행, 위기징후 실시간 감시·정보수집·분석·전파·보고, 핵심시설의 취약점 개선·보안조치 등 위기발생 차단
- (대비)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점검, 핵심시설 보안상태·경비체계 점검, 위기상황 대비태세 및 대응체계 점검, 상황별 대비계획 주기적 교육·훈련 등
- (대응) 범정부차원 「합동대응팀」 운영, 상황발생초기 핵심시설·설비 보호, 각 금융기관 긴급대응반 지휘 및 대응활동 점검, 백업시스템 가동 및 대체 인력·장비 투입 점검,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 침해사고 대응단계별 경보발령 등 신속·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한 통합보안 관제센터 내에 실무협의회 운영,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복구) 범정부 차원의 「위기복구팀」 운영 등 사태 이전 상태로 신속한 원상 회복에 주력, 위기발생 원인분석 및 차후 재발방지시스템 보완

## 다. 추진체계

기 관	주요 기능	비고
금융위원회	● 위기 상황 대응 수준 결정 및 수준별 조치 시행 총괄	
국민안전처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지원 총괄·조정	
각급기관 (금융기관)	● 위기징후·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위기상황 발생원인 분석 ● 유형별 위기상황 대응시나리오 개발 및 교육 훈련	

## 6 의료서비스

### 가. 목 적

- 재난발생시 외상환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외상센터 등 전문 치료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외상외과 전문인력을 양성
  - \* 2017년까지 전국에 총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고 필요시 추가 설치하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됨
- 현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인한 혈액 부족을 예방하고, 각종 재난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비상 혈액수급 계획 추진
  - 혈액 검사 및 혈액 보관 장비와 시설의 적정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비상 시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 공급망 유지
  - (목표) 1일 혈액공급능력의 100퍼센트 이상 유지

### 나. 주요대책

- 권역외상센터 단계별 설치 지원
  -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배치
- 외상외과 전문의 양성 지원
  -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국가장학 수련전임의 제도 도입, 중증 외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건비, 교육비 등을 지원
- 현혈 참가 계층 다양화
  - 국고지원 현혈의 집 설치, 정기적으로 현혈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등록 현혈자로 가입하는 제도(등록현혈회원) 활성화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단체 등이 정기적으로 현혈에 참여하는 현혈약정제, 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공유로 혈액의 안전성 강화
- 혈액검사 선진화 및 안정적 혈액공급망 유지
  - 면역검사시스템 및 세균검사 자동화 장비 운용을 통한 혈액 안전성 강화, 혈액보관 시설·장비 이중화 및 비상시 시설간 혈액이송 등 안정적 혈액관리 훈련 실시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성·일관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 유지</li> <li>● 비상 진료 및 혈액수급 대책 강구</li> </ul>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환자 이송 및 혈액 운송 지원</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 교섭지도 및 필수업무 유지 지원</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구축, 학생 단체현혈 지원</li> </ul>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혈 협조</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혈 홍보 협조</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약국, 혈액원 등 동향 파악</li> </ul>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십자사 혈액사업 총괄 관리</li> <li>● 혈액 채혈·제제 및 의료기관에 공급</li> </ul>	
국립중앙의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li> <li>●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의료지원팀 및 헬기 지원 등</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 모니터링, 병원 및 약국 운영현황 주민 안내</li> </ul>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대책

## 7

## 수도(식용수)

### 가. 목 적

- 도시집중화에 따른 대규모 상하수도시설의 의존도 심화, 자동화 및 복합화로 대형재난 발생요인 증가, 국지성·계릴라성 강우시 상하수도시설 취약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 미급수 인구(전체의 4.9%)에 대한 다각적 수질관리 강화, 미량유해물질 대응 상하수도시설의 고도화 필요
- 식·용수 공급시스템의 파괴 및 마비 등 국가적 위기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
  - 식용수분야 국가기반시설(다목적댐, 용수댐, 광역정수장) 재난 발생 시에도 최소한도의 국가기능 유지 및 차질 없는 공공 서비스 제공

### 나. 주요대책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시 침수대응, 하수관거정비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사업 추진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 공공하수도의 우수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추진
- 댐 건설 및 치수능력증대, 광역·공업용수도 복선화 및 신뢰성 제고
- (예방) 위기징후 실시간 감시 및 전파·보고 시스템,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강화, 위기발생 사전억제 및 차단활동
- (대비) 위기징후 감시 및 전파 공유체계 점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과 조정 대화협의체 준비, 위기상황 대응체계 준비상태 확인
- (대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및 상황전파, 식·용수 시스템 시설·설비·장비에 대한 보호 및 경비, 대체자원 운용 및 비상/대체급수 지원
- (복구) 식·용수 공급 시스템을 위기발생 이전 상태로 복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및 보완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환경부	● 자체 위기평가회의 운영/위기경보 발령	
국토교통부	● 광역~지방상수도 연계 검토, 대응·복구 단계 수질영향 점검	
한국수자원공사	● 위기상황별 초동대응 및 복구 대응조치 실시 ● 비상용수 공급 방안 수립 및 현장 긴급복구 주관	
국민안전처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원	
국방부	● 식용수 비상공급시 운반급수차량 및 인력 지원	
경찰청	● 식용수 비상공급 및 복구시 질서유지	
문화체육관광부	● 언론 대응활동 지원	
고용노동부	● 수도시설 운영요원 업무거부 등 갈등해소 협상지원	
기상청	● 태풍, 폭우, 지진 등 기상정보 제공	
지방자치단체	● 정보의 수집·전파, 인력·물자의 지원 등	

## 8

## 환경(폐기물)

### 가. 목 적

-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재난대비 안전점검 체계를 수립하여 국가기반 체계를 보호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
  - 매립시설에 대한 안전장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3년 전주 폐기물처리업체 소각장 폭발사고(10명 사상자 발생)
  -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새로운 대안 제시

### 나. 주요대책

- 매립시설의 축대벽 및 둑에 대한 경사계를 설치토록 하여 안전관리 도모
- 화재 및 외부인 출입 등의 상태를 항상 감시 등이 가능토록 CCTV 설치
-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농업용 활용 기술 개발
- (예방) 생활폐기물 매립시설(5개)에 대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SOP) 작성, 여름철 수해 및 동절기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시설별 자체대책 수립
- (대비)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진입로·시설물주변 점검 및 반입쓰레기 관리, 동·하계 자연재해 대비 재난관리교육 및 훈련
- (대응·복구) 기상특보 발효시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관련업체 및 자체장비로 현장복구(필요시 군부대·소방인력 지원), 응급조치를 위한 인력·장비의 지정·관리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환경부	● 매립지 사고발생시 지휘 등 총괄	
농촌진흥청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기술 개발	
경찰서	● 질서 및 치안유지 등	
소방서	● 화재 진압 등 조치	
인근병원	● 환자 처치	

## 9

**정부전산망****가. 목 적**

-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을 보호
  - 우정사업본부, 보건복지분야 및 국토교통분야 정보시스템의 침해를 사전 예방 및 내부 보안수준을 향상하고 재난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회혼란 방지 및 전산시스템 피해 최소화

**나. 주요대책****【주요과제】**

- 국가정보통신망(舊, 전자정부통합망, 정부통합전산센터 기반망) 보호
  - 주요 설비를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적 예방점검, 통신국사별 우회경로를 확보하여 재난시에도 중단없는 업무수행체계 마련, 예비 통신 장비(부품) 확보 및 각종 통신장비 설정정보 이중백업 등
- 우정사업본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강화
  - 정보자산 취약점을 관리·평가·개선하는 통합관리 DB구축, 우정정보시스템 웹서비스 및 인프라 상시진단, 신규도입 및 변경되는 시스템 보안성 검토
  - 기반망 네트워크(전송망·교환망) 구조 재설계, 운영관리환경 아키텍처(소프트웨어·하드웨어) 수립 등 전송망 구성방식에 대한 전략 수립
  - 내용연수가 경과한 관내국 백업구성 노후장비를 적정 성능의 신규장비로 교체 등 기반망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 보건복지 전산시스템 재난 대비·대응 역량 강화
  - 주요시스템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공동재해복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주요기관\*의 장애유형별 긴급복구절차 수립 및 재해복구 훈련실시(연 1회)
    -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대한적십자사

- 취약점 점검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추진,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에 따른 보안관제, 전산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 국토교통분야 Cyber보안강화 대책

- 취약점 점검 이력관리 체계 구축(정보보안 수준별 취약점 제거), 악성코드 탐지 등 선제적 방어체계 구축, 모의훈련 및 전담인력 확충 등 위기대응 능력 강화

**【예방대책】**

- 재난대비 안정적 시설·장비 구축, 통신회선 이중화, 국가기관·지자체 등 기관협의회를 통해 협조체계 구축, 내부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관리강화
- 실시간 장애·트래픽 모니터링 및 장애정보를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등 정기적 예방활동 강화, 우정정보시스템 중 금융 운영망 및 개발망 분리 운영, 우정정보시스템 통신장비 정기점검
- 보건복지 전산시스템 관련 정보수집 및 보고체계 확립, 교육·훈련 및 예방점검

**【대비대책】**

- 전산센터 BCP체계 수립,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긴급복구 계획 수립 및 긴급복구지원체계 확립, 재난대응 교육·훈련
- 우정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재난대비 재해복구 모의 및 비상훈련 실시,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보완대책
- 보건복지 전산시스템 백업체계 등 보호활동 강화, 재난대응 전문요원 양성

**【대응대책】**

-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 긴급복구활동, 정상가동중인 업무망/인터넷망 핵심 노드로 우회경로를 전환, 유지보수업체 및 통신망 사업자의 신속한 협조
- 침해사고 대응단계별 경보발령 등 신속·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한 통합보안 관제센터 내에 실무협의회 운영,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 가동, 상황단계별 조치

**【복구대책】**

- 스위치·라우터 등 주요 대체장비 확보, 복구활동 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응급복구·원상복구 등 기본방향 결정, 재난피해 원인 등을 조사·분석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과 시설 항구복구 대책 수립·시행
- 사고수습 및 복구 지원,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

**다.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국토교통분야 Cyber 보안강화 대책

## 2-8 감염병

### 가. 목 적

-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설정

### 나. 범 위

- AI 인체감염, SARS,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 확산, 가뭄·홍수 등으로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 감염병 대책

### 다. 주요대책

#### ○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 강화

-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기본계획 보완, 세부메뉴얼 작성, 지자체 대응계획 수립
-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시·도 및 유관기관 대상 지속적 모의훈련 및 교육
- 신종 감염병 대비 선제적 의료자원(항바이러스제, 병상·시설 등) 확보

#### ○ 예방접종 지원 확대

-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접종률 및 기관 이용률 등 지속 관리
- 단계적 예방접종 항목 확대계획 수립 및 신규 백신 도입기준 정립

#### ○ 감염병별 맞춤형 대응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행동실천형 기침예절 캠페인, 인식·행태 조사에 기반한 효과적 전략 개발

#### ○ (예방) 국가 감염병관리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감염병 유행절기별 예방·홍보 및 병·의원 네트워크를 통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예방 접종률 향상, 예방·치료약품 비축, 검사·진단장비 및 진단기술 확보

- 감염병 관리요원 및 보건의료인 대응능력 배양, 신속한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 정보입수 및 선진 국가와의 공동연구, 질병별 대응매뉴얼 개발, 대국민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시 국민들의 대처능력 배양

#### ○ (대비) 검역장비·진단장비·환자관리시설·비축물자 등 점검, 병원내 조기경보체계 운영 등 계절별 유행 우려 질병에 대한 집중감시 및 경보체계 가동

- (대응) 지역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매뉴얼 마련, 방역 및 겸역인력 부족시 대체인력 확보·투입, 전 국민동참 및 불안심리 해소을 위한 홍보강화
  - 위기상황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등 의약품의 신속한 생산·허가 조치
- (복구) 감염병 위기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의 종합 및 복구대책 마련·시행, 감염병 위기대응 조치 평가 등

## 라.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li> <li>● 의료인, 역학조사관, 격리병상 등 가용자원 동원방안 마련</li> </ul>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 전파</li> <li>●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지원 등</li> </ul>	
농림축산식품부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	
환경부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 포획 등 대응 관리	
기획재정부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외교부	●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국내 동향 해외 전파	
국방부	● 군 인력(군의관, 간호장교 등 필수인력 지원) 및 시설지원	
교육부	● 학교·학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학교 휴업 등 검토	
법무부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 운항 조정, 항공 종사자·여행객 방역</li> <li>● 철도, 대중교통, 화물 등 종사자, 승객에 대한 방역</li> </ul>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선 운항 조정 지원</li> <li>● 선박 종사자 및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li> </ul>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체육, 관광 관련 대규모 행사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가동	
고용노동부	●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 감염병 치료제 등 지속 생산 독려	
경찰청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방자치단체	● 방역인력 보강, 격리시설 확보 및 활용	

## 마.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2-9 가축전염병

### 가. 목 적

-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구제역 · 고병원성 AI · 신종가축질병)의 전국적 대규모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 위기관리체계와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
-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축산업 등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및 보건 위해사태 차단

### 나. 범 위

- 구제역, 고병원성 AI, 신종가축질병 등

### 다. 주요대책

- 사전대응체계 구축
  - 철새 이동 경로상 국가간 예찰정보 공유, 철새 AI 위험알림시스템 운영, AI 방역관리 지구 농가 지원 · 점검,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및 백신 국산화
- 농가 등 주체별 방역능력 강화
  - 차단방역 매뉴얼 마련 및 농가 방역교육,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 도입, 축사 시설 개선 및 친환경 축산 육성, 농가 및 지자체에 대한 지도 · 점검 · 방역실적평가
-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시 초동긴급방역 대책 추진
  - AI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강화 및 검사체계 정비, 방역대 탄력적 설정 및 살처분 최소화,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방역요령(SOP) 숙지 및 방역 훈련 강화
- 신속한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위한 ICT 방역시스템 구축
  - 전체농가 DB화 및 방역관리, 방역상황 통합관리 · 공유 시스템 구축, ICT기반 역학조사 및 소독초소 운영, 구제역 백신 공급 · 접종 실적관리 정보화
- (예방) 가축질병 위기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협 · 취약 요소의 사전 발굴 등 예방체계 중점 구축 · 운영
  - 가축질병 방역제도와 조치의 적극적 시행을 통한 위기발생의 원천 차단, 억제

- (대비) 가축질병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점검,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대응) 신속한 대응 조치에 의한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 가축질병 발생 초기에 방역체계를 총력 가동하여 조기 퇴치
- (대응) 피해사례 종합 및 복구, 축산농가의 안정화 추진, 재발방지 대책 강구·시행,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

## 라.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 고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 가축질병 위기대응 대책 추진, 방역정책 결정·시행</li> <li>● 가축질병 정밀검사 및 기술지원,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li> </ul>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본 운영 등 위기발생시 자원통합 및 지원</li> <li>● 국내입항 무역선, 외항선, 원양어선 등에 방역</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지역 설정 및 감염축 살처분·매몰 등 오염원 제거</li> <li>● 이동통제초소 운영 확대 및 매몰지 주기적 점검</li> </ul>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보유가축 예찰 및 현장 방역활동</li> </ul>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방역인력 지원, 발생지내 군사훈련 및 예비군훈련 제한</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위험·경계지역 이동통제초소 인력 지원</li> </ul>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항만 검역</li> </ul>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및 방역 협조</li> <li>● 방역인력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예방물품 지원</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질병 발생국가 방문 내·외국인 출입국 기록 제공 등 지원</li> </ul>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동향 전파, 가축질병 발생지 여행자제 등 예방홍보 협조</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지 여행자제 홍보,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처분 매몰지 환경오염방지 대책 마련·시행</li> </ul>	

## 마.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가축질병 방역 강화

## 2-10 해외재난

### 가. 목 적

-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해외재난으로부터 국외 거주 또는 여행중인 우리 국민 보호 및 피해 최소화
  - 특히, 해외관광객 증가 및 개별관광 형태 증가로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노출 환경 심화, 해외여행 목적지 다변화 등으로 인해 전염병이 급속히 전파되어 안전여행 위협요인 증가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
-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피해국 정부 요청)에 대한 긴급 의료진 파견 및 보건의료 활동을 통한 신속한 인명구조 지원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해외진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대책 추진
  - 테러, 정정불안 및 내전,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한 피랍·사망·부상 등 위험에 노출된 해외건설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해외건설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

### 나. 주요대책

- 해외재난 발생시 우리국민 피해예방 및 보호대응 체제 강화
  - 지속적 해외안전 관련 홍보(안전의식 제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정보 공유, 공관의 재난대응 체제 개선 등 재외국민보호 기능을 강화
- 대국민 해외안전정보 및 질병정보 전파 및 안전·건전 여행 캠페인
  - 전염병·테러 등 위험지역 여행자제 경보전파, 해외여행객을 위한 신속한 안전정보 지원, 안전여행협회체를 통한 안전수칙 배포 등
  - 해외 안전여행 그래픽 가이드 및 모바일 앱 확대 보급, 국외여행인솔자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 해외여행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및 대국민 홍보
- 구호업무의 전문성 및 적시성 향상
  - 파견에 대비한 평시 교육훈련 및 인력풀 구성,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 선발
  - 해외긴급구조대원 예방접종, 구호대 파견 전후 건강검진, 재난 발생지역 보건 의료 지원활동 및 방역소독 관리

○ 해외건설현장 안전대책 마련 및 비상대비계획 수립 · 시행

- 건설현장 및 숙소안전을 위해 경비 · 보안시설 강화, 관련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 구축, 근로자 행동요령 교육 및 모의 훈련
- 위험수준 단계별로 현지실정을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 해외건설현장 사고 상황(태풍 · 피서, 자연재해, 전염병 등) 초동조치 매뉴얼 숙지 · 훈련

○ (예방 · 대비) 부처간 재외국민정보 공유, 해당국가 재외국민 현황파악, 재외국민 비상연락체계 구축, 위기상황별 조치계획 수립, 해외여행자 준수사항 홍보

- 해외진출기업에 유관기관의 재난안전 관련자료 전파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사전 재난안전 교육 실시 및 협조체계를 구축

○ (대응 · 복구) 해당국가 및 국제사회 협조 유도, 신속대응팀 즉각적 현장투입, 피해국민에 대한 후속조치 및 잔류국민 보호, 유사피해 사례 방지대책 마련

- ‘현지대책본부(공관)’ 구성 · 운영, 현지 정부에 최대한 지원 요청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재난 업무 총괄 · 조정(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운영)</li> <li>● 상황별 대응방안 결정, 피해자 신원확인 · 보호</li> <li>● 피해자 가족 현지 지원, 해당국 정부와 업무 협조체계 유지</li> </ul>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구조대 파견 지원, 국내 부처간 협조사항 조율</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대응팀에 대한 출입국심사 지원 및 피해자(가족) 입국 편의 제공 등</li> </ul>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국내 재외국민 철수 지원, (파병국내 위기시) 초동조치 지원</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국 진출 건설업체 및 근로자 현황 파악, 철수 등 검토</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국으로부터의 입국자 검역조치, 현지 의료지원 대책 강구</li> </ul>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국 진출 기업 및 근로자 현황 파악, 철수 등 검토</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단체 및 여행사에 상황 전파, 우리국민 철수 유도</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국민보호 정보·수사활동, 국제수사 공조, 피해자 신원확인 지원</li> </ul>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해외재난대비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지원 체계 강화

### 3. 안전관리대책

#### 3-1 생활안전

##### 1 취약계층(아동·학생 등)

###### 가. 목 적

- 아동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부모, 교사 또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으로 아동·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학생·학부모가 안심 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 안전지원 및 개선
  - 청소년 관련시설의 사전 안전점검 및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환경조성
  - 유아부터 종합적인 안전교육·훈련체제 구축을 통해 전국민의 안전의식 내면화

###### 나. 주요대책

- 아동안전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 아동안전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진 및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운영 및 평가를 담당하는 사업평가단 운영, 사업수행기관의 정기보고체계 등
-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완
  - 콘텐츠 신규개발 및 보완으로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안전교육 활성화, 아동안전교육에 콘텐츠 활용, 부모·교사·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활성화
- 수학여행 교통·시설·숙박·식품 등 안전점검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 주도적 기획·운영,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수학여행
  -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실시
- 청소년 관련시설의 사전 안전점검 및 종합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 의무화, 청소년수련 시설 및 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 재난발생시 안전취약계층(여성, 청소년)에 대한 재난대책 강화

- 유아~고교단계까지 발달단계별 체계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안전교육표준안\*을 토대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적용이전('15~'17학년도) 각종 교재 개발 및 교과·비교과 수업 적용
  - \* 7대 표준안 :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유해물질·인터넷중독, 작업안전, 응급처치 등
- 이동식 안전체험교실운영 및 안전체험관 건립 확대, 학교안전교육 강화
- (예방·대비) 수학여행 교통·시설·숙박·식품 관련 안전 강화 및 지자체의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확대 유도, 수학여행 안전기준 강화 및 사전 컨설팅 실시
- (대응·복구) 사고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 개발·보급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초·중학교 안전교육 실시</li> <li>● 안전체험시설 확충·운영</li> </ul>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활동 및 안전취약계층 안전대책</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어린이집 안전교육</li> </ul>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체험시설 확충·운영</li> </ul>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시설·숙박·식품 안전 강화</li> </ul>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 ① 심리적 위기 지원 및 학생건강 보호, ② 학교내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③ 학교안전교육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법령일원화, ④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체화, ⑤ 교원을 안전관리 준전문가로 육성, ⑥ 교육인프라 구축 및 관리강화, ⑦ 학교안전교육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법령일원화, ⑧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⑨ 대학 안전관리 강화, ⑩ 안전 취약계층 생활안전 진단·개선 체계 구축, ⑪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 2 어린이 놀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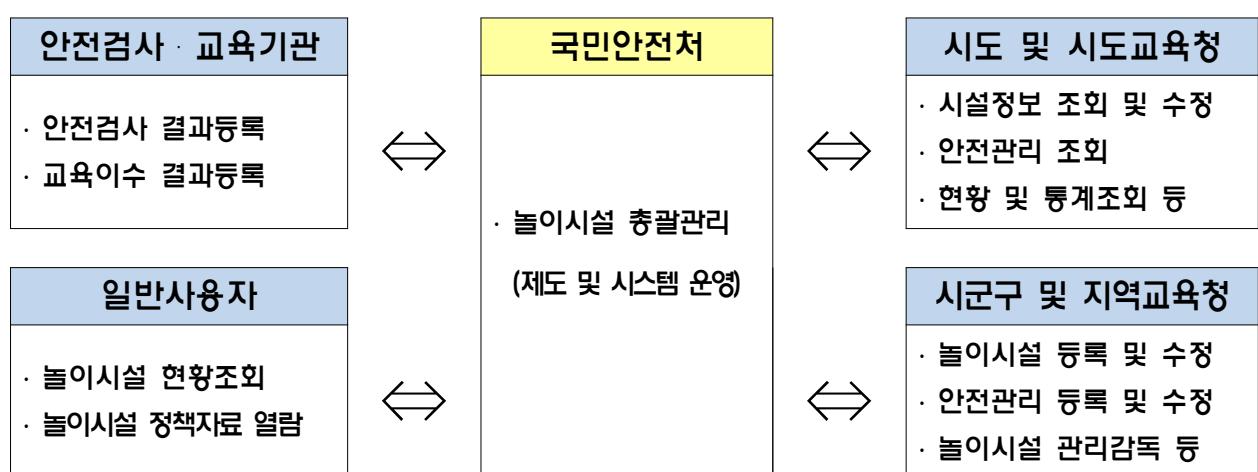
### 가. 목 적

- 놀이시설 노후화 및 이용자 부주의, 관리주체·관리감독기관 등 사회적 무관심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 추세
-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

### 나. 주요대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안전검사 불합격시설 재검사기한 설정 및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 의무화, 관리감독기관의 시설점검 및 위험시설 개선명령권 신설, 법적용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범위 확대
- 영세·취약 계층 이용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이자지원 등 시설 확산
- 지역순회 워크숍, 리플렛, 홍보영상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홍보활동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등 고도화

### 다. 추진체계



### 3 승강기

#### 가. 목 적

- 승강기 설치수량의 증가 및 노후화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마련이 필요
- 근원적 사고예방을 위해 설계·제조·설치·검사 및 유지관리의 단계별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 추진
- (목표) 승강기 안전사고 2019년 까지 1만대 당 1.0건 이하로 감축

#### 나. 주요대책

- 초등학교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취약계층 안전문화 체험교육 및 공익광고 등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홍보 확대
- 다중이용시설, 노후(15년이상) 승강기, 고층건물 승강기 등 특별안전점검 강화 및 불법운행승강기 일제조사
- 승강기 관리주체별 사고대응 행동요령 및 시나리오 정비, 지자체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 4 생활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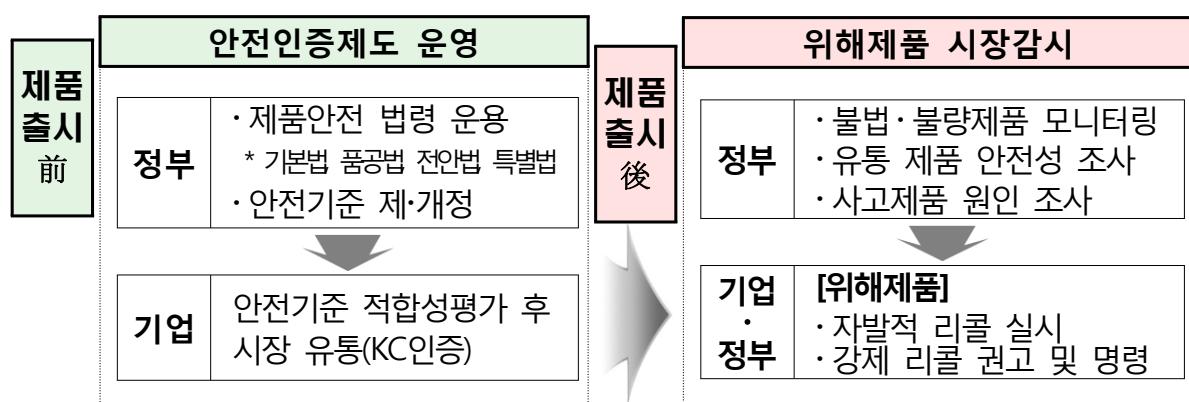
### 가. 목 적

- 소비자제품에 대해 제품 시장 출시 전·후 전주기에 걸쳐 제품안전관리 실시하여 사고 최소화
- 제품 시장 감시 체계, 안전취약품목 관리,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등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 나. 주요대책

- 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제품안전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안전기준 정비, 생활제품 위해성 평가, 소비자 제품에 대해 시장 출시 전·후 전주기에 안전관리
  - 어린이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안전관리, 제품사고 보고의무 등 관련 법령 정비, 안전성조사 및 후속 단계별 행정조치(안전성조사, 시험 등) 개선
- 제품 시장감시 강화
  - 안전성 조사, 제품안전모니터링,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안전취약품목에 대한 지속적 관리, 제품사고 및 결합제품에 대한 조사, 온라인쇼핑몰 유통제품 감시, 리콜제품 이행점검

### 다. 추진체계



**5****의약품 · 의료기기****가. 목 적**

- 나노, 첨단 융복합 기술 등을 이용한 의료제품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 또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 의료제품의 유통과 부적합한 사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

**나. 주요대책**

-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의약품안전정보 평가·제공,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자의 안전성 기준 준수여부 관리, 마약류와 그 원료물질의 체계적 관리,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마련, 안전성 평가기술, 유해물질·마약류의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등 기술개발 추진
- 의료기기 품질 및 부작용 등 안전관리 강화
  -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운영,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 강화, 의료기기 수거·검사를 통한 품질검증 강화

## 6 전기 · 가스

### 가. 목 적

- 전기 · 가스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대책을 추진

### 나. 주요대책

#### ○ 가스안전 기반강화

- 안전 핵심규제와 부수규제로 구분 등 가스안전 법령체계 개편, 검사기관 종합적 평가를 통한 역량 고도화, 안전경영 · 시설투자 ·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성과 계량화
- 독성가스의 전주기(생산-유통-사용-폐기) 맞춤형 안전관리, 도심지 지하매설 도시 가스배관 안전관리 강화, 제조-유통-검사-사용 등 LPG용기 관리강화
- 독성가스 안전관리, 지하 도시가스배관 탐측, 석유화학플랜트 안전 등 R&D추진
- 불량용기 유통단속과 제작기준 개선, 사고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스안전 예보, 가스배관의 부식과 환경요인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법 보급
- 가스화재 · 폭발사고 실증을 위한 가스화재폭발성능센터,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 구축

#### ○ 전기안전 기반강화

- 지자체 전기설비 안전관리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 · 관리, 도로 전기시설물 주기적인 안전점검, 재난시 전력공급 안정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한 복구활동
- 사고원인 조사 · 분석 시스템, 온라인 진단시스템 개발 및 전기안전 플랫폼 개발
- 전기재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 실증테스트 기반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 에너지 취약계층 안전복지망 구축 및 에너지 안전 홍보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LP 가스배관 교체, 다 기능 안전계량기 및 타이머록 보급, 주거용 전주택 전기설비 무료개선 등
- 에너지안전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가스 ·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시민단체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안전문화 확산

## 7

## 등산활동

## 가. 목 적

- 국민소득 수준 향상 및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등산인구 급증 및 무분별한 산행과 올바른 산행요령 미흡으로 등산객의 산악사고 증가
-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통한 등산사고 예방 및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 전개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을 통한 신속한 대응, 지자체 및 민간구조대와 협력강화

## 나. 주요대책

- 매년 증가하는 등산인구 및 안전사고 실태 등 DB구축,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대 및 산악구조대 편성·운영, 합동훈련 등 확대로 구조방법 개선
- 구조장비 지속적 확충 및 산악구조임무 고도화, 119상황실 및 보건복지부 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산악사고 신속대처, 산악구조대 전문성 강화 교육
- 민간 산악구조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숲길(등산로)에 노후화된 안전시설 보수, 속한 구조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연계 지침 마련
- (예방·대비) 숲길 관리실태(CCTV 설치현황 등) 및 취약지역 조사, 현장 중심의 순찰강화 및 안전시설물 확충, 유관기관·단체와 비상연락망 구축
- (대응) 산림항공구조대 운영, 민간산악구조 활동 지원·협력, 숲길 피해지 복구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산림청	● 산악안전사고 예방 종합계획 수립·추진	
산림항공본부	● 헬기 등을 이용한 신속한 산악구조 실시	
대한산악구조협회	● 민·관 합동구조, 민간산악구조대 운영	

## 8

## 다중이용업소

### 가. 목 적

- 최근 도시인구집중 및 문화여가생활의 다양화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반건축물에 비해 화재발생과 인명피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지난 10년 평균 1.8배) 실정
  - \* 지난 10년간('03~'12년) 30.8% 증가('03 : 146,657개소 → '12 : 191,871개소)
-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사전에 최소화하고 사고발생시에는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가능한 빨리 정상상태로 복구되도록 안전관리 추진

### 나. 주요대책

- 영업주 및 종업원 안전의식 제고(안전문화운동, 홍보·교육 등), 다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위원회) 구축
-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 업소에 대한 정보제공(Fire Map), 전국 인증현황 및 업체별 개별정보 공개
- 업종별 위험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다중이용업주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영상매뉴얼 등), 안전관리 지수 개발·공개 및 평가 자료로 활용
-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화를 통해 선별적 집중 안전관리, 영업주와 종업원의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센터 운영
- 모의훈련 대응결과 평가를 통해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 강화, 영업주와 종업원의 사고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캠페인
- 과학적 화재저감정책(화재원인 및 제도적 문제점 개선 등) 개발, 화재피해복구 종합지원체계(법률자문, 응급의료지원 등) 마련
-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조기정착 및 할인·할증 제도 도입

### 다. 고려사항

- (관련계획)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14~'18)

## 9

## 물놀이

## 가. 목 적

-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레저문화를 즐기는 인구 증가와 그 형태가 복잡·다양화되는 등 물놀이 취약요인 증가에 따라 짧은 기간(6~8월)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 집중발생에 대한 인명피해 최소화
  - 특히 해수욕장 법 시행('14.12)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인 해수욕장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통해 인명피해 방지
- (목표) '09 ~'14년 물놀이사고 평균사망자(44명) 대비 '19년까지 37명으로 감축

## 나. 주요대책

- (예방)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책기간 설정·운영,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출입통제, 물놀이기간前 평탄작업 및 위험 표지판·인명구조함·구명환 등 안전시설 정비·확충, 캠페인 등 홍보
  -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이안류·해파리 감시체계 강화
- (대비)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수칙·구조요령 등 교육, 인명구조 시연회 및 물놀이 지역 순찰활동, 유관기관·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물놀이 현장 자동 제세동기 비치 및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
  - 연안구조장비·안전시설·구급물품 등 확충 및 배치, 안전관리자원 DB화·관리
- (대응) 위험구역 출입통제 및 위험행동 사전 제지, 익수사고 발생시 신속구조·심폐소생술·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신속후송
  - 민·관 안전관리요원 합동사고 대응
- (복구) 사망사고 발생지역 통제선 설치 및 물놀이객 출입통제, 물놀이 위험 구역 지정 및 위험표지판·감시시스템 등 설치·관리
  -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조치, 지역 민간 구조·구호단체 지원·협력

## 다. 추진체계

기 관 명	주요 기능
국민안전처	● 물놀이(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총괄·지원, 구조·구급 지원
지방자치단체	● 해수욕장 및 물놀이 구역 안전관리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설물 및 수질 점검
경찰청	● 해수욕장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기상청	● 기상 및 이안류 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이안류 정보 제공 및 피해 예방 협력
국립수산과학원	● 해파리 정보 제공 및 피해 예방 협력

## 10 수상레저

### 가. 목 적

- 수상레저 시설확충 및 접근성 개선으로 국민참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양레저 육성 등 수상레저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국민적 관심 증대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레저 환경 조성 및 수상레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 나. 주요대책

-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활용 수상레저 활동자 대상 구명조끼 착용, 원거리 신고, 출항 전 개인 안전점검(연료유, 배터리 점검 등) 확행 등 안전의식 강화 및 제도 홍보
-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및 법 위반사범 계도·단속 강화로 안전한 레저활동 유도
  - ※ 중점 단속행위 : 무면허조종, 무등록사업, 음주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 수상레저담당자(지자체, 안전서) 대상 교육을 통한 업무내실화 및 전문성 향상
  - 수상레저관련 법령, 사업 및 기구등록 등 실무교육

### 다. 추진체계

기관명(부서)	주요 기능	비고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마련</li> <li>● 수상레저담당자 워크숍 개최</li> <li>● 지역별 수상레저사업장 및 활동지에 대해 지도점검</li> </ul>	
해양경비안전서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에 맞는 수상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수상레저사업장 시설·장비 및 수상레저기구 점검</li> </ul>	

## 3-2 교통안전

### 1 도로교통

#### 가. 목 적

- 교통사고의 피해가 어떠한 인적재난보다도 심각함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일상적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상황
  - \* '12년 인적재난 사망자수(7,332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5,392명)가 73.5%
  -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인 교통안전대책 추진
- (목표)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연간 4% 감소

#### 나. 주요대책

- 교통안전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고,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연중 실시, 어린이·고령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 국도상 위험도로 개선, 졸음쉼터 확대 및 차량·도로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로결빙·교통사고로 인한 2차사고를 예방
-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한 교통안전점검, 위험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센터를 확대, 관계부처 합동 과적·적재불량 등에 대한 단속활동
-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고 잦은 곳 등 취약지점 개선사업, 취약한 중규모 터널에 CCTV 등 방재시설을 확충, 안전점검결과 결함사항 보수·보강
- 설·추석·휴가철 등 교통수요 급증 대비 특별교통관리, 교차로 소통확보 및 사고예방 중심의 교통활동, 과속·신호 등 무인단속장비 확충 및 효율적 운영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대책 총괄, 도로시설 개선, 사업용차량 관리	
경찰청	● 법규위반 단속, 교통시설 관리, 교통사고 조사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도로 내 교통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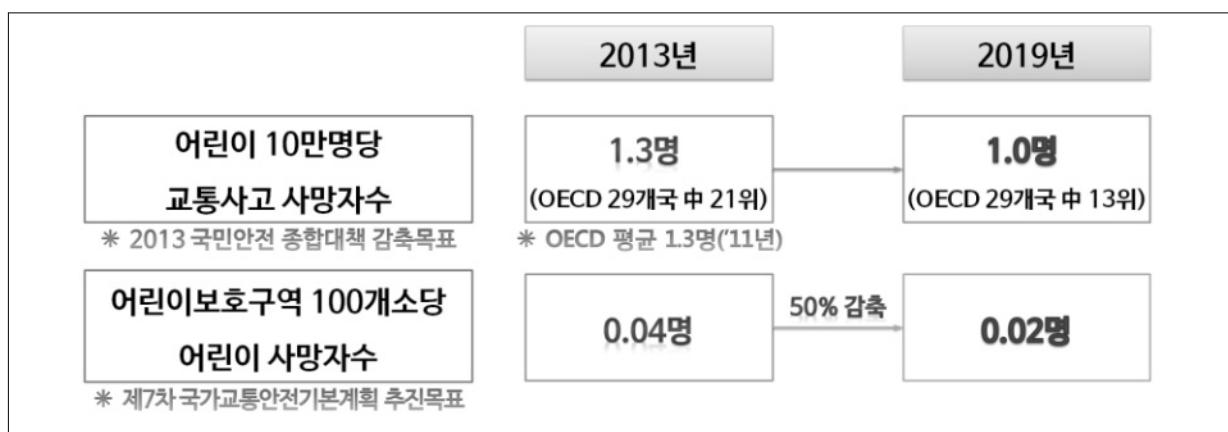
## 라. 고려사항

- (관련계획)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도로교통 안전관리 대책

## 2 어린이 교통사고

### 가. 목 적

-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한 하굣길 교통문화 정착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위주의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법규 단속 강화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목표)



### 나. 주요대책

- 교육시설 통학차량의 운영실태 점검, 개학철 통학차량 안전 캠페인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안전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 유아~고교까지 발달단계별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하여 교통안전교육, 교통 안전체험관(전국 76개) 등을 활용한 체험위주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 초등학교·어린이집·학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확대, 사고 잦은 보호 구역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점검 및 맞춤형 정비·개선
- 체계적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정비·관리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지자체 관심·투자 유도, 인접한 이면도로 주 통학로 안전개선사업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 개학기(3월,9월) 보호구역 주변 안전 위해요소 합동점검, 보호구역내 CCTV 설치 확대 등 단속 강화

- 보행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활성화, 실전형·체험형 교통안전교육 및 온·오프라인 대국민 사회적 교육 확대 등 안전수칙 준수 홍보 및 교육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국민안전처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계획 수립, 시행	
교육부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학교 교통안전교육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경찰청	●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도로교통공단	● 어린이통학버스 운용자 교육, 어린이보호구역 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개선사업, 주정차 단속	

### 3

### 보행자

#### 가. 목 적

-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12.8)에 따라 사람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주민의 보행권 확보 적극 유도
- (목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 \*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13년 1,982명 ➔ ‘19년 991명

#### 나. 주요대책

- 보행량이 많고 사고위험 등이 높은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사업 추진 및 평가
- 기존의 주차금지 구역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불법 주차 특별관리 구역으로 선정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교통사고 다발지역내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빈발 시간대 집중관리(안전보행지도 등) 및 주·정차 특별 관리구역 지정 관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중점 관리

## 4 내수면 유도선

### 가. 목 적

- 5톤 이상 유·도선의 노후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 존재, 여가활용 증가로 인한 이용객 증가 및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예산투자 기피 등 유·도선 안전사고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해소대책 강구
  - 내수면 유·도선사고 Zero화,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나. 주요대책

- (예방) 5톤 이상 유·도선 중점 관리, 지도·점검 강화, 담당공무원·조사자 교육, 출·입항 기록관리, 유·도선 성수기간 설정 운영(4월~10월)
  - 안전·편익시설 확충·정비·개선, 사고예방 홍보활동, 사고대비 가상훈련, 매뉴얼 개정, 수질오염방지대책 추진, 보험 및 공제가입 지도
- (대응·수습) 사고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대책 총괄(중앙긴급구조통제단), 신속한 사고수습 조치, 인명피해 최소화, 피해조사 및 수습(치료·장례) 추진, 배·보상대책 수립, 언론홍보

### 다. 추진체계

기관명	기능(역할)	비고
국민안전처	● 중앙대책본부(사고수습본부) 운영, 현장 구조구급	
행정자치부	● 피해지역 사고수습을 위한 행·재정 지원 겸토	
환경부	● 수질오염 대응, 민관군 합동방제(2차오염 확산 방지)	
국방부, 경찰청	● 위기징후 전개양상 정보전파 및 대응방안 협조	
국토·해양·산업부	● 댐·보 방류량 조절, 인력·장비 등 관계기관 협조	
문화체육관광부	● 언론대응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 환경청	● 인력·장비 동원, 사고현장 오염 및 피해확산 방지 조치	

## 5 해수면 유도선

### 가. 목 적

- 세월호 및 홍도바캉스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정책, 안전점검체계 등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해상안전관리 강화 추진
- 현장변화에 발맞춘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현실 적합성 제고 및 경영마인드 교육 및 홍보로 안전공감대 형성

### 나. 주요대책

- (현장관리) 현장중심 안전관리로 사고예방
  - 안전수요에 따른 특성화된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 \* 농무기·지역축제·대규모 단체여행객 이동 등 수요 집중시 대책 수립
  - 지방본부별 해상안전 기동점검단 운영으로 실효성 강화
    - \* 면허·자격, 선박설비, 안전운항, 오염방제 등 4대 분야 25개 항목 집중 점검
- (안전문화)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 전문가에 의한 사업자·종사자 교육 및 교육이력 관리로 실효성 강화
  - 현장 유·도선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으로 안전점검 역량 강화
- (운항통제) 기상악화시 안전을 고려한 운항통제 및 기록 관리

### 다. 추진체계

기관명	기능(역할)	비고
국민안전처	● 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 수립	
기상청	● 바다날씨의 정확안 예측 및 주의보 발효	
문화체육관광부	● 언론대응 활동 지원	

### 3-3 산업안전

#### 1 사업장

##### 가. 목 적

- 사업장에서 대규모 인적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폭발, 붕괴, 산소결핍, 급성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 (목표) 사고만인률 13년 0.71‰ → 19년 0.3‰대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
  - (목표) 중상해재해율 (휴업 90일 이상) 12년 0.26% → 19년 0.1%대

##### 나. 주요대책

###### 【주요과제】

-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 사업주 책임강화, 특성별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충, 근로자의 참여확대 및 안전보건 실천 분위기 조성, 안전보건 지원 사업 확충
- (안전보건 대응능력 강화) 재해다발요인 특성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자 특성별 안전보건 지원, 업종·기업규모별 안전보건 격차 해소, 근로자 건강 보호 및 新 재해요인(감정노동 등) 관리
- (확고한 안전보건기반 구축) 기업이 준수할 사항과 업종·유해인자 특성 등을 반영한 법체계 선진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등 지식·정보 기반 확충, 안전보건 산업 육성 지원
-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 작업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제도개편, 전사회적 캠페인 추진 등 실천 공감대 형성

###### 【예방·대비】

- 폭발사고 등의 선제적 예방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등급별(고위험~저위험) 관리, PSM 사업장의 공정안전 이행수준 평가·관리, 중·소규모 화학공장의 안전작업 등 사고 예방기술 지원

○ 추락·붕괴 등 건설사고 예방

- 대형건설공사 유해·위험작업 사전 안전성 심사, 취약시기(해빙·장마·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강화, 고위험 중·대규모 건설현장 밀착관리, 건설업 자율안전 관리 제도 운영, 단순 반복사고가 다발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

○ 산소결핍, 급성중독 관리 강화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 보급 및 안전관리 지도,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 작업환경관리,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실태 감독 강화

**【대응·복구】**

- 재해위험상황 발생시 신고 및 관리체계 구축(위험상황신고실 운영), 비상근무 체계 확립,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2차재해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기술지도(피해복구지원팀), 안전·보건시설 복구 비용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재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고용노동부	●사업장 인적사고 수습총괄, 사고원인 및 사고후 영향 조사
국민안전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총괄, 사고수습 지원 검토
경찰청	●사고조사 및 현장통제 지원
국방부	●주민보호·방재 및 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재난상황방송 등)
보건복지부	●응급진료 및 의료활동 지원, 치료약품 확보 및 보급
국토교통부	●시설물 안전성 검사, 긴급수송용 교통수단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주민(근로자) 대피·구호, 인력·장비 동원 및 비상급수체계 가동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①기업의 자율적 재난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②재해다발 요인 특성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③선제적 안전보건 환경 변화 대응, ④실천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

## 2

## 건설현장

## 가. 목 적

- '08 ~ '13년간 재해율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산업 재해율의 감소추세와 달리 건설업 재해율은 0.64% → 0.92%로 지속적으로 증가
  - ※ 특히, '13년 기준으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전체 건설업 재해자수의 72%인 16,993명의 재해자가 집중
- 건설현장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나. 주요대책

-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 확립
  - 현장 안전관리를 시공자와 감리자 및 발주청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현장 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고 현장점검을 의무사항으로 전환
  - 설계자가 건설과정의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깊은 굴착 · 高空작업 등 위험요소를 최대한 축소 · 제거 및 적정 수준의 안전관리비용을 반영
- 건설사업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 도입
  - 목적물 및 사용자의 안전과 시공時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사전안전성 평가, 설계에 명기된 위험요소 대책과 안전관리체계 등의 발주청 확인
  - 발주청 주도의 정기적 점검회의 의무화, 시공자 안전점검을 발주청이 지도 · 감독, CCTV 등 원격탐사 장비를 활용한 현장관리를 제도화
- 건설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 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 · 결과공개, 안전관리 역량평가 제도화, 평가체계 마련 및 시범평가 추진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소규모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전문기관 기술지도 의무화, 착공정보 신속파악 및 적시 점검, 안전에 취약한 불법하도급 현장 관리 강화

## 다. 고려사항

- (관련계획)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2014.7~2017)

### 3 산업단지

#### 가. 목 적

- 산업단지는 노후시설, 폭발물 등 위험요소가 많아 사고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
  -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사고시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등 산업단지 안전강화

#### 나. 주요대책

- 안전관리 법·제도적 인프라 개선
  - 산업단지내 위험물·폐기물간 이격거리를 확보, 공장밀집지역에 소방서 등 안전시설 입주 지원, 입주기업체의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계획, 안전관리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화 등
- 안전 전문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합동방재센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내 지도점검·안전관련교육·안전홍보 등 안전관리활동을 부처·기관 합동추진, 비상상황 대비 상황전파시스템 구축
- (예방·대비) 사고사례 공유, 안전교육, 캠페인 및 홍보 등 범부처적 협업 및 자체 관리활동, 입주관리 및 입주업체에 대한 안전지도,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초기대응체제 확립
- (대응·복구) 긴급 대응조치 및 유관기관 협조, 사고복구를 위한 피해금액 파악 등 수습활동 지원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가스, 전기안전 총괄	산단공, 가스·전기안전공사
국민안전처	● 위험물취급 등 소방안전, 자연재난 대책	소방서
고용노동부	● 안전교육, 근로환경, 산업재해	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환경부	●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사고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 지역내 사고수습대책 추진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

## 4 농작업

### 가. 목 적

- 농작업 안전관리 및 농업인 건강증진 기술지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 나. 주요대책

-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 조성

-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마을(단체) 육성
- 성과분석을 통한 기초안전관리, 작업 환경개선, 건강관리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현장애로사항 기술지원, 지속적인 농작업 안전개선 실천 모니터링

- 농업인 안전 생활문화 확산

- 안전교육, 안전관리 프로그램 표준매뉴얼 보급, 마을의 안전관리를 확산·주도할 마을안전지킴이 육성, 기초안전장비 사용 습관화 홍보, 농작업 안전전문가 협력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농촌진흥청	● 농작업 안전 연구 및 기술보급, 정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안전 정책 추진	
산업안전보건공단	● 농업인 안전 교육 지원, 컨설팅, 자료 제공	

## 5

## 연구실

### 가. 목 적

-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증가와 연구개발 활동 융합·고도화로 연구실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
  - 연구자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는 예방중심의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체계 구축
  - 학생 및 교수 등 다수가 사용하는 대학실험실의 안전 환경개선 및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나. 주요대책

-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구실의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연구기관에 안전·보호장비 및 설비 등을 지원
- 안전교육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 및 대처
  - 화학·생물·전기·기계 등 각 분야별로 안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연구활동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구내용과 연관된 다양화된 교육과정 제공
- 실험종사자 보호장비 등 대학 실험실 안전 환경 기반구축, 실험실 안전점검 및 대학자원관리시스템(ERP)과 연계한 관리강화,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공시
- (예방·대비) 현장 점검 및 위험요소 개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과 연구활동종사자 맞춤형 교육 확대 실시, 우수 연구실 인증서 수여, 포스터·UCC·안전 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등 안전의식 확산
- (대응) 중대한 연구실 사고 등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토록 사고 보고 체계 확립,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및 사고경위 조사, 사고연구실 안전관리현황 점검을 통해 후속 대책 수립·추진 및 사고사례를 전파하여 동일사고 사전예방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미래창조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실 안전관리 예방대책 수립·추진</li> <li>● 복구 및 피해 보상대책 수립</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li> <li>● 대학의 연구실사고에 대한 분석 및 후속조치 지원</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체, 병원체 취급 연구·실험실의 안전 점검</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연구기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실 안전사고 정보 공유 및 사고조사</li> </ul>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재활동 지원</li> </ul>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전, 가스사고 관련 정보 제공</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주민 긴급대피 명령 등 구호활동</li> </ul>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구축</li> </ul>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대학 안전관리 강화

## 3-4 시설안전

### 1 정부청사

#### 가. 목 적

- 풍수해, 폭설, 가뭄·단수, 지진, 건축물 붕괴, 전기·가스사고, 통신사고,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해 있는 청사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원활한 정부업무 수행 지원

#### 나. 주요대책

- (풍수해) 우기대비 점검·정비, 훈련 등 종합예방대책 추진,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피해발생 보고체계 구축, 상황별 비상근무 및 응급복구
- (폭설) 동절기 안전점검, 제설장비 확보 및 대응체계 구축, 비상소집 및 제설작업
- (가뭄·단수) 물절약 생활화 홍보·교육, 누수방지 점검 및 비상급수시설 정비, 지하수 관리, 급수관리를 위한 순찰·방역, 급수공급관 위생상태 관리
- (지진) 내진보강계획 수립·시행, 지진피해 대비 훈련(단수, 단전, 가스차단, 대피 등), 조기경보체계 구축, 지진시 행동요령 교육·홍보, 지진발생 단계별 조치계획 마련
- (붕괴) 건축물 용도변경시 허용하중 검토, 건물 구조안전 및 기능상태 정밀점검 등을 통한 보수·보강, 건축물 붕괴상황별 비상조치 등
- (전기) 전기설비 최적상태 관리, 순찰점검을 통한 확산방지, 정전사고 단계별 조치, 사고유형별(정전, 전기화재) 대책추진, 비상발전기 가동, 전력공급 제한
- (통신) 기간통신사업자와 협력체계 유지, 긴급 전송로 우회대책 추진, 통신 전송로 파손범위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행
- (가스) 가스시설 일일점검, 사용자·관리자 정기교육, 대체사용 비축류 관리·점검, 사고시 메인밸브 차단 및 유관기관 통보 및 단계별 대응 시행
- (화재) 방화 순찰·점검 및 교육·훈련, 공사장·작업장 소방안전관리, 피난계획 수립·시행, 화재대비 비상조직 구성, 소방서 지원요청 및 화재진압 초동조치

## 2 문화, 관광, 체육시설

### 가. 목 적

- 공연장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연장 운영주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
- 소규모 미등록 유원시설 및 지역축제 등 한시적인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유원시설의 내실있는 안전대책 추진
-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강화

### 나. 주요대책

- 공연장 안전시설 · 설비 지원 및 기술 컨설팅, 공연장 관리자 · 공연단체 · 관객 대상 교육 · 훈련, 안전지침 개발 및 보완, 계기별 · 시설별 체계적인 안전점검
- 전문기관의 유기기구 · 시설 안전성 검사, 안전관리자 교육 및 안전관리계획서 의무화 규정 마련, 유원시설 관계자 안전교육 및 계기별 · 시설별 안전점검
  - 모든 지역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계획심의 대상을 1천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 안전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등
- 공공 · 민간 체육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 레저스포츠 시설업자 및 체육지도자 등 대상 안전교육, 문체부 소관 체육시설 자체 재난대응 훈련, 노후화된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 사업지원, 체육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및 홍보물 배포
- 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심의 대상 확대, 관할 지자체는 지역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가스 · 전기 · 통신 · 교통 등 관련부서 협동 안전점검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국민안전처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지도 · 점검, 사고시 인명구조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지방자치단체	●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 현장지도 · 점검, 사고대응	
경찰서	● 화약류, 집회신고 등 이행점검, 질서유지 등	
전기가스공사, 민간단체	● 현장 지도 · 점검 지원	

### 3 사회복지시설

#### 가. 목 적

-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정신질환자 등 자력대피가 어려운 안전 취약 계층이 장시간 생활·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등 사고시 인명피해 우려
  - 안전설비 확충, 전문적인 안전점검,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유사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 이용자, 종사자 안전 확보

#### 나. 주요대책

##### 【주요과제】

-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안전설비 확충
- 전문기관에 의한 시설 무상안전점검 확대, 유관기관 간(지자체, 안전전문 기관 등) 합동점검 실시 등 안전점검 내실화
- 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시설종사자 안전관리교육 및 시설 자체 대피훈련 실시

##### 【예방·대비】

- 시설물, 시설내 설비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지자체 점검, 복지부-안전전문 기관 합동점검, 시설내 소방 및 안전설비 확충, 시설 종사자·생활자 교육·훈련
- 전문적인 안전점검,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 주관 시설 안전관리 교육

##### 【대응·복구】

- 사고 발생 시 선 응급조치, 즉시 사후보고, 유관기관\* 지원 협조
  - \* 119구조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 현지 사고지원 대책반 및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보건복지부	● 전국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도	
지방자치단체	● 관내 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사회복지시설	● 자체 안전점검, 비상대비훈련, 비상연락망 구축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 4 의료시설

### 가. 목 적

-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의료시설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
  - 의료시설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위험요인 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의식 고취 등의 내실화 추진
  - 또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환경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사고를 방지

### 나. 주요대책

- 의료기관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 의료기관 안전취약 요소 발굴, 안전 우선의 정책환경 조성 및 직원 전문성 확보, 의료기관 안전진단, 요양병원 소방안전설비 등 시설기준 강화
  -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 채용 의무화,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확보
- 현장대응체계의 실효성 확보
  - 의료기관 재난대비매뉴얼 지침 마련, 재난관리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정비
    - \* 구조·구급(소방-해경-군), 질서유지(경찰), 의료(복지부, 의사협회), 재난 공보(방송, 신문) 등
  - 사고의 대응과정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분석·평가, 사후대책 이력관리 강화
- 안전의식 제고 및 비정상 관행 개혁
  - 의료기관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자율책임'에서 '강제책임'으로 전환 확대\*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모의훈련 정례화, 직원 교육 훈련
    - \* 스프링클러, 방염자재, 자가발전기, 석면물질 배제 등
  - '의료기관 비상대비 및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자체 점검의 생활화 및 정부합동 안전점검 등 외부점검 강화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매년), 재난관리 체계에 따른 주기적(계절별) 시설 안전점검,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분야별 인근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시설 안전관리 교육훈련(연 1회 이상), 사고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 연락망 정비, 시설피해 복구예산 확보 및 피해상황에 따른 신속한 보상
- 산후조리원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감염사고 예방,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보건복지부	● 비상진료대책 수립,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 위기상황 언론 홍보(재난 방송 등)
경찰청	● 현장유지 및 질서유지, 사고경위 · 원인조사
국민안전처	● 응급환자 이송 지원, 지자체 및 관할 의료기관 교육 · 훈련 지원
대한적십자사	● 대량환자 발생 대비 혈액공급, 단체헌혈 확대 및 홍보
지방자치단체	● 비상진료대책 추진, 역학조사 실시여부 검토
산후조리원	● 감염사고로 병원 이송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

## 5 교정시설

### 가. 목 적

- 교정시설 재난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수용관리의 안정화와 협·집행 기능의 유지

### 나. 주요대책

-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교정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화재 등 비상시 다수의 수용자가 혼란없이 신속하게 대피가 가능하도록 시설 현대화

- 재난대비 대응태세 확립

- 군·소방·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재난대응합동훈련, 발생 가능한 재난·사고에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소관 매뉴얼 정비, 시설안전관리 전문 교육 강화

- 신속한 복구체제 확립

- 과학적·체계적인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군·관 및 민간단체 등의 능력을 활용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원가능 자원 파악 및 협조체계 구축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법무부	● 교정시설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고시 복구	
국민안전처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긴급구조·복구 지원	
경찰청	● 재난현장 통제, 재난사고 합동 조사 지원	
국토교통부	● 교정시설 복구 전문인력·장비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대국민 홍보지원	
보건복지부	● 구호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 신속 가동	
지방자치단체	●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 6 자연휴양림 시설

### 가. 목 적

- 자연휴양림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98년 이전 개장 자연휴양림이 전체 자연휴양림의 39%를 차지, 목조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증가
  - \*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 : ('09) 9,691 → ('11) 10,694 → ('13) 12,790천명
  -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현황 : ('09) 133 → ('11) 148 → ('13) 156개소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상시관리 체계 확립으로 이용객 인명 피해 및 시설물피해 최소화

### 나. 주요대책

- 안전점검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연간 안전관리·점검 계획 수립, 정례적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 시설물 노후상태, 구조성능 평가 및 노후시설 보완
- 담당자 교육·훈련 의무화, 안전관리 예산 지원, 자연휴양림 안전관련 시설기준 등 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 이용자·관리자를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이용고객에 대한 계절별·위기상황별 대처방법 등 교육, 올바른 휴양문화 대국민 캠페인,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산림청	● 전국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 총괄, 지도·점검	
지방자치단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관내 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사고시 수습대책 강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자체의 안전점검 및 훈련, 비상연락망 구축	

### 라. 고려사항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산림휴양시설의 재난·안전관리 강화

## 3-5 범죄안전

### 1 4대 사회악 근절

#### 가. 목 적

-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행복 실현
  - 식품의 유해물질 첨가 등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와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발생 등 불량식품 근절
  - 예방교육과 근절대책 추진으로 성폭력 미검률과 재범률 감축, 가정폭력 재범률 감축 추진
  -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가정-학교-사회로 이어지는 폭력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

#### 나. 주요대책

- 성폭력 근절대책
  - 학교内外부 안전체계강화 등 성폭력 예방활동 전개, 성범죄자 관리 및 단속,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양형 강화 추진, 온·오프라인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 구축, 피해자보호 강화, 재발방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가정폭력 근절대책
  - 현장 적극적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 초기대응 강화 및 엄정 대응,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활동 및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
  - 가정폭력 초기대응 실효성 확보,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 점검 및 적극적 개선을 통하여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 학교폭력 근절대책

-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인성 함양 및 학교폭력 유발환경 개선, 피·가해학생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및 선도 지원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 117 신고 활성화 및 상담서비스質 제고, 사안별 맞춤형 대응으로 재범방지

### ○ 4대악 범죄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 4대악 사범 단속, 예방교육, 특정범죄자 위치관리
- 범죄 유형별, 대상별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서비스의 내실화

※ 불량식품 근절대책은 식품안전대책에 포함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법무부	●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여성가족부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활동 등	
교육부	●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가해 학생 회복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 불량식품 근절 추진	
경찰청	● 4대악 범죄 단속 활동	

## 라. 고려사항

- (관련계획)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심리적 위기 지원 및 학생건강 보호,

## 2 자살 예방

### 가. 목 적

- 자살은 '92년에 전체 사망원인 중 10위였으나 '13년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은 4위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
- 높은 자살사망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고려시 모든 부처와 사회 각 영역을 포함한 범사회적 대책 필요 \* 자살로 인해 최대 4조9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소요 추정
- 학업 스트레스 및 청소년기 우울증·자살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이 우울·불안감 등을 극복하여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학생자살 발생학교에 기능회복 및 구성원들의 심리 안정 지원

### 나. 주요대책

- 범국민 생명존중문화 조성
  - 범사회적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사건 관련 언론·방송 보도 개선, 유해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환경 조성
- 자살수단 접근성 제한
  - 맹독성 농약 관리, 번개탄 등 가스중독 자살수단 관리, 투신자살 위험시설 및 장소에 자살방지시설 설치 권고
-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지역사회 노인 자살예방 사업, 자살사망자 유가족 관리,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학교·사업장 등에서 자살예방 교육 강화
- 근거 기반의 자살예방정책 수립
  - 심리적 부검 실시, 자살 모니터링 등 경찰청과 연계체계 구축
- 생명존중 교육자료 개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자살사건 발생학교의 교육기능과 학생의 일상생활로의 빠른 회복 지원 (교육부)
- 인터넷 자살시도 정보 발견시 신속한 구호를 위한 자료 공유, 기관별·기능별 조치사항 및 상황별 고려사항 등 세부 현장메뉴얼 제작·교육 (경찰청)

## 다.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기능	비고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 관련 업무 총괄	
교육부·여성가족부	● 학생 및 청소년 자살예방	
국방부	● 군인 자살예방	
고용노동부	● 근로자 및 사업장 자살예방	
농림축산식품부	● 맹독성 농약 관리, 농어촌 자살예방	

## 3-6 식품안전

### 가. 목 적

-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이 지역과 국경을 넘어 급속히 확산, 전체 국민 중 절반(50%)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25.7%가 단체 급식을 이용하는 등 식중독 위험요인 상존
  -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식품위해요인에 대처하고 식품·건강기능식품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추진
  - 농축산식품 위해요소별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

### 나. 주요대책

- 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 및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검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사범조사단 운영,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추진
  - 과학적인 유해물질 저감,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도입·확대, 식품이력 추적관리제 운영
  - 식품 기준·규격 설정·평가,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 및 소비자에 제공,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수입축산물 및 유통축산물 검사,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기준 설정·관리, 농축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를 강화, 축산물에 대한 수입전 위생평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축산물HACCP 제도 확대와 효율적인 운용
- 위해예방 관리 강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효율적 운영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확대
  - 선진 식의약품 안전관리 구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 불량식품 근절대책
  -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실시, 온라인 판매식품 안전관리 강화,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 시기별·테마별 단속, 수사전담반 운영 등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단속

### 3-7 기타(북한방문국민 안전)

#### 가.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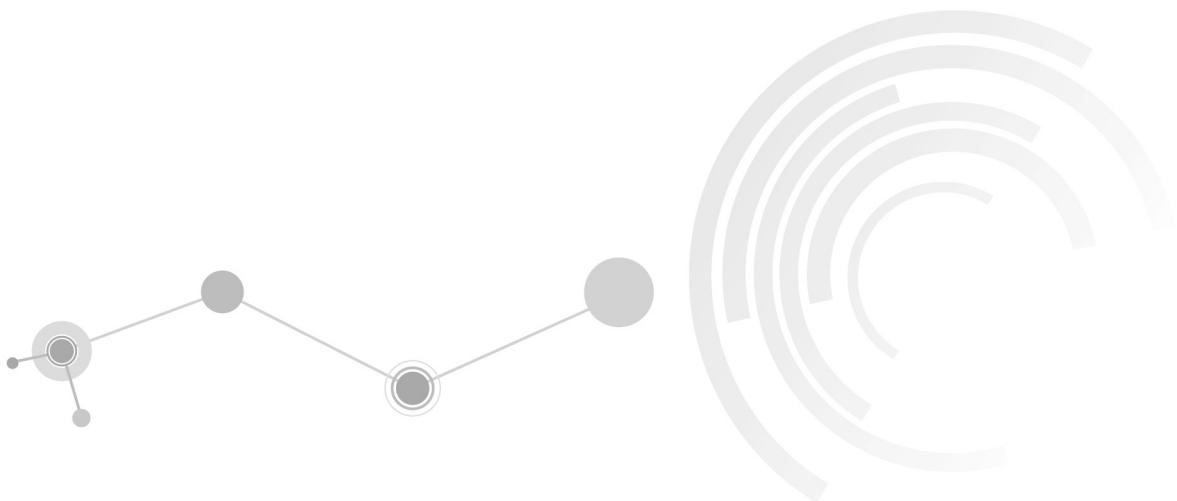
- 5.24조치로 인해 북한 체류 국민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개성공단 등에 상주하는 인원에 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 개성공단 등 북한내 재난 발생에 대비한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업훈련, 현장 조치·복구절차 등 재난상황 대응역량 제고

#### 나. 주요대책

- 방북국민 교육 강화 및 상시 안전관리체계 유지
  - 북한방문국민 방북·안전교육, 상황실 준비 등 위기관리체계 구축, 북한 지역내 예상 재난별 세부처리대책 수립, 개성공단내 재난대응체계 정비
- 위기상황 대비 강화
  - 교육·위기대응연습 등을 통해 매뉴얼 숙지·보완 및 상황발생시 대응·복구역량 배양, 위기상황시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협력 및 지원체계 사전 구축
- 정기적인 안전점검·평가 이행
  - 북한 지역내 우리국민 이용 구조물·시설물은 국내 수준의 정기 안전점검 및 보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주기적인 소방 및 산업안전·보건 점검
- 신속한 사후 조치체계 구체화
  - 재난 발생시 유관부처·기관 합동으로 신속한 대책반 구성·운영, 비상연락망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구조, 복구 실시



## 제6장 행정사항





## 제6장 행정사항

### 1 일반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본 계획에 따라 추진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기관별로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 집행계획)을 수립·관리·시행해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은 본 계획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민 안전처로 제출해야 한다.
  - 집행계획은 총칙, 소관분야 단계별 대책(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 집행계획 수립시에는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중점추진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세부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차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계획기간('15~'19년)중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본 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6항에 의거 수정·변경한다.
- 각 재난관리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은 본 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관련 매뉴얼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시·도 및 시·군·구는 본 계획 및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관기관과 관련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계획간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도 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안전관리 계획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의한 성과관리전략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 및 제23조의 집행계획의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을 매년 예산편성 과정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여건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부처와 협의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소요시설·장비·물자 등을 확충한다.

## 2 집행계획 및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참고사항

### 【재난관리 단계】

#### ○ 예방대책

- 재난관리체제 구축, 재난예방대책 수립·시행, 각종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정후감시, 재해 위험지구관리, 피해저감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정보시스템개선, 시설물비상대처계획 등

#### ○ 대비대책

- 재난정보·상황관리체계 확립, 자원동원계획 및 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시행, 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의 긴급지원체계 구축, 재난대비 대국민 홍보 및 교육훈련, 행동매뉴얼 정비 및 국민 행동요령 홍보, 응급대응체계 및 비상연락근무체계 정비, 지자체 및 관련 행정기관의 대비대책 조정 및 지원, 재난 예·경보체계구축 등

#### ○ 대응대책

- 재난상황보고체계 구축, 초기대응체제 확립, 유관기관 협조·지원 체제구축, 긴급구조, 이재민 대책 및 대책본부 구성·운영,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민관협력체계 구축, 비상단계 근무 계획, 사고수습기구 운영방안, 2차 재난방지대책, 긴급수송대책, 구조구급 의료대책, 청소·방역 대책,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시설물 응급복구계획, 이재민 수용 및 구호물자 공급, 지자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대응대책 조정 및 지원 등

#### ○ 복구대책

- 재난합동조사단 구성운영, 피해배상(보상), 자원봉사단 활용, 항구적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피해조사, 재난복구비용 지원대책(대상, 기준, 비용산정, 지원절차) 등

## 【재난관리 항목】

### ○ 재난관리체계

- 재난관리조직의 구성, 기구표 및 인력 정·현원 현황
- 재난단계별·상황별 대응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 종합상황실 운영 등 사고수습·대응체계 구축
-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비영리단체, 민간기관, 공공기관·단체 등 재난관리 유관기관과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 등

### ○ 대국민 홍보대책

- 재난 및 안전사고시 홍보 책임자 선임
- 방송, 언론, 인터넷 등 홍보미디어 연락체계 유지
- 각 상황별 발표 문안 준비

### ○ 중장기 재난대책

- 각종 재난발생시 동원 가능한 인력·장비·시설·물자 등 자원관리 및 재난대비 체계적 동원 계획 수립
- 피해시설에 대한 항구복구 및 예방적 사전 재난경감계획 수립
- 현장중심의 대응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업무계획 수립
- 재난원인 조사·분석, 책임소재 및 배상능력유무 판단방안
- 피해자 보상관련 절차·제도 확립방안 등

### ○ 재난정보관리체계

- 위기정후 실시간 감시, 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계획
- 위기관리 유형별 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 추진계획
-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연락·정보체계 구축방안
- 부처·기관별 종합상황실 구축 및 산하기관·단체 연계시스템
- 시스템 점검 및 파손시 대체시스템 추진계획
- 재난지휘통신 무선통신망 구축계획
- 재난신고 접수처리, 통제선,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등

## ○ 재난관리 교육·훈련 및 과학기술의 연구·발전

- 재난예방 교육·훈련, 세미나 개최 등 단계별 능력 개발
- 타 연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 재난관리능력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계획
- 부처 및 산하 연구·교육기관 공동연구 계획 등

## ○ 재난관리체제의 정보화계획

- 안전관련 시설물의 성능평가 및 시설기준 취합·표준화
- 재난시 동원자원 DB화 계획
-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현황정보 DB화 계획
- 시스템 전산화 및 재난관련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 ○ 재난관리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 재난관련 기금운영, 재난보험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 재난유형별 위험분석 평가, 위험관련 컨설팅 등 발전방안
- 민간기관·단체와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활성화 계획
- 긴급구조 및 재난수습 유관기관 지원협조체계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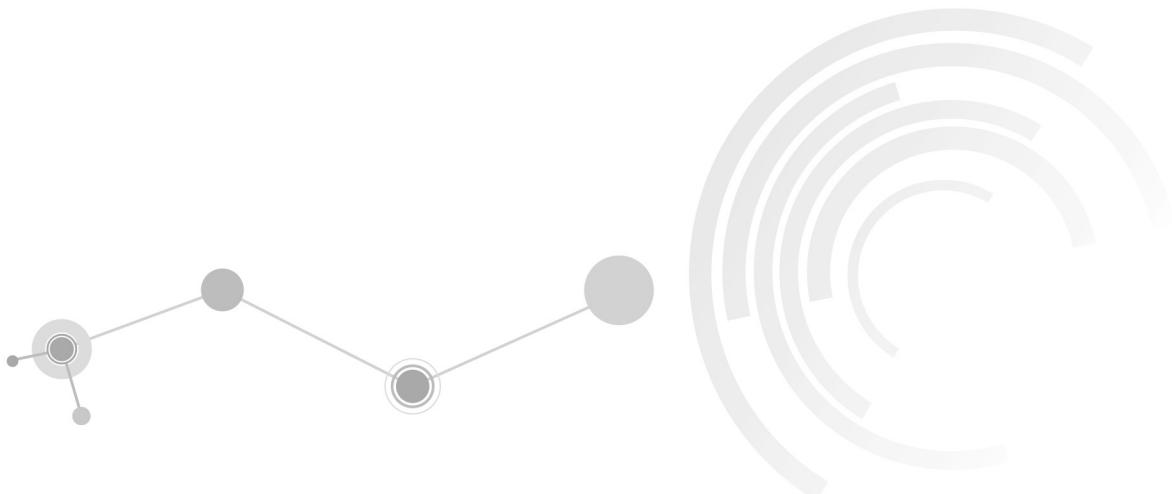
## ○ 재난관리의 평가 및 개선

- 재난단계별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계획
-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점검·평가기능 강화방안
- 재난단계별 평가분석 및 개선·수렴사례 발굴 및 포상계획
- 발생원인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및 재발방지 방안마련 등 개선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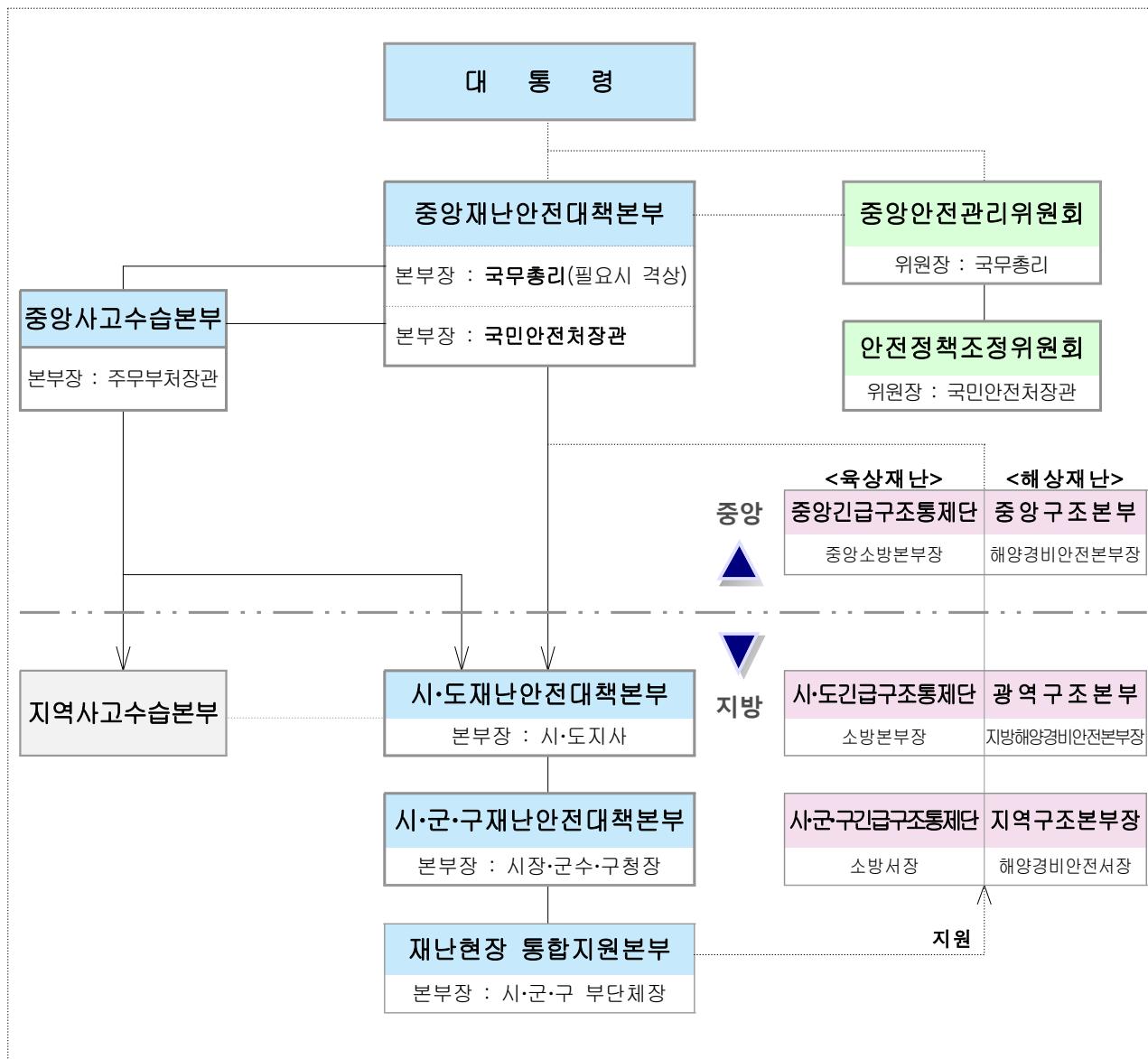
## 부 록

1.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2.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3.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경과
4.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의 평가
5.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5~'19) 수립 참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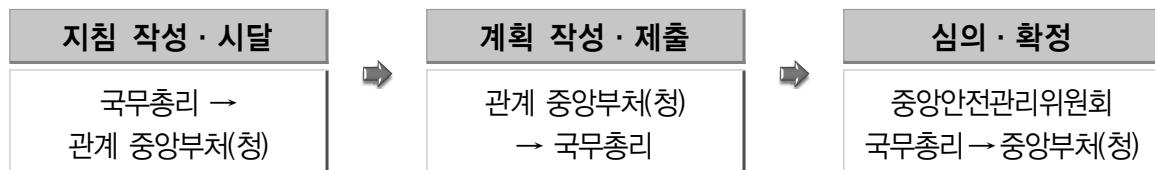
# 1.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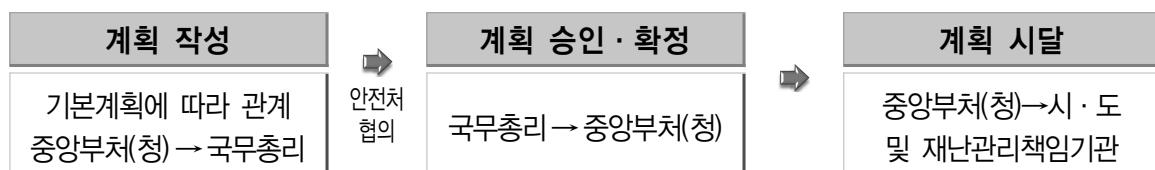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부장 : 국민안전처장관 * 필요시 국무총리로 격상</li> <li>차장 : 국민안전처차관</li> <li>기능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중대본회의 개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장 : 국무총리</li> <li>간사 : 국민안전처장관</li> <li>기능 : 재난안전 사업 예산 심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관계부처 협의·조정</li> </ul>
중앙사고수습본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부장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li> <li>기능 :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 및 수습과정 총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장 : 국민안전처장관</li> <li>간사 : 국민안전처차관</li> <li>기능 : 중앙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의·조정</li> </ul>

## 2.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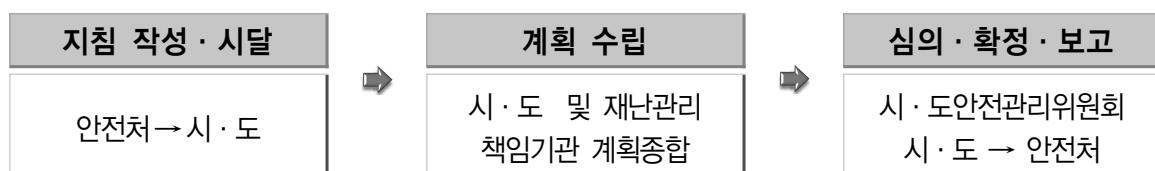
###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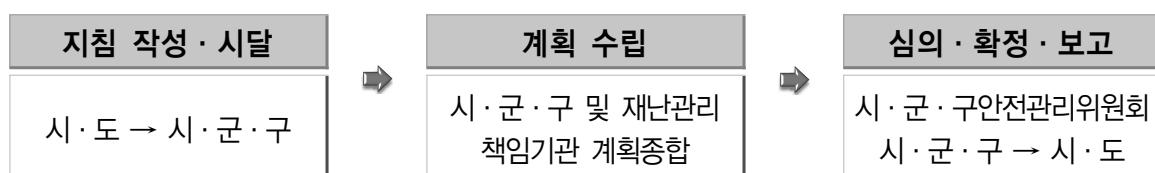
###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 ○ 시 · 도 안전관리계획



### ○ 시 · 군 · 구 안전관리계획



### 3.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경과

-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및 정보화 등 급속한 재난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77년부터 「방재계획」을, 1996년부터는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
  - 방재계획(1977~2004) : 풍수해, 가뭄 등 자연재난 중심 계획
  - 국가재난관리계획(1996~2004) : 화재, 폭발, 붕괴 등 인적재난 중심 계획
- 2004.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종전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여 중앙부처의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세부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
  -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05~2009) : 자연·인적재난, 국가기반보호대책
  -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 : 재난관리대책, 국가기반보호대책, 안전 관리 대책, 전염병 대책

- '14.4.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의 재난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계부처 합동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5~'19)을 수립
  -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 시달('14.11.1)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마련('14.9.23)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세부과제 발굴·수립을 위한 민간자문단 운영('14.10.2~'15.2.6)
  - 과제 발굴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14.10.24)
  -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14.12.5~'14.12.15)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한 수립상황 중간점검('14.12.12)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4.12.1~'15.1.20)
  - 공무원, 전문가, 일반국민을 대상 토론회('15.1.30)
  - 기본계획(안)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의견 조회 및 보완작업('15.2~3월)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15.3)

## 4.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0~'14)의 평가

### 가. 제2차 계획 기간 중 주요재난 발생 현황

- (물놀이 사고) 5년간 총 184건 발생(연평균 37건)
  - 인명피해 총 196명, 연평균 39명 사망
- (화재) 5년간 212,045건 발생(연평균 42,410), 인명피해 1,466명(연평균 293)
  - 1차 계획기간(2005~2010) 대비 발생건수는 증가(3,105건, 1.5%)하였으나, 사망자수는 감소(786명, 34.9%)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차계획 기간(2010~2014) 중 화재발생 원인은 부주의(47%), 전기(24%), 기계(10%)순으로 나타났으며, 건축·구조물(주거, 판매, 산업시설 등)에서 가장 많이(62%) 발생
- (지진) 최근 10년간('05 ~ '14)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연평균 53회 정도이며, 2013년에는 이례적으로 예년의 2배가량인 93회의 지진이 발생
  - 한반도 지진관측사상 4번째로 강한 규모인 5.1의 지진이 2014년 4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

발생횟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29	37	50	42	46	60	42	52	56	93	51

- (해상조난) 5년간 총 7,479척의 선박에서 발생(연평균 1,496척)
  - 인명피해 총 49,945명명, 연평균 9,989명 사망
- (자연재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총 13회 선포되었으며 87명의 사망자 발생
  - 1차 계획기간 동안 사망자 113명보다 26명이(23%) 감소

## 나.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의 평가

-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
  - 2차계획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문화, 생활안전, 기업안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체계 등 5대 요소에 대한 목표와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포함한 9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도출
- 계획의 전반적인 기조는 자연·인적재난 대응심의 계획(1차)에서 안전한 국민생활 안전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안전분야로 확장
  - 특히 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마련, 안전의식 제고, 기업의 재난·안전관리 참여 등 재난안전관리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조

## 다. 개선과제

- 전 국가차원의 대응체계로의 전환이 필요
  -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공동체 형성, 안전망 확충, 생애주기 맞춤형 안전교육 및 훈련강화 등을 통한 국민의 회복력있는 대응능력 향상 도모
- 국민의 신뢰회복과 안전의식 제고
  - 경제사회의 이익과 효율성보다는 안전으로부터 얻는 이익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원칙을 지켜 안전을 최우선하는 무화 확산 필요
- 정부주도 재난대응의 한계 극복
  - 초기대응을 비롯한 대응 및 구조체계 개선과 재난전문기관의 교육·훈련 확충을 비롯,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거버넌스와 안전생태계 조성
- 사회전반의 재난관리 기반 조성
  - 안전진단, 안전점검, 안전신고·감독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체계화가 필요하며 재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 및 환류과정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 재난안전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자발적 기술개발을 도모하여 이익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기반 구축 필요
- 특수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의 혁신과 불확실한 미래위험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 등 대비가 필요

## 5.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5~'19) 수립 참여기관

-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28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

## 참 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 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민안전처
  - 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다.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 ⑥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 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 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